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속주 시칠리아 총독 베레스의
재판(기원전 70년)을 통해 본 반환법과
반환법정의 한계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김 화 니

속주 시칠리아 총독 베레스의
재판(기원전 70년)을 통해 본 반환법과
반환법정의 한계

지도교수 김 덕 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김 화 니

김화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기원전 70년 진행된 속주 시칠리아의 전임 총독 베레스에 대한 반환법정 판례를 그 재판의 기소인인 키케로의 2차 논고문 (*In Verrem*) 제3권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로마 공화정 후기 속주 시칠리아의 곡물 과세 및 매입 항목에서 나타난 총독의 수탈행위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러한 수탈행위를 처벌하고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반환법 및 반환법정이 지닌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로 키케로의 베레스 논고문 덕분이다. 하지만 해당 사료의 특성과 그것이 공개되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논고문의 수사학적 전략을 인식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2차 논고문 제3권 전체를 걸쳐 키케로는 ‘1/10세 징수권을 많은 계약량에 매각했다’는 베레스의 변론에 대해 반박했다. 베레스 논고문은 피고인에 대한 심판인단의 유죄 판결과 그에 대한 독자들의 동의를 공고히 하여 기소인 키케로의 승소를 과시하기 위한 장치였다.

속주 시칠리아는 로마 시의 곡창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속주 아시아를 비롯한 타 속주들의 과세 체계와 달리 현지의 전통적 과세 제도인 히에론 법을 존중하여 현지인 1/10세 징수자를 활용했다. 기원전 70년대 후반 로마 시에 심각한 곡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테렌티우스-카시우스 법에 따라 속주 시칠리아로부터의 곡물 매입 항목이 총독의 의무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시기적 특수성의 맥락에서 총독 베레스는 3년의 임기 동안 비교적 독립적으로 조세 수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시칠리아에서 총독 베레스에게 수탈의 기회를 제공했다.

2차 논고문 제3권에 따르면 베레스는 총독의 불법적 고시들 및 현지인 1/10세 징수자들과의 불법적 동업관계를 활용해 1/10세 징수 사업에서 막대한 곡물 및 현금을 강탈·압취했다. 그리고 곡물 매입 사업에서 현금을 징수한 후 전혀 상환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상환함으로써, 그리고 참고 유지 곡물의 매입 사업에서 과도하게 높은 대체 지불 비율

을 책정함으로써, 공금을 유용·착복했다. 매입하여 로마에 전달해야 했던 곡물은 1/10세의 과잉수취분을 활용했으며, 창고 유지 곡물은 로마에 전달하지 않고 속주 내에서 이용된다는 특성을 이용해 거의 무제한적으로 절취했다.

반환법은 로마 관원의 해외 속주 재산의 수탈을 처벌 및 규제한다는 원칙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반환법정 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심리하여 피해를 당한 속주민의 재산을 환수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반환법 조항들의 변천을 보면 그 본질적 취지를 구현하려 했다가보다는 피고인의 잠탈 시도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또한 반환법정 재판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반환의무 혐의에 대한 처벌보다는 유죄선고 자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베레스 재판에서 피고인 베레스의 잠탈 시도들과 그의 자발적 추방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던 관행에서 그 사실이 잘 드러난다. 즉 반환법 및 반환법정은 실제로는 정치적 경쟁의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로마 공화정 시기 재정이 속주 시칠리아의 밀 생산에 상당부분 의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곡물 과세 및 매입을 악용한 수탈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그 과정에서 강탈·압취·강압·유용·착복이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로마의 안정적 재정구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속주 과세 체계의 확립과 속주 총독의 불법 독식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규제 수단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주요어 : 반환법, 반환법정, 『베레스 논고문』, 『베레스 2차 논고문 제 3권(De Frumento)』, 수사학, 속주 시칠리아, 속주 과세 체계, 총독의 수탈행위

학 번 : 2016 - 24065

목 차

I. 서언	1
II. 키케로의 『베레스 논고문』 비판	7
III. 속주 시칠리아의 특수성과 총독 베레스의 수탈행위	29
1. 속주 시칠리아 곡물 과세의 특수성	29
2. 로마 시의 곡물 부족과 총독 베레스의 곡물 매입 의무 ..	35
3. 베레스의 곡물 과잉수취와 공금의 유용	40
IV. 베레스 재판에서 보이는 정치 관계와 반환법의 한계	74
1. 반환법의 성격 변화와 정치 수단화	74
2. 베레스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반환법의 한계	92
V. 결어	102
참고문헌	114
Abstract	122

표 목 차

[표 1] 베레스 2차 논고문 제3권의 구성	8
[표 2] 속주 시칠리아 과세 및 매입 항목	41
[표 3] 베레스의 고시의 위법성	52
[표 4] 기원전 70년 반환법정 재판 절차	85
[표 5] 베레스의 수행원단 목록	105
[표 6] 시칠리아 도시들의 곡물 관련 내용 목록	110

I. 서언

기원전 241년 1차 포이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지중해의 곡창이라 불렸던 시칠리아를 최초의 속주(provincia)로 삼았고 이후 해외 팽창을 계속하여 기원전 70년대에는 총 10개의 속주를 가지게 되었다.¹⁾ 이와 같이 속주로 편제된 해외 정복지에 대해 로마는 고위 정무관을 역임한 자들에게 콘술 대행(pro consule) 또는 프라이토르 대행(pro praetore)의 자격으로 총독을 파견하여 관할속주의 통치를 전담케 했다. 속주 통치권을 위임받은 총독들은 관할속주의 치안과 징세 등 사실상 로마 국가의 통치를 대행했는데, 곡물 관련 징세 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특히 속주에서 수취되는 곡물(frumentum)은 인근 지역의 로마군 보급 식량으로 투입되거나 로마 시로 운송되어 로마 시민을 위해 소비되었다.

그러나 전장의 확대와 로마 시 인구의 증가로 인해 곡물 수요가 증가한 반면 곡물 수급 상황은 악화되었다. 해외 속주에서 곡물 수취를 담당했던 총독들의 사취(詐取)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은 로마 공화정 체제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다. 이에 해외 속주에 파견된 로마 총독의 강탈·압취·강압·유용·착복 등 수탈행위를 처벌하고, 가해자로부터 해당 수탈분의 환수와 피해자들에게 반환을 목적으로 한 부당취득재

1) 기원전 241년 시칠리아 섬을 시작으로 코르시카(238년)와 사르디니아(237년), 원·근 히스파니아(197년), 마케도니아(146년), 아프리카(146년), 아시아(129년), 킬리키아(102년), 트란살피나 갈리아(100년 이후), 키살피나 갈리아(c. 81년), 크레타(68-65년)와 키레네(63년), 폰투스/비티니아(74년, 61/60년 총독파견), 시리아(66-62년, 61년 총독파견), 키프러스(58년), 아프리카 노바(46년)가 속주화되었다. 속주가 많아짐에 따라 기원전 197년까지 프라이토르직이 6개, 기원전 81년에 8개로 증가되었다. S. Hornblower, A. Spawforth, E. Eidinow, eds., *The Oxford Classical Dictionary*, 4th ed. (Oxford Univ. Press, 2012), <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acref/9780199545568.001.001/acref-9780199545568> (검색일: 2020년 7월 15일).

산 반환청구법(*lex repetundarum*, 이하 반환법)이 등장했다.²⁾ 이로써 총독이 임기가 끝나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가 재임 시 자행했던 독직 수탈행위에 대해 피해를 당한 속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면 문제가 된 총독은 이 법에 의해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법정은 피해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 해당 수탈분을 피고인으로부터 환수한 후 피해 속주민에게 반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취득재산 반환법정(*quaestio de repetundis*, 이하 반환법정)이라 불렀다.

최초의 속주였던 시칠리아는 밀 생산량이 풍부하고 로마 시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로마의 곡물 정책에서 중요했다. 여기서 생산된 곡물의 상당 부분이 로마 시로 운송되어 로마 거주민의 식량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³⁾ 따라서 시칠리아의 곡물이 개인에게 사취되어 감소한다면 이는 곧 로마의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원전 74년 시민 담당 프라이토르(*praetor urbanus*) 임기를 마치고 기원전 73년부터 71년까지 3년 동안 프로 프라이토르 자격으로 속주 시칠리아를 통치했던 총독 베레스(*C. Verres*, c. 120–43 B.C.)의 독직 수탈 혐의에 대해 기소인 키케로(*M. Tullius Cicero*, 기원전 63년의 콘술)가 기원전 70년에 상세히 고발한 반환법정 재판이 열렸다.⁴⁾

2) 라틴어 *repetundae*는 ‘(반환을) 청구하다’라는 뜻의 *repeto* 동사의 당위를 나타내는 수동태 미래 분사 여성 복수 2격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에서 나와서 ‘반환’ (반환법, 반환법정)으로, 특히 로마 총독이 속주에서 수탈한 금품 전체를 원 소유자인 속주민에게 반환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이 용어와 관련하여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체제강화와 원로원의 위상 - 기원전 4년 ‘부당취득재산반환청구에 관한 칼비시우스의 원로원결의’ 비문분석」 『서양사론』 50(1996), n.6을 참고하시오.

3) V. M. Scramuzza, “Roman Sicily,” in T. Frank, ed., *An Economic Survey of Ancient Rome*, 3 (N. J. Paterson, Pageant Books, 1959), pp. 240–263.

4) 키케로의 자세한 논고문(*In C. Verrem*)은 베레스의 반환법정 기소 혐의인 속주 시칠리아 수탈행위를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자료가 되고, 기원전 70년의 베레스 재판은 반환법의 변천이 거의 마무리된 시기의 정치적 변화를 반영한 반환법정의 진화 과정과 그 결과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적합한 판례가 된다.

*In Verrem*은 영어로 ‘Against Verres,’ 즉 ‘베레스에 반대하여’라 번역할

공화정 후기 많은 총독들이 해외 관할속주에서 속주민의 재산을 수탈하여 축재하는 일이 만연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키케로의 베레스 논고문은 그러한 수탈의 실상을 아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정 후기 전반적인 속주 지배와 총독들의 독직 수탈행위의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⁵⁾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개별 속주들의 지역적,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하기보다는 공화정 후기 로마의 전체 속주 지배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정치사 혹은 사회사적 해석을 위주로 했던 측면이 강했기에,⁶⁾ 각 속주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시대적 변화에

수 있다. 여기에는 베레스에 대한 규탄·탄핵이나 그의 혐의에 대한 고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 ‘기소(起訴)’란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법적 행위이며 ‘논고(論告)’란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법률의 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에 이 사료를 ‘베레스 논고문,’ 이 사료의 저자 키케로를 ‘기소인’이라 칭했다.

- 5) 베레스 논고문을 토대로 속주 시칠리아에서 총독의 곡물 관련 업무 및 베레스의 수탈행위를 분석한 기초적인 상세한 연구는 오래 전에 착수되었다(J. Carcopino, *La loi de Hiéron et les Romains* (Paris, Boccard, 1914) ; Scramuzza, 앞의 글(1959), pp.227-377). 최근 김창성은 속주 아시아 과세 체계의 특수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속주 시칠리아의 그것을 비교했다(「속주 아시아 관세법과 트리부니 아이라리아」 『서양고대사연구』 41(2015), pp.101-133). 베레스 논고문은 주로 라틴어 문법과 수사학의 관점과, 예술품 수탈에 대한 미술사학적 차원에서 많이 검토되어 왔다. 전자의 최근 성과는 Th. D. Frazel, *The Rhetoric of Cicero's "In Verre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9)와 C. Steel, "The Rhetoric of the *De Frumento*,"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50, S97(2007), pp.37-48. 이밖에 속주민 간의 분쟁에 대한 총독의 순회 재판에서의 부패 관행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J. A. Marshall, "Verres and the Judicial Corruption," *The Classical Quarterly*, 17(2)(1967), pp.408-413). 최근 베레스 논고문 관련 연구성과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J. Dubouloz, et al. eds., *La Sicile de Cicéron, Lectures de Verri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he-Comté, 2007)). 이는 해당 시기와 해당 속주의 고유한 중요성을 소재로 삼아 본 논문의 논지 전개에 크게 참고가 되었다.
- 6) 예컨대 속주의 도급업자들의 활동과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른 그들의 로마 정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다(E. Badian, *Publicans and Sinners* (Ithaca & London, Cornell Univ. Press, 1972) ; H. Hill, *The Roman Middle Class in the Republican Period*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4)). W. Blösel, "Provincial Commands and Money in the Late Roman Republic,"

다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베레스 논고문의 경우 그 재판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70년대의 상황과 그의 관할속주였던 시칠리아의 특수성이 종합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반환법정에 대한 베레스 기소의 당대적 맥락, 그리고 반환법의 역사에서 베레스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에 있다. 기원전 1세기 전반기의 상황에서 독직 총독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속주민의 재산을 환수하고 반환하는 것이 반환법과 반환법정, 특히 베레스 재판의 목적이었다고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방대한 논고문을 작성하면서까지⁷⁾ 베레스의 유죄 판결을 확보하려 했던 키케로의 의도는 이 시기의 혼란상과 맞물려 반환법정의 취지와 실제 정치 상황에서의 실상과의 괴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소된 혐의의 내용뿐만 아니라 키케로가 베레스를 반환법정에 고발했던 정치적 맥락과 이 재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반환법에 대해서는 법제사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⁸⁾ 기원전 149년의 칼푸르니우스 반환법(*lex Calpurnia*

in *Money and Power in the Roman Republic* (Bruxelles, Éditions Latomus, 2016), pp.68–81에서도, 베레스 재판은 도급업자 기사신분(*equites*)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과정에서의 한 일화로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베레스 논고문이라는 소재에 대한 학계 전반의 시각이다. 최근 앳킨슨은 베레스 논고문의 법적 배경, 반환법정 재판 절차, 베레스의 기소 혐의, 그 재판의 로마 내 정치적 의미를 소략히 정리한 바 있는데(J. E. Atkinson, “Cicero and the Trial of Verres,” *Akroterion*, 37, 3–4(2014), pp.91–97), 마찬가지로 특수정보다는 일반성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다.

7) 베레스 논고문은 키케로의 모든 법정 연설문들 중 가장 길다. 사료적 가치가 귀중함에도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총괄적인 학술 주석이 나오기 어려웠다.

8) 대표적으로 헨더슨과 셔윈-화이트는 법정 내부에서 프라이토르와 심판인단의 기능의 분리를 다뤘고(M. I. Henderson, “The Process ‘*De Repetundis*,’” *JRS*, 41(1951), pp.71–88 ; A. N. Sherwin-White, “The Extortion Procedure Again,” *JRS*, 42(1952), pp.43–55), 린토틀은 반환법들이 해외 로마 관원들의 전반적인 공적 행동 양식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A. W. Lintott, “The *Leges De Repetundis* and Associated Measures under the Republic,” *ZSS*, 98(1981), pp.162–212).

repetundarum)은 로마 최초의 상설법정을 정립한 법으로서 그 도입의 사회적 배경이 논의되었다.⁹⁾ 기원전 123년의 아킬리우스 반환법(*lex Acilia repetundarum*)은 당대 여러 법들 중에서도 전문(畵文)이 비문으로 보존되어 있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¹⁰⁾ 아킬리우스 법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특히 그라쿠스(*C. Sempronius Gracchus*, 기원전 123~122년의 호민관)의 개혁으로써 법정 심판인단을 원로원 신분 대신 기사신분(*equites*)으로 대체했다는 사실을 주요한 소재로 삼아서, 반환법정의 심판인단 구성을 규정한 심판인단 법(*lex iudiciaria*)의 시기별 개정애 초점을 맞췄던 경향이 있다.¹¹⁾ 이로써 그라쿠스 시대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부각된 기사신분이 로마의 사법적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발생한 정치적 변화를 밝힌

9) 대표적으로 김경현은 칼푸르니우스 반환법의 제정 배경으로서 원로원의 대처가 귀족과 평민의 신뢰의 붕괴를 제안했다(「로마상설법정의 기원」 『사학지』 16(檀國大史學會, 1982), pp.1-17).

10) E. H. Warmington, *Remains of Old Lati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8) ; A. W. Lintott, *Judicial Reform and Land Reform*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2), pp.88-89 ; 뱌보 서판의 반환법(*lex Bembina* 혹은 *Tabula Bembina*). 뱌보 법이 아킬리우스 법과 동일한 것이거나 그 법을 상세화한 부록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한 린토티의 논문도 참고하시오(앞의 논문(1981)). 아킬리우스(*M. Acilius Glabrio*)는 C. 그라쿠스의 동료 호민관으로서 루브리우스와 함께 식민지 건설법(*Lex Rubria-Acilia*)을 발의해서 그라쿠스의 개혁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11) Sherwin-White., "The Lex Repetundarum and the Political Ideas of C. Gracchus," *JRS*, 62(1972), pp.18-31 ; 김경현, 「Gracchan Judiciary Law and the Lex Repetundarum on the Tabula Bembina(C. 그라쿠스의 법정개혁과 착취법)」 『서양사론』 25(1984), pp.63-104 ; 허승일,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사법 개혁」 『역사교육』 89(2004), pp.251-286). 또한 아우렐리우스 법의 제정 배경에 관해서는 김창성, 앞의 논문(2015)과 B. Kleinman, "Rhetoric and Money: the *Lex Aurelia Iudiciaria* of 70 B.C.," in *Money and Power* (2016), pp.53-67.

그간의 연구들에서 라틴어 *iudices*에 대한 번역어로 영어 *jurors/jury*, 우리 말 '배심원'이 쓰였지만 이러한 오늘날의 배심원들에게는 재판의 심리, 판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로마의 *iudices*를 '심판인(단)'으로 번역했다.

것은 선행 연구들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반환법의 구체적 조항들과 반환법정 판례들을 통해 그 법의 본질적 목적인 로마 총독의 속주 재산 수탈 과정과 그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해명되지 않았다. 이에 베레스의 재판을 한 가지 사례로 해서 반환법의 개정과 반환법정의 재판 과정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라는 맥락에서 속주 수탈의 실상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반환법 및 반환법정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다소나마 넓혀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소인 키케로가 베레스 반환 재판의 2차 논고문 제3권(De Frumento)에서 제기하는 속주 시칠리아 총독 베레스의 곡물 관련 수탈 혐의의 배경과 내용에 새삼 주목하고, 당시 적용된 반환법과 반환법정 재판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총독의 속주 수탈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벌 및 규제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를 정치 관계의 변동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단, 본고의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원전 73년부터 71년까지 총독 베레스의 속주 수탈 혐의와 이를 심리한 반환 재판의 과정은 키케로가 합목적적으로 작성한 논고문의 내용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우선 키케로의 논고문 자체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 기소의 진의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I. 키케로의 『베레스 논고문』 비판

로마 공화정 후기 속주 총독의 과세 및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수탈행위의 실상과 그 혐의에 대한 심리로서의 반환법정 재판 과정에 대해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있는 것은 키케로의 베레스 논고문 덕분이다. 피고인 베레스가 2차 공판 이전에 자발적 추방(exsilium)을 선택함으로써 법정에서 논고문을 발표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오히려 키케로는 재판 절차가 멈추자마자 방대한 분량의 2차 논고문을 작성해 기소인 선발 예심 연설문(Divinatio)과 논고 연설문(Accusatio) 모두를 유통시켰다.¹²⁾ 따라서 실제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거 제시와 키케로의 의도를 구분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의 의도는 이 시기의 혼란상과 맞물려 반환법정의 목적이 변질된 상황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의 베레스 논고문은 1차 공판에서 발표되었던 1차 논고문(actio prima)과 실제로 법정에서 발표되지는 않았던 2차 논고문(actio secunda)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논고문은 반환법정의 원로원 심판인단을 비롯해 해당 재판 관련 정치 엘리트층에 대한 뇌물수수 관행과 베레스의 초창기 정치적 성향의 가장 비윤리적인 부분을 공략하는 것에 집중했다. 총 다섯 권으로 이루어진 2차 논고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키케로는 기원전 74년 프라이토르 임기 중 베레스의 부패 문제를 다뤘다(2차 제1권). 그 후 키케로는 재판의 주요 목적으로 전환하여, 베레스의 법적 절차의 조작, 현지 관리의 임명, 시민 영예의 수여, 다양한 사업 처리 등을 분석했다(2차 제2권). 이어서 베레스가 시칠리아에서 곡물 징수와 매입 과정에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 상세히 폭로했고(2차 제3권), 시칠리아 개인들과 도시들에 대해 베레스가 행한

12) 공개된 2차 논고문과 베레스에 대한 실제 재판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하시오. M. C. Alexander, *The Case for the Prosecution in the Ciceronian Era* (Univ. of Michigan Press, 2003), pp.26-28, 51.

여러 강탈행위를 설파했다(2차 제4권). 마지막으로 키케로는 군 지휘관으로서 베레스의 무능함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그가 로마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처형한 사실을 공격했다(2차 제5권). 두 번째 논고문은 베레스가 재판관을 지연하는 작전을 쓰다가 유죄 판결이 예상되자 자진 망명을 떠나는 바람에 법정에서 발표되지 않고 독자들에게 읽히기 위해 작성되었다.

2차 논고문 가운데 키케로가 말하는 연설의 규칙들에 따라,¹³⁾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3권이 중심부에 위치되었다. “곡물에 관하여”(de frumento)라는 별명을 지닌 2차 논고문 제3권은 총독 베레스가 속주 시칠리아에서 곡물 1/10세(decuma)의 징수 사업과 곡물 매입(frumentum emptum) 사업, 그리고 창고 유지 곡물(frumentum in cellam)의 유상 징발 사업의 과정에서 드러난 수탈행위를 다루고 있다.¹⁴⁾

[표 1] 베레스 2차 논고문 제3권의 구성

부분		내용
도입부 (2.3.1-12)	1-5	진정한 기소인의 자세
	6-9	피고인의 약탈·탐욕·사치에 대한 변호인의 태도에 대한 경고
	10-11	속주 곡물 수취라는 주제에 대한 심판인단의 태도
	12	속주 곡물 수취 관련 총독의 세 가지 의무 항목
본론1: 1/10세 징수 (2.3.12-162)	12	속주 시칠리아 곡물 과세 체계의 특수성
	13	속주 시칠리아 도시 유형의 분류
	14-21	히에론 법에 따른 시칠리아 곡물 1/10세 징수권 매각 조건의 유지와 총독 베레스의 그 조건의 위반
	22-24	1/10세 징수자 아프로니우스와 총독 베레스의 결탁
	25-39	베레스의 고시들의 위법성
	40-42	1/10세 징수권을 높은 계약량에 매각했다는 피고인 측의 변론

13) M. Tullius Cicero, *De Oratore Ad Quintum Fratrem*, 2.314: “... si quae erunt mediocria, ..., in mediam turbam atque in gregem coniciantur.” (=중간의 [중요도의] 것들이라면 ... 그것들은 글들의 가운데에 위치될 것이다.)

14) 각 항목들과 관련한 베레스의 수탈 내용은 논고문 2차 제3권 내 다음의 부분들에 위치한다. 곡물 1/10세 징수 과정에서 1/10세 징수자들과 결탁한 속주민 수탈은 2.3.12-163, 곡물 매입을 위한 공금 처리 과정에서의 수탈은 2.3.163-187, 창고 유지 곡물의 처리 과정에서의 수탈은 2.3.188-225를 보시오. 세부사항은 III 장 3절을, 곡물 관련 사업 항목들의 구분은 [표 2]를 참고하십시오.

43-45	후임 총독 메텔루스가 로마에서 속주 시칠리아에 보낸 편지
46-47	<u>경작자들의 도망으로 인한 경작지 유기</u>
48-49	1/10세 징수권을 높은 계약량에 매각했다는 피고인 측의 변론
50-52	피고인 측의 변론에 대한 키케로의 반박의 요약: 1/10세 징수자들과 총독 베레스의 결탁 및 고시들의 위법성
53-66	베레스의 개인 경작자에 대한 1/10세 과잉수취 사례들
67-118	베레스의 도시에 대한 1/10세 과잉수취 사례들
70	1/10세 징수권을 높은 계약량에 매각했다는 피고인 측의 변론
80	<u>경작자들의 도망으로 인한 경작지 유기</u>
91	1/10세 징수권을 높은 계약량에 매각했다는 피고인 측의 변론
110	1/10세 징수권을 높은 계약량에 매각했다는 피고인 측의 변론
119	피고인 측의 변론에 대한 키케로의 반박의 비유
120-129	<u>경작자들의 도망으로 인한 경작지 유기:</u> 각 도시 별 경작자 인구수 변화 수치와 후임 총독 메텔루스가 시칠리아에서 로마 정무관들에게 보낸 편지
130-142	1/10세 징수자들과 총독 베레스의 결탁을 고발한 법적 도전들
143-146	반환 재판에서 피고인의 판결 매수
147-151	도시 레온티니에 대한 베레스의 1/10세 징수권 매각 과정의 위법성
152-153	후임 총독 메텔루스가 베레스와 징수자들의 결탁을 은폐
154-157	베레스의 서기관 티마르키데스가 아프로니우스에게 보낸 편지
158-162	베레스의 친아들의 결백함
<hr/>	
본론2:	163 매입 곡물과 명령된 밀의 대상·매입비율·매입자금에 따른 매입량
곡물 매입	164-165 베레스의 곡물 매입 자금 횡령의 세 가지 방식
(2.3.163-187)	165-169 베레스의 곡물 매입 자금을 징세도급업체에 24%의 이자율로 대출
	170-179 베레스의 곡물 매입 대가의 미지급
	180-187 베레스의 곡물 매입 대가의 축소 지급
	177 베레스의 과거 횡령 혐의들
	181 베레스가 발명한 곡물 매입 대가의 세 가지 공제 항목들
<hr/>	
본론3:	188 속주 창고 유지 곡물의 대체 지불 비율 책정의 원칙
창고 유지	189-193 베레스의 곡물 운반을 명령을 명분으로 한 현금 착복
곡물의	194-201 베레스의 과도한 대체 지불 비율 책정
대체 지불	198 <u>베레스의 창고 유지 곡물 사업으로 인한 경작자들의 생산기반 파멸</u>
(2.3.188-225)	202-203 베레스의 창고 유지 곡물의 무제한적 사취
	204 <u>베레스의 임기 후 시칠리아 경작자들의 고통을 고발한 연설</u>
	205-217 베레스의 창고 유지 곡물의 대체 지불 책정의 전례가 변론으로 무의하며 전례가 실재하지 않음
	218-225 베레스의 반환 재판에서 심판인단이 유죄 판결해야 하는 당위성
<hr/>	
결론부	226-228 <u>경작자들의 도망으로 인한 경작지 유기</u>

여기서 보이는 키케로의 전략은 속주 수탈행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지만 지루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다. 키케로는 심판인단에게, 앞으로 다룰 곡물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문제들의 제시 방식에 비해 ‘흥미로움과

다채로움이 덜할 것이라'(iucunditatis ... et varietatis minus habebit)고 경고했다.¹⁵⁾ 따라서 심판인단의 책임인, '듣는 열의에는'(in audiendi diligentia) 만족감만큼이나 성실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2차 논고문 제3권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감정적 동요를 이끌어내려는 것보다는 베레스의 혐의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2차 논고문 제3권에서 키케로는 곡물 징수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수탈의 방식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적절한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그 수치들 자체를 신뢰할 수는 있더라도 그 수치들에 내포된 의미에 대해서는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법정 연설이 가진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레스에 대한 2차 논고문 제3권에서는 반환법에서 심리해야 하는 혐의인 속주 재산의 수탈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로마 인민의 국고를 착복했다는 횡령(peculatus) 혐의를 고발하는 부분의 비중이 높으며 이밖에도 뇌물수수, 신성모독, 살인 등의 혐의가 추가된다.¹⁶⁾ 키케로는 베레스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여러 혐의들을 열거함으로써 그의 수탈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는 베레스를 향해 심판인단의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선동 전략이다. 기소한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들을 추가적으로 고발하는 전략은 키케로의 다른 변론에서도 나타난다. 키케로에 따르면 기원전 74년 오피아니쿠스의 독살죄(de veneficii) 기소에서 심판인단 중 한 명이었던 스카이볼라(P. Septimius Scaevola)는 기소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던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¹⁷⁾ 이후 스카이볼라가 아풀리아 수탈 죄로 반환법정에 기소되었을 때, 앞선 재판에서의 뇌물수수 항목도 추가 고발되어 유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다.¹⁸⁾

15) Cicero, *In Verrem*, 2.3.10. 이밖에도 2.4.109.

16) Cicero, *In Verrem*, 1.11-14 등.

17) Cicero, *Pro Cluentio*, 115-116.

18) Cicero, *In Verrem*, 1.38.

기소인 선발 예심 연설문과 논고문 전체를 통틀어 키케로는 피고인 베레스의 초기 경력에서 드러난 부패행위들을 나열했다. 그에 따르면 베레스의 아버지는 정무관직 수 및 원로원 의석수에 대한 술라(L. Cornelius Sulla Felix)의 개혁(기원전 82년)을 통해 처음으로 원로원에 진입한 인물로, 주로 부정선거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키케로에 따르면 아들인 베레스 역시 이러한 부정행위에 익숙했던 탓인지 그의 정치경력은 기회주의, 배신,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었다.¹⁹⁾ 그리고 기원전 84년 베레스는 첫 정무관직인 속주 갈리아 키살피나에서의 콰이스토르직을 수행할 때 자신의 상관인 총독 카르보(Cn. Papius Carbo, 기원전 83년의 콘술)의 군대 유지 비용을 횡령했다.²⁰⁾ 또한 기원전 80년 킬리키아의 총독 돌라벨라(Cn. Cornelius Dolabella, 기원전 81년의 프라이토르)의 직속 콰이스토르인 말레올루스(C. Malleolus)가 살해당한 후, 레가투스였던 베레스는 그의 프로 콰이스토르로서 일하면서 돌라벨라와 함께 속주 킬리키아에서 막대한 양의 돈을 수탈했다.²¹⁾ 그 후 기원전 78년 상관인 돌라벨라의 반환법정 재판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결국 유죄선고를 받게 하고 자신은 사면되었다. 이렇듯 베레스는 속주에서 악행을 습관적으로 자행해왔다. 이러한 키케로의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 베레스는 생애 첫 총독직을 비록 연고 없는 시칠리아에서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그 속주가 지닌 특수성과 로마의 위기를 악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세입을 수탈할

19) 베레스의 아버지는 원로원 등록 이전에, 입후보자의 부정선거 공작금 분배자(divisor)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Cicero, *In Verrem*, 1.22, 2.4.45).

20) Cicero, *In Verrem*, 2.2.34–37. 베레스는 술라의 귀환을 막기 위한 카르보의 군대모집에 동행했다. 키케로에 따르면 카르보는 당시 사치스럽고 게으른 사람이(*In Verrem*, 2.1.34) 자신의 직속 콰이스토르가 되어 매우 언짢아했다. 이때 베레스에게는 220만 세스테르티우스 가량이 지급되었으나 그가 기록한 매우 개략적인 회계장부에 따르면 아르미눔에 남은 잔고가 60만 세스테르티우스였고 그 도시가 파괴되었다는 핑계로 잔고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다(*In Verrem*, 2.1.36).

21) Cicero, *In Verrem*, 1.11, 2.1.41–102, 2.2.109, 2.3.177. 상관에 대한 배신은 2.1.95–98.

수 있는 요령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데 동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레스의 경력에 대한 키케로의 진술에는 난점이 있다. 먼저 그는 속주 시칠리아에서의 재산 수탈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피고인의 횡령, 부정선거 등 일련의 혐의들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했지만 이는 반환법정의 심리 대상이 아니었다. 징세 과정에서의 수탈일 지라도 기사신분 로마인과 원로원 의원에 대한 수탈행위 역시 마찬가지였다.²²⁾ 이어서 해당 재판에서 심리하는 대상 시기 이전에 그가 자행했다고 추정되는 독직 혐의를 고발한 것은 다분히 수사학적인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키케로는 베레스의 부패 경력이 마치 공인된 사실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우리가 그 경력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키케로의 논고문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키케로가 베레스의 악행들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다.

한편 기원전 70년의 프라이토르였던 아우렐리우스 코타(L. Aurelius Cotta)의 심판인단 법(*lex Aurelia iudiciaria*)의 내용은 반환법정의 심판인단을 원로원 의원, 기사신분, 그리고 트리부니 아이라리이(*tribuni aerarii*)의 세 집단으로부터 차출한다는 것이었다.²³⁾ 클레인먼(B. Kleinman)에 따르면 당시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였던 폼페이우스(Cn. Pompeius Magnus, 기원전 70년, 55년, 52년의 콘술)는 징세도급업자들의 지지에 의해 미트리다테스 전쟁의 군 지휘권을 원로원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사신분에 법정 심판인단이라는 사법적 권한을 부여했다.²⁴⁾ 폼페이우스는 경쟁자인 루쿨루스(L. Licinius Lucullus, 기원전 74년의 콘술)를 약화시키고 광범한 영향력

22) 이에 대해 브런트는 키케로가 시칠리아에 있는 로마인 거주민을 대신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A. Brunt, *The Fall of the Roman Republic and Related Essays* (Clarendon Press, 1988), p.527).

23) Cicero, *Epistulae Ad Quintum Fratrem*, 2.5, 2.16 ; Asconius, *In Pisonem*, 17C와 28C. 트리부니 아이라리이의 정체에 대해서는 김창성, 「로마 共和政期 ‘트리부니 아이라리이(Tribuni Aerarii)’의 役割과 身分」 『역사학보』 122(1989), pp.139-174와 김창성, 앞의 논문(2015)을 참고하시오.

24) Kleinman, 앞의 논문(2016), p.63. Appianos, *Bellum Civile*, 2.13.

있는 집단의 선망을 얻으며 자신의 동맹 세력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책을 구사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부패의 실재 여부와 상관없이,
원로원 의원들이 부패해 있다는 언사 자체가 아우렐리우스 법의 통과를
이끌었다고 밝힌 클레인먼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법안 발의자인 코
타는 당시 공청회들(contiones)에서 심판인단 법의 제정을 위한 연설
을 행했다.²⁵⁾ 속주에서 막대한 돈을 수탈하고 반환법정에서 부패행위를
자행하는 원로원 의원들로 인해 로마의 평판이 악화되었고, 이제 기사
신분에게 법정 심판인단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로마의 정치적 안정
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내용이었다.

기원전 70년 베레스의 1차 공판이 진행되던 동시에 아우렐리우스 법
의 초안이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2차 공판이 시작하려 하던 시점
인 9월 20일경에 아우렐리우스 법이 이미 발의되었던 것으로 나타난
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케로는 원로원 심판인단의 부패에 대한 인
식에 관해 1차 논고문과 2차 논고문 제3권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면
서, 이 재판은 총독 베레스의 속주 수탈행위에 대한 재판일 뿐만 아니
라 원로원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재판이기도 하다고 암시했다.²⁷⁾ 반
환법정의 심판인단이 피고인에게 내릴 평결에 따라 그것이 그들의 사법
적 신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키케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베레스의 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게 무죄선고를 한다면 원로
원 의원 심판인단은 자신들의 부패를 드러내 보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아우렐리우스 법이 통과될 것이다. 반면 베레스에게 유죄선고를
함으로써 원로원 의원들은 그들의 정직함을 증명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들의 심판인단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행한다면 ‘원로원 의원
들이 심판인단이라면 최고의 불의에 의해 끝없는 돈의 수탈이라는 이

25) Cicero, *In Verrem*, 2.3.224.

26) Cicero, *In Verrem*, 1.49, 2.2.174–175, 2.5.177–178. Kleinman, 앞의 논문
(2016), p.55.

27) Cicero, *In Verrem*, 2.3.223–224.

확실한 한 유형의 혐의에 대해(sc. 속주 수탈) 절대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이며, 심지어 그렇다면 기사신분의 심판인 자격이 회복되지 않을 시 공화정이 지지될 수 없다는 그 프라이토르(sc. 코타)의 주장에 반박할 수 없다면서 원로원의 권위의 붕괴를 공화정의 붕괴와 동일선상에 놓았다.²⁸⁾ 그리고 코타의 연설 내용을 이 논고문에 인용할 정도로 키케로 역시 속주 수탈과 뇌물수수라는 부패 관행이 원로원 의원 내에 만연해 있음을 무죄 판결로써 자인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게다가 이 재판의 유죄 판결은 원로원과 모든 속주들에게 덜 위협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²⁹⁾ 베레스에 대한 유죄선고가 원로원의 권위와 속주들까지 포함하여 공화정 체제 자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표현했다. 키케로는 베레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아우렐리우스 법의 통과를 야기할 것이라 위협한 것이다.

이상으로, 피고인 베레스의 과거 위법행위를 거론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과 총독 임기 도중 반환의무 혐의와 상관없는 기타 여러 혐의들을 비중 있게 제시한 것, 코타의 심판인단 법의 통과를 위협의 수단으로 삼아 심판인단의 신분 집단의 이해관계가 유죄 판결과 맞닿아 있다고 피력한 것 등은 이 논고문의 수사학적 전략이라 파악된다. 특히 현존하는 키케로의 가장 방대한 연설문인 2차 논고문의 제3권이 그것의 중앙부에 배치된 점과 제3권의 내용 특성상 청중이 듣기에 지루할 것이라 예고한 점은 확실한 증거만이 피고인의 곡물 관련 혐의를 고발하는 데 활용되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이었다.

총독의 속주 통치 업무들 가운데 조세 수취에 대해서는 속주민과 로

28) Cicero, *In Verrem*, 2.3.223: “Ergo id volumus populum Romanum, id provincias, id socios nationesque exteras existimare, si senatores iudicent, hoc certe unum genus infinitae pecuniae per summam iniuriam cogendae nullo modo posse reprehendi? Quod si ita est, quid possumus contra illum praetorem dicere qui cotidie templum tenet, qui rem publicam sistere negat posse nisi ad equestrem ordinem iudicia referantur?”

29) Cicero, *In Verrem*, 2.3.224: “Atque utinam posset aliqua ratione hoc crimen quamvis falsa, modo humana atque usitata defendere ; minore periculo vestro, minore periculo provinciarum omnium iudicaretis.”

마 인민의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양의 곡물을 징수할수록 당장에는 로마 인민에게 도움이 되고 속주민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인 곡물 수급 정책이 더 로마 국익에 부합할 것이기에 로마에서는 과세의 적정 한도를 법적으로 정립하고 과잉수취가 발생할 경우 반환법정이라는 처벌 수단을 마련했던 것이다. 하지만 베레스의 재직 시기처럼 로마 시에서 곡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경우라면 진정한 의미의 국익을 위한 총독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일 수 있었다. 로마인 입장에서는 속주 곡물 과세를 통한 당장 필요한 충분한 곡물 확보가 중요했다. 따라서 만일 속주 총독이 많은 곡물을 공급했다고 주장한다면 곡물의 수급 과정에서 피해 속주민의 호소는 무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베레스의 2차 논고문 제3권은 바로 전직 속주 총독인 피고인 베레스가 속주 시칠리아에서 ‘(나는) 곡물 1/10세 징수권을 많은 양에 팔았다’³⁰⁾는 변론에 대한 키케로의 반박문이다. 피고인 측은 총독 베레스가 더 많은 양의 곡물을 계약량으로 제시한 업자에게 1/10세 징수권을 매각함으로써 로마 시 곡물 위기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베레스를 변호했다.³¹⁾ 그러나 1/10세로 부과되는 양은 단지 해당 연도의 곡물 소출과 관련 있었다.³²⁾ 로마 시의 주요 곡물 공급지였던 시칠리아에서는 곡물 구입을 위한 현금보다는 곡물 자체를 전달 받아야 했기에 이런 특수한 곡물 과세 체계가 발생했다.³³⁾ 즉 1/10세 징수권의 도급

30) Cicero, *In Verrem*, 2.3.40: “Magno … decumas vendidi.” 이밖에도 2.3.49, 2.3.51, 2.3.70, 2.3.91, 2.3.110, 2.3.119.

31) 키케로는 *In Verrem*, 2.3.119에서 로마 정부를 농장주(dominus)에, 속주 총독을 농장관리인(vilicus)에 비유하면서, 예컨대 10만을 생산하는 농장에서 본래의 현금 1만 대신 2만을 보내는(“domino XX milia nummum pro X miserit”) 것과 같다고 함으로써 베레스가 더 많은 양의 곡물을 로마 시에 전달했다고 묘사했다.

32) Cicero, *In Verrem*, 2.3.147. 여타의 속주들에서 켄소르들이 관할한 도급의 계약액은 일반적으로 5년간 조세의 총액이었다(김창성, 「로마의 속주 지배와 징세 청구」 『서양고대사연구』 37(2013), p.152).

33) Ⅲ장 1절과 3절을 보시오.

계약량이 얼마였건 간에 결과적으로 로마 시에 전달되는 곡물의 양은 소출의 10%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³⁴⁾ 키케로는 이를 지

34) 키케로는 베레스의 임기 세 번째 해에 도시 레온티니에 대한 1/10세 징수 과정에서 징수권 계약자가 가져가는 곡물의 잔여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Cicero, *In Verrem*, 2.3.116).

1/10세 총량	(=540,000 모디우스)
- 1/10세 징수권 계약량	(=216,000 모디우스)
+ 6% 수수료	(= 32,400 모디우스)
= 잔여량	(=356,400 모디우스)

키케로가 제시한 계산 방식을 통해, 레온티니 토지의 1/10세 계약량은 징수 총량의 40%였다는 것, 그리고 6% 수수료가 제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토지면적과 파종량에 따른 이론상의 1/10세 총량(=18만 모디우스)보다 실제 1/10세 징수자가 가져간 잔여량(=약 36만 모디우스)이 2배 많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키케로가 제시한 계산이다. 하지만 이론상 1/10세의 총량과 징수자 몫의 실 잔여량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게다가 1/10세의 총량이 로마로 전달되는 양이 아니라 1/10세 징수자의 몫으로 계산되는 것은 어색하다. 이 계산이 맞다면 로마는 징수권 매각 시 계약량만을 전달 받으므로 1/10세란 로마의 것이 아니라 징수권 계약자의 것이다. 즉 민간 업자들이 1/10세를 징수하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로마 국가가 1/10세와 상관없는 일부의 곡물만을 나눠가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곡물 위기 때조차 레온티니의 경우처럼 총량이 계약량의 2.5배라는 사실을 로마가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로마는 생산량의 10%가 아닌 그에 한참 모자라는 1/10세 징수권의 계약량만으로 만족했다는 이상한 결론이 도출된다. 심지어 레온티니는 키케로에 협조하지 않았을 만큼 총독에게 우호적이었으니(Cicero, *In Verrem*, 2.3.109) 키케로가 입수한 총량의 수치는 로마에서 추후 감사한 공적 기록에만 근거했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그 차액이 훨씬 컸을 것이다.

키케로의 계산법에 동의하여 스크라무짜는 징수권 계약자의 이윤이란 계약량과 실제 징수량 간의 차액이며, 1/10세 징수 사업에서 징수권 계약자가 10% 이윤을 가져간다고 했다(Scramuzza, 앞의 글(1959), p.238과 pp.257-259). 그가 제시하는 근거가 명확치는 않지만 사업 특성상 징세도급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이윤이 담보되긴 해야 했으므로, 그 계약량을 상회하는 어떤 항목에서 이윤이 도출되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바로 제 3권에서 등장하는 수수료(*lucrum*)나 추가 수수료(*accessio*), 6% 수수료 등이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1/10세의 양에 대해 토지재산 신고 대장 및 협약을 통해 합의하여 징수하는 것은 징수권 계약자의 임무일 뿐 그 자체에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계약량으로 인해 추가적 지출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그에게 발생하는 이윤은 계약량과 다양한 수수료들 간의 차액이다. 따라서 키케로의 계산에 포함되었던 제도적인 6% 수수료에 더하여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를 추가해야 한다.

적하면서도 한 편으로 그 주장의 암시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 대신 징수권 매각의 방식이 불법적이었다고 응수했다.³⁵⁾

이처럼 키케로가 피고인 측 변론의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던 이유는 피고인과 기소인 모두가 로마에서 곡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속주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이다. 베레스의 변론 내용이 유의미하게 간주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곡물 위기로 인해 발생했던 로마인들의 두려움에서 기인했다. 로마 시의 식량 공급원인 속주 시칠리아로부터 총독이 1/10세 징수 사업을 통해 많은 곡물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충분히 환영받을 만한 것이었다.

이후 기원전 54년의 한 재판에서 키케로는 변호인으로서, 기원전 75년 당시 속주 시칠리아의 콰이스토르였던 자신도 ‘곡가 폭동의 시기에 로마 시로 막대한 양의 곡물을 보냈었다’³⁶⁾는, 피고인 베레스의 변론과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있다.³⁷⁾ 로마 시에서 평소보다 곡물 수요량이 더

	6% 수수료	(= 32,400 모디우스)
+	수수료 (= 40만 세스테르티우스)	(= 200,000 모디우스)
+	추가 수수료 (= 9만 세스테르티우스)	(= 45,000 모디우스)
=	잔여량	(= 277,400 모디우스)

당시 시칠리아의 곡물 시장가격은 1 모디우스 당 2~3 세스테르티우스였으니(Cicero, *In Verrem*, 2.3.194) 수수료로 얻은 현금 49만 세스테르티우스는 약 16만 3천 모디우스 혹은 24만 5천 모디우스에 해당한다. 여기에 6% 수수료의 양을 더하면 약 19만 6천 모디우스 혹은 27만 7천 모디우스가 된다. 이는 징수권 계약량과 유사한 수치이다. 계약량이 많았던 것에 상응하여(*In Verrem*, 2.3.194) 수수료의 양이 많아졌다.

로마의 부피 단위와 화폐 단위는 다음과 같다. 1 모디우스(modius)는 6 메딤노스(medimnos)이다. 1 데나리우스(denarius)는 4 세스테르티우스(HS)이며, 1 세스테르티우스는 4 아스(asses)이다.

35) III장 3절을 보시오.

36) Cicero, *Pro Plancio*, 64: “frumenti in summa caritate maximum numerum miseram.”

37) Cicero, *In Verrem*, 2.3.225: “Vellem etiam hoc posset dicere nihil ad se istam rationem pertinere, per quaestores rem frumentariam esse administratam.”(=저는 그가 심지어 이것까지도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즉 그따위 셈이란 것은 그 자신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곡물 관련 일은 콰이스토르들을 통해 처리되었다고 말입니다.) 이에 따라 1/10세 징수권의 입찰과 계약이 시

육 많았던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속주 곡물 매입 사업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키케로의 저 문장에 담긴 의미는 시칠리아에 부임한 총독의 의무인 곡물 1/10세 징수와 매입 사업을 충실히 행했다는 공언인 셈이다. 로마에 전달된 곡물의 양은 누가 총독이 되든지 반드시 맞춰야 하는, 제도적으로 부과된 절대적인 양이었다. 만약 두 가지 직무 수행으로 다른 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곡물을 전달했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 해에 시칠리아의 곡물 작황이 좋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는 베레스의 주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그가 결과적으로 전임 총독들보다 더 많은 양을 로마 시에 전달할 수 있었다면 이는 로마에서 총독에게 명령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결과일 뿐이고 1/10세 징수권을 많은 계약량에 매각했던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로마 시에서 소비되어야 하는 곡물의 양이 공급되지 못하자 로마 시의 주요 식량 공급원이었던 속주 시칠리아에서 평소보다 곡물을 더 전달해줄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상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 베레스 측에서, 징수권의 계약량을 높임으로써 전임 총독들보다 자신이 더 많은 양의 곡물을 로마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들리게 만든 것이다.

1/10세의 총량은 해당 도시와 총독의 공적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로마에 전달된 양을 의미한다. 회계장부는 추후 로마 시에서의 감사를 대비해 작성되었으므로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장부에 기입된 양만큼 로마로 전달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총독이 과잉수취분을 착복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회계장부가 기만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나 로마에서의 감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논고문에서 후자에 대한 증거 제시는 생략되어 있었으므로 어떤 경우이든 장부의 수치상 1/10세 명목으로 과잉수취가 발생했다면 그 과잉수취분은 로마 인민이 공급 받은 몫이 된다.

곡물 수취 총량이 로마 시에 전달된 양이었던 한편, 총독과 1/10세

칠리아에서 총독 앞에서 혹은 그의 대리인인 콰이스토르들 앞에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징수자 간의 공모를 통한 부당이득은 징수권 계약량과 각종 수수료에서 발생할 수 있다. 로마 인민과 속주민들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라는 맥락에서, 기소인 키케로는 곡물 위기 상황에 처한 로마인들이 1/10세 총량의 과잉수취를 오히려 환영할 것임을 알기에 불법적 공모의 혐의를 수사학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애썼다.³⁸⁾ 이를 위해 1/10세 징수권의 매각 과정뿐만 아니라 1/10세 징수 과정에서도 베레스와 그의 하수인의 결탁 관계를 통한 위법행위를 부각시켰다. 이때 특히 불법적 고시들을 통해 1/10세 징수자들의 무제한적 강탈을 허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칠리아 현지 관리들과도 공모했음을 보임으로써 결탁 관계를 강조했다.³⁹⁾

2차 논고문 제3권 전체의 내용에 따르면 베레스가 곡물 관련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키케로의 반박이란 바로 곡물 1/10세 징수를 통한 과잉수취분을 곡물 매입 항목으로 전용했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키케로는 도시들의 공적 증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베레스가 실제 징수권 계약량에서 삭감한(dempsit) 양을 회계장부에 기입한 후 실 계약량과 수수료를 합한 양과 금액을 도시들로부터 받고 징수권을 인수시켰던 사례들을 나열했다.⁴⁰⁾ 징수권의 실 계약량과 도시들로부터 받은 인수 명목의 양의 차액을 베레스가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그것은 횡령이다. 다만 기원전 73년 테렌티우스-카시우스 법에 의한 곡물 매입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기 위해 시칠리아 총독은 비축분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비축분이란 유사시를 대비해 총독이 미리 장만하여 저장해둔 분량으로 기능할 수 있다. 도시들에서 곡물 매입

38) Steel, 앞의 논문(2007), pp.47-48.

39) 제노비제는 Cicero, *In Verrem*, 2.3.25와 2.3.34(각주 129번)에서 등장하는 edere 동사가 시칠리아 현지 관리의 행정적 업무(professio)와 관련 있는 1/10세 징수자의 선포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키케로가 베레스의 고시의 자의적인 성격을 지나치게 문제시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Genovese, 앞의 논문(1993), p.144, n.164). 고시의 이 문장은 단지 시칠리아 현지 관리의 개입이 관련된 '공식적인 선언(dichiarazione ufficiale)'을 다시 강조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40) 각주 146번과 [표 6]을 참고하시오.

을 위한 충분한 양의 밀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높은 품질의 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비축분이 필요한 경우이다. 한 도시에서 그와 같이 곡물 강제매입에 부응하기 어렵다면 그 해에 시칠리아에 전반적으로 곡물이 부족하며 곡물 가격이 높았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총독이 비축분을 모아두는 방식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총독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베레스의 경우처럼 비축분을 핑계로 한 사취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비축분 보유가 가능했다면 그 명목으로 최대 저장할 수 있는 양은 매입 곡물의 최대량인 380만 모디우스일 것이다. 한 해에 과세의 1/10세의 양과 매입의 두 번째 1/10의 양(*altera decuma*)이 동일하므로 1/10세의 총량에 따라 총매입량도 변화한다. 그렇다면 베레스가 1/10세 징수 항목에서 정량보다 과잉수취했다는 혐의는 그 과잉수취분이 비축분이었다는 변론으로서 무효화될 수 있다. 비축분의 마련 방식과 최대 저장량은 속주 총독의 판단 대상이었지만 심판인단은 그것의 필요성 자체를 수용할 것이었기에, 키케로는 이것들을 생략한 채 1/10세 징수자와의 공모와 같은 수탈행위만을 부각했다. 비축분에 대해 로마에서 정확한 법을 제정하여 규제하지 않은 한 이를 통한 총독의 수탈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도시에서 곡물을 매입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로마에서는 국고로부터 매입 자금을 총독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이 공금을 사용해 해당 도시 외부에서 밀을 구입한다면, 매입 비율과 시장가격의 차액만큼만 도시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키케로에 의하면 베레스는 시장가격에 맞춰 밀의 양에 대한 현금을 도시로부터 지불받았고 그 매입 항목을 위해 책정된 매입 자금마저 이중으로 가져감으로써 사취와 횡령을 행했다. 스틸(C. Steel)은 “키케로는 할라 이사에서 적합한 곡물의 부재를 보상하기 위해 베레스에게 전달했던 돈의 액수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⁴¹⁾고 한 바 있는데, 실제로 합법적으로 행해졌을 수 있는, 유사시 곡물 매입 방식이 독자에게 은폐되었

41) Steel, 앞의 논문(2007), p.45.

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해당 도시에서 두 곡가의 차액만을 부담했다면 이는 반환의무의 수탈 혐의가 아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키케로의 증언 외에 직접 베레스 측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고 이에 2차 논고문은 추후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변론으로 언급된 내용 자체가 키케로가 고안해낸 수사학적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즉 키케로는 청중이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을 포착하여 그것을 피고인의 강력한 변론으로 상정함으로써,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과 로마의 국익을 위해 일시적이거나 속주의 희생을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동시에 이 문제를 악용한 베레스의 기만과 사적 이득을 지적하여 그 두려움을 분노로 전환하도록 반박했다. 곡물 위기에 대한 로마인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한편 베레스의 불법적 행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키케로가 이와 같은 수사학적 전략이 깔린 논고문을 작성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프라첼(Th. Frazel)에 따르면 키케로는 2차 논고문 제3권의 도입부에서 심판인단의 권위와 노련함(auctoritas et prudentia) 그리고 신중하게 들어야 할 책임을 상기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베레스의 통치 이후 시칠리아의 유기된 경작지(agri deserti)가 베레스의 혐의를 입증한다고 설득했다.⁴²⁾ 베레스의 총독 임기 후 각 도시의 경작자 인구가 감소하여 “그의 탐욕 때문에 시칠리아의 1/10세 과세 대상 경작지가 유기되었다”⁴³⁾는 키케로의 주장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되던

42) Frazel, 같은 책(2009), pp.199, 204, 209, 213 ; Cicero, *In Verrem*, 2.3.226–228. 특히 2.3.226: “Quid est enim Sicilia si agri cultionem sustuleris, et si aratorum numerum ac nomen exstinxeris?” (=만약 시칠리아로부터 농업을 빼앗아간다면, 그리고 토지 위의 경작자들의 인구수와 이름을 소멸시켜버린다면, 실로 무엇이 시칠리아입니까?)

43) Cicero, *In Verrem*, 2.3.120: “... ager decumanus provinciae Siciliae propter istius avaritiam desertus est.” 도시 레온티니: 기원전 73년 84명에서 기원전 71년 32명. 도시 무티카: 기원전 73년 187명에서 기원전 71년 86명. 도시 헤르비타: 기원전 73년 252명에서 기원전 71년 120명. 도시 아그리움: 기원전 73년 250명에서 기원전 71년 80명. 히에론 법에 따라 현지 관리들이 매년 경작자

서 강조되었다. 즉 반환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혐의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피고인이 시칠리아 경작지가 유기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를 각 곡물 관련 사업 항목들을 통한 수탈 혐의들의 고발 직후마다 교차 배치함으로써 두 혐의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종합하자면 곡물 징수 및 매입과 관련하여 키케로가 문제 삼는 것은 첫째 베레스가 로마 시에 곡물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그것이 기만적인 방식으로 행해졌다는 것이었고, 둘째 베레스의 3년 임기 이후 시칠리아의 모든 경작지가 유기되었다는 것이었다. 즉 그가 행한 수탈의 엄청난 규모로 인해 시칠리아 전역의 경작지가 황폐화되고 경작자들이 토지로부터 도망갔으며 향후 시칠리아 곡물 생산의 기반마저 파괴되었다는 주장이었다.⁴⁴⁾ 이 두 가지는 논고문 전체에서 매 주제마다 반복하여, 교차적으로 등장하면서 강조된다.⁴⁵⁾ 이는 시칠리아의 곡물 소출이 줄어들면 로마의 곡물 가격이 상승하며 시칠리아가 로마 시의 핵심적인 식량 공급 원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간 로마에 대해 가장 충성스러웠던 속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로마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시칠리아 속주민에 대한 수탈이 곧 로마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키케로가 2차 논고문을 작성하여 공개했을 때는 이미 아우렐리우스 법이 통과된 이후이자 피고인 베레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완료된 이후였다. 따라서 이 2차 논고문이 피고인의 유죄선고만을 목적으로 발표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만 아우렐리우스 법의 통과를 위해 법안 발의자가 원로원 의원들의 부패를 공격했고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반환 재판의 기소인인 키케로가 더욱 강조하면서 인용했다는 점에서 그의 논고문 작성과 발표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단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므로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44) Cicero, *In Verrem*, 2.3.46–47, 2.3.120–129, 2.3.226–228.

45) [표 1]을 참고하십시오.

키케로가 말하는 기소인(accusator)이란 반대되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지닌다. 첫째는 일반적인 기소인으로, 정적에 대해 승소하기 위해 혐의들을 날조해내는 협잡꾼들이다.⁴⁶⁾ 키케로가 평범한 기소인이라 칭하는 이들은 위증자 카이킬리우스(Q. Caecilius Niger, 기원전 73년의 콰이스토르)를 포함한 예전의 기소인들을 말한다. 베레스는 속주에서 자신의 콰이스토르였던 카이킬리우스를 가짜 기소인(praevaricator)으로 급조했다.⁴⁷⁾ 이에 키케로는 자신이 기소인이라 불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은 시칠리아 인들을 대신해 기소를 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⁴⁸⁾ 둘째는 진정한 기소인으로, 키케로 자신을 말한다. 기소의 임무는 실제로 매우 성가시고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기소인이라면 로마의 국익을 수호하고 법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⁴⁹⁾ 그는 진정한 기소인의 자세를 말하면서 앞

46) Cicero, *In Verrem*, 2.2.167, 2.3.1-9. 2.4.53: “Et si quaeritis, ut ipse de me detraham, illos ego accusatores puto fuisse qui eius modi hominum furta odore aut aliquo leviter presso vestigio persequabantur.”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제게, 제 자신이 저를 깎아내릴 법한 얘기를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면, 냄새나 얇게 패인 어떤 발자국을 따라 이런 부류의 사람들(sc. 인용문 앞 단락에서 언급된 부류의 사람들)의 도적질을 끝까지 추적하곤 했던 이들이 기소인들이었다고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프라첼에 의하면, 특히 *In Verrem*, 2.2.167에서 “키케로는 정적(政敵)들(inimici)과 기소인들(accusatores)을 무심코 등치시키고 있다”(Frazel, 같은 책(2009), p.162, n.110).

47) Cicero, *In Verrem*, 1.6. 1.9: “... 그랬다면 원로원 의원 하나를 입맛대로 골라 고발자로 법정에 세우고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때까지 그사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식으로 원로원을 얹보고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8) Cicero, *Divinatio in Caecilium*, 15: “At enim cur a me potissimum hoc praesidium petiverunt?” (=그러나 이 사람들이(sc. 시칠리아 속주민) 어째서 다른 사람들보다 저에게 이 보호를 요청했을까요?)

49) Cicero, *In Verrem*, 2.3.4: “Atque ego hoc plus oneris habeo quam qui ceteros accusarunt - si onus est id appellendum quod cum laetitia feras ac voluptate, verum tamen ego hoc amplius suscepi quam ceteri. ... Omnia postremo quae vindicaris in altero, tibi ipsi vehementer fugienda sunt.” (=더욱이 바로 저는, 다른 이들을 고발했던 이들보다도 더 많은 이런 종류의 짐을 안고 있습니다 - [당신이] 기쁨과 즐거움을 머금고 짊어질 법한 일이 만약 짐(부담)이라고 일컬어져야 한다면, 그럼에도 바로 저는 여타 다른 이들보다 더 막중하

서 기소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서 전환하여 더 이상 기소인이라는 사실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시대와 국가의 요청을 수행하겠노라 표방했다.⁵⁰⁾ 이처럼 기소인에 대한 키케로의 이중적 태도는 키케로가 로마의 국익을 수호하고자 애썼던 자신의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당시 정치인들 간에 정치적 경쟁이 과열되어 있었고 그것이 법정에서의 기소와 변호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베레스 재판의 결과가 키케로가 표방한 재판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그가 노력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원전 70년 베레스 재판과 동시에 아이딜리스에 당선되었던 키케로는, 이후 특히 베레스 재판의 승소 경력을 바탕으로 명성을 획득하여 귀족 내 신망을 얻었다. 2차 공판이 무산된 후에도 방대한 분량의 2차 논고문을 작성해 공개했다는 사실은 이 승소가 자신의 정치경력 상승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실제로도 그랬듯이)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만큼 반환법정 재판이 정치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키케로는 이후에도 법정 기소와 논고 연설, 원로원 내 연설을 계속하면서 관직의 경로(*cursus honorum*)를 순서대로 밟았으며 마침내 기원전 63년 최고위 정무관직인 콘술에 당선되었고 국부(*patres patriae*)로 칭송받기에 이르렀다.

키케로는 분명히 기원전 1세기 전반기에 로마의 국익과 정의 수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기소 연설(논고) 또는 변론을 하던 정치가였다. 그런 그마저도 속주 킬리키아 총독이 되었을 때(기원전 51~50년) 임기 중에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심지어 여분의 속주 통치 자금을 수행원단에게 분배하기를 거부하고 국고에 반납했다고 과시한 바 있다.⁵¹⁾ 이는 속주 총독의 임기 중 사적 재산 증식 행위가 일

게 그것을 떠맡았습니다만, 즉 타인을 비난했던 바로 그 흠결들에 있어서 본인들은 훌가분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요구된다는 바로 그 점을 말합니다. ... 끝으로 [당신이] 타인에게서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게 될 법한 일들은 모두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 몹시도 피해야만 합니다.)

50) Cicero, *In Verrem*, 2.3.126.

반적인 경향이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키케로는 법정 연설가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 속주 수탈자금을 공유한 라비리우스(C. Rabirius Postumus)를 변호(기원전 54/3년)하거나 속주 수탈 혐의로 기소된 스카우루스(M. Aemilius Scaurus)를 변호(기원전 54년)하기도 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베레스 기소 당시 키케로는 진정으로 속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자 했다가보다는 그때그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베레스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관례를 무시하고 속주 시칠리아를 수탈했던 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을 인지한 전형이 키케로였다. 키케로는 동료 원로원 의원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높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속주 킬리키아에서 M. 유니우스 브루투스에 대한 키케로의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키케로가 킬리키아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기원전 51년) 그곳에서 전임 콰이스토르였던 브루투스의 한 보좌 관원이 살라미스 사람들로 부터 돈을 수탈하기 위해 기병 프라이펙투스가 되어 있었고 5명의 살라미스 원로원 의원들이 살해당했음을 발견했다. 키케로는 그의 임명을 취소했지만 브루투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그의 보좌 관원에게 이와 유사한 직책을 카파도키아에 제공했고 살라미스에 대한 브루투스의 대출의 유효성을 승인했다.⁵²⁾ 이것은 키케로가 나름대로 자신의 평판과 브루투스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또 한 가지의 일화는 당시 만연했던 속주의 도급사업체에 대한 원로

51) Cicero, *Epistulae Ad Atticum*, 7.1.6. 그는 22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축적했다 (*Epistulae Ad Atticum*, 5.20.9). Plutarchos, *Comparations of Demosthenes and Cicero*, 3.3: “키케로가 시칠리아의 콰이스토르, 그리고 킬리키아와 카파도키아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는 부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시기였고, 총독들로 파견된 이들은 강탈을 부도덕한 행위라고 느끼면서도 노골적인 수탈을 자행했으므로 재산의 수탈은 극악무도한 범죄로 생각되지 않았으나 온건하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자부심을 느낄 정도였던 시기였다. 하지만 키케로는 부에 대한 경멸, 그의 인도주의적 선행에 대한 많은 증거를 제공했다.”

52) Cicero. *Epistulae ad Atticum*, 5.21-6.1. 브루투스는 징세도급 사업에 원로원 의원이 동업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특히 6.1.5-6).

원 의원들의 암묵적인 동업관계에 대해 가해진 전략적 공격에 관한 것이다. 키케로는 세스티우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바티니우스(P. Vatinius)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및 도급업자들의 배당금(partes)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⁵³⁾ 이는 사실상 두 인물 모두의 도급업체와의 동업 관계를 폭로하는 것이지만 카이사르에게는 불쾌감을 주지 않은 채로 적대적인 증인의 명예만을 손상시키는 전략이었다. 사업체 배당금의 보유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바티니우스가 그 배당금을 획득한 방식을 공격했던 것이다. 키케로는 가비니우스(A. Gabinius, 기원전 58년의 콘술)의 시리아 도급업자들에 대한 박해 역시, 그들과 기사신분의 명예를 무시한 행동이라 주장했다.⁵⁴⁾ 그는 속주 킬리키아 근무 경험을 토대로 도급업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⁵⁵⁾

이로써 베레스 반환 재판의 논고문에서 나타난 키케로의 수사학적 전략과, 피고인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수사학적 표현 방식을 확인했다. 또한 베레스 재판 이후 키케로의 경력과 성향을 통해 그의 정치적 의도의 실현이 이 논고문의 작성과 공개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키케로의 논고문에서 실증의 방식이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재판의 심판인단과 연설문의 독자들은 키케로가 논고의 근거로 제시하는 수치들이 공적 기록으로부터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지에서 작성된 토지재산 신고 대장과 도시

53) Cicero, *In Vatinius Testem*, 29: “eripuerisne partis illo tempore carissimas partim a Caesare, partim a publicanis?” (=그때 가장 값비싼 몫 (sc. 배당금)을 당신은 일부는 카이사르로부터, 일부는 징세도급업자들로부터 갈취했습니까?) 이밖에도 13과 15. 베이디안에 의하면 29는 변동시세가 적용된 사업체의 주식(배당금)을 원로원 의원이 몰래 보유하고 매매했음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사료이다(Badian, 앞의 책(1972), p.102).

54) Cicero, *De Provinciis Consularibus*, 10.

55) 예를 들자면 Cicero, *Epistulae ad Familiares*, 13.9. 이는 키케로가 비티니아 콰이스토르에게 쓴 편지로, 비티니아 사업체의 우두머리이자 전체 징세도급업체의 우두머리인 P. 루필리우스와 친밀한 관계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추천하는 한 도급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사업체의 성실함과 감사함이 있을 것이라고 키케로 자신이 약속하였다. 이밖에도 *Epistulae ad Familiares*, 13.65.2.

공금의 회계 기록을 근거로 속주의 징세 행정의 처리되었고, 징세의 전 과정을 기록한 총독의 회계 장부는 로마에서 감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신빙성 있는 자료는 기소인 키케로가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의 제시 방식이 수사학적이었을지라도 제시된 수치 자체에 기소인의 복심이 개입할 수는 없다. 가령 도시 레온티니의 1/10세와 관련해 이론상의 총량과 실 잔여량을 대비시킨 방식은 수사학적이었지만 그 총량과 잔여량의 수치는 공인된 기록에서 나왔다.⁵⁶⁾

시칠리아 속주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한 베레스의 기소인으로 키케로를 선택했다는 사실 역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⁵⁷⁾ 키케로의 향후 경력에서 봤듯이 반환 재판에서의 승소는 기소인에게 도움이 되었겠지만 시칠리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접근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승산이 없었을 것이다. 키케로는 기원전 75년 시칠리아 콰이스토르로서 그곳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했기에 승소에 자신 있을 수 있었다. 이후 당시 자신의 근무 실적에 대한 시칠리아 속주민들의 찬양뿐만 아니라 로마 귀환 길에 푸테올리에서 받았던 칭송을 언급한 것은 그의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⁵⁸⁾

실제로 이러한 키케로의 자신감은 그의 과거 법정 연설 경력에서 기인하기도 했다. 그는 아르피눔의 기사신분 출신 신인(homo novus)으로 37세에 베레스 기소를 맡기까지 수차례 법정에서 변호 경험을 지녔다.⁵⁹⁾ 혈통귀족 출신이 아니었지만 법정 경력만으로 키케로가 신분을 상승시켜갔던 과정은 상당한 법적 전문성을 요했을 것이다. 키케로의

56) 베레스 논고문 제3권의 수치들은 번역본과 비판 편집본마다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한해 그린우드의 번역본만을 참고했다. L. H. G. Greenwood, ed. & tr., *Cicero: The Verrine Or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1928-1935).

57) Cicero, *Divinatio in Caeciliam*, 14-15.

58) Cicero, *Pro Plancio*, 64-65.

59) 기원전 81년 P. 퀸티우스를 변호한 것이 키케로의 첫 법정 경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아메리아의 Sex. 로스키우스 변호, Q. 로스키우스 갈루스 변호, M. 툴리우스 변호의 연설문이 남아있다.

변호 연설문과 논고문들에 등장하는 재판 과정은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이를 알 수 있는 일례로, 기소인 키케로는 피고인이 시칠리아에서 곡물 1/10세 한 항목만으로 엄청난 금액의 불법자금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판결 매수 적발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부 재판의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⁶⁰⁾ 베레스가 자신의 반환 재판에서 판결을 매수하기 위해 로마에서 자행했던 부패 행위들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에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보건대 베레스 임기의 시칠리아 곡물 관련 수량적 증거들과 반환법정 재판 과정의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베레스 논고문은 충분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3장에서는 베레스 논고문 및 기소인 키케로의 다양한 진술의 성격에 대해 살펴본 내용들에 유념하면서 속주 시칠리아에서 총독의 곡물 수탈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 수탈 혐의를 처벌하는 명목의 반환법 및 반환법정의 한계를 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60) Cicero, *In Verrem*, 1.24.

Ⅲ. 속주 시칠리아의 특수성과 총독 베레스의 수탈행위

1. 속주 시칠리아 곡물 과세의 특수성

로마가 2차 포이니 전쟁 승리로 시칠리아를 속주화한 이후,⁶¹⁾ 시칠리아에서 생산된 곡물은 전쟁 및 주둔군을 위한 보급 식량으로 보내졌던 한편 상당 부분이 로마 시로 전달되어 소비되었다. 특히 밀 생산성이 높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속주 시칠리아에서 생산된 곡물은 주로 로마 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식량 공급원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기원전 169년 여름 로도스(Rhodes) 섬의 사절들이 로마에 찾아와 로마의 정복지들로부터 밀을 수입할 권리를 요청했을 때 로마 원로원에서 그들에게 10만 메딤노스의 밀을 시칠리아에서 수입할 특별 권리를 승인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⁶²⁾ 시칠리아의 밀이 로마 시의 수급을 담당하게 된 것은 기원전 3세기 한니발 전쟁 시기를 전후하여 이탈리아 반도에서 노예 노동에 입각한 과수 재배나 방목 위주의 라티퐁디아가 점차 증가하고 곡물 생산을 주로 담당할 자영농이 감소한 결과이기

61) 1차 포이니 전쟁(기원전 264~241년) 이후 히에론의 시라쿠사이 왕국을 제외한 시칠리아 전역이 로마의 첫 해외 속주로 조직되었다. 로마는 카르타고에 대한 견제로서 식량 공급원인 사르디니아를 정복해 기원전 227년 코르시카와 함께 속주화했다. 시라쿠사이 왕국은 기원전 215년 히에론 왕의 사망 때까지 자치로 남아 있었다가, 2차 포이니 전쟁(기원전 218~201년) 중인 기원전 211년 로마가 시라쿠사이를 장악한 후 시칠리아 전체가 로마의 속주로서 통합되었다.

62) Polybios, *The Histories*, 28.2. 이 증거에 대해 김경현은 시칠리아의 농산물은 로마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곳에도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다고 봤으며(「로마 지배와 시칠리 농업경제의 변화」 『中齋 張忠植博士 華甲記念論叢』(中齋 張忠植博士 華甲記念論叢刊行委員會, 1992), p.835), 릭먼 역시 시칠리아의 밀이 로마만을 위해 남겨졌다고 간주했다(G. Rickman, *The Corn Supply of Ancient Rome* (1980), p.105).

도 했다.⁶³⁾

로마인들은 속주에 대해 로마인의 식량창고인 것처럼 간주했고 특히 속주 시칠리아를 특정하여 곡물 창고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키케로가 현자(Sapiens)라 칭하는 대 카토(M. Porcius Cato, 기원전 195년의 콘술)는 시칠리아 섬에 대해 ‘우리 국가의 곡창(穀倉)이자, 로마 평민의 유모’⁶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었다. 이는 시칠리아가 로마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식량인 곡물(밀)의 공급지로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해외 팽창을 시작했을 때 시칠리아를 최초로 속주로 삼았고, 여러 속주들과 다른 독특한 곡물 과세 체계를 정립했다.

속주 시칠리아와 우리의 다른 속주들 간에 토지들의 과세의 체계에서 이 점이 다릅니다, 심판인단 여러분. 다시 말해, 어떤 곳에 부과된 세금은 고정된 과세금이라 불렀던 정액세였는데 그 예는 속주 히스파니아와 대부분의 카르타고의 영지로, 승리의 보상이자 전쟁의 벌금처럼 여겨집니다. 또 어떤 곳은 속주 아시아에서처럼 셈프로니우스 법에 따르는 켄소르의 도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시칠리아의 도시들은 그들이 지녔던 똑같은 법에 따라 그리고 이전에 자신들의 [왕에게] 복종했던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로마 인민에게 복종하게끔 그 도시들을 우리는 우정과 신의 관계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⁶⁵⁾ (이하 본문 또는 각주에서 밑줄 강조와 []

63) 허승일, 『증보 로마 공화정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p.50-53.

64) Cicero, *In Verrem*, 2.2.5: “itaque ille M. Cato Sapiens cellam penariam rei publicae nostrae, nutricem plebis Romanae nominabat.” 이밖에도 그 단락 전체와 *ibid.*, 2.3.11. 스트라본 역시 시칠리아의 곡물 생산성에 대해 기록했다(영문 번역은 Scramuzza, 앞의 글(1959), p.253). Strabo, 6.2.7: “그 국가의 비옥함에 관한 한, 내가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사람들은 그곳이 이탈리아의 비옥함에 전혀 하등하지 않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원전 70년대 로마의 속주들 중에서 시칠리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사르디니아의 세 속주들이 주요 밀 생산 속주들이었다(Cicero, *Pro Lege Manilia*, 34: “... haec tria frumentaria subsidia rei publicae ...”).

65) Cicero, *In Verrem*, 2.3.12: “Inter Siciliam ceterasque provincias, iudices, in agrorum vectigalium ratione hoc interest, quod ceteris aut impositum

추가는 필자의 것임.)

시칠리아의 과세 체계는 기원전 123년 C. 그라쿠스가 도입했던 켄소르의 도급제(*censoria locatio*)를 활용하는 속주 아시아의 과세 체계와 비교될 수 있다.⁶⁶⁾ 그라쿠스는 개혁 자금을 마련하고 기사신분이 자신의 개혁을 지지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원천으로서 막대한 수입을 낼 수 있는 속주 아시아를 활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⁶⁷⁾ 이는 당시 기사신분이 그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징세도급업체가 속주 징세사업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만들었다.⁶⁸⁾ 위 인용문을 보면 기원전 70

vectigal est certum, quod stipendiarium dicitur, ut Hispanis et plerisque Poenorum quasi victoriae praemium ac poena belli, aut censoria locatio constituta est, ut Asiae lege Sempronia ; Siciliae civitates sic in amicitiam fidemque accepimus ut eodem iure essent quo fuissent, eadem condicione populo Romano parerent qua suis ante paruissent.”

66) 시칠리아 속주화 이후 속주 아시아 편입에 이르기까지 로마에는 여러 속주들이 발생했지만(각주 1번), 그럼에도 그때까지 정기적 잉여분을 생산하는 유일한 속주는 시칠리아였던 것으로 보인다.

67) 허승일에 따르면 반환법을 비롯해 C. 그라쿠스가 기원전 122년까지 통과시킨 ‘4개의 신법들’(속주 아시아 관세법·속주 세제법·콘술 관할속주에 관한 법·반환법)은 속주 아시아에서의 재원을 곡물법 개혁자금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속주 아시아는 페르가몬 왕국의 유증으로서 로마에 주어졌다(허승일, 앞의 논문(2004)). 시칠리아를 제외한 다른 속주들에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 세금을 납부할 따름이었지만, 속주 아시아는 단연코 가장 이윤이 좋은 토지였다(Cicero, *Pro Lege Manilia*, 13).

68) Badian, 앞의 책(1972), p.91: “C. 그라쿠스가 책임은 부재한 채 힘을 부여했던 그 새로운 계층(sc. 기사신분)은, … 그 힘을 무책임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기사신분과 도급업자들이 동질적 집단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키케로는 그렇게 보고 있었고, 이는 당시 팽배한 인식이었다(Cicero, *In Verrem*, 2.3.94). Cicero, *Pro Flacco*, 11: “... cum in re manifesta putasset nefas esse publicanum iudicare contra publicanum, sublatus erat e numero recuperatorum, tamen tenuit se neque attulit in iudicium quicquam ad laedendum nisi voluntatem.”(=[플라쿠스는] 명백한 사안에 있어서 한 도급업자가 다른 도급업자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는 생각했고, 그는 회복심판원단의 명단에서 삭제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제했고 선의 외에는 해를 끼칠 그 어떤 것도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즉 도급업자들은 하나의 신분 집단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년대 후반까지, 시칠리아를 제외하면 로마에서 속주의 곡물 과세에 도
급업체를 공식적으로 활용한 곳은 속주 아시아가 유일했음을 알 수 있
다.⁶⁹⁾

속주 시칠리아에는 옛 시라쿠사이 왕국에서 제정된 히에론 법(*lex Hieronica*)에 근거한 특수한 과세 체계가 있었다.⁷⁰⁾ 이 법은 곡물 생
산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을 조세로 징수하도록 했는데 특히 경작자
들의 이해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⁷¹⁾ 시칠리아를 획득한 이래로, 로마는 그 섬
의 과세 전통을 존중하여 히에론 법에서 제시하는 대로 곡물 1/10
세⁷²⁾ 징수권의 매각(*venditio decumanorum*) 조건을 유지해 왔다.⁷³⁾

69) 브룬트에 따르면 속주 시칠리아를 제외한 여타 속주들에서는 속주 과세에 도
급업체가 연루될 만한 사업이 거의 없었다(Brunt, 앞의 책(1988), p.167). 그라
쿠스의 개혁 이후 폼페이우스는 기원전 60년대 후반에 시리아를 속주로 병합하면
서 비티니아/폰투스, 킬리키아, 키레네 등에 속주 아시아 과세 체계를 도입했으며
(Badian, 앞의 책(1972), p.99), 이 조치는 술라가 기원전 82~81년 원로원을 개
혁한 이후 자리 잡은 지배층 내부의 변화와 맞물려 전반적인 속주 수탈의 발판을
제공했다. 베이디안은 원로원 의원들이 속주 징세도급업체와 기사신분의 '후원을
받고 있었으며'(p.98) 술라 이후 둘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했고 예상대로 원
로원 의원이 기사신분을 '넘어섰다'(p.99)고 하였다(Badian, 같은 책(1972),
pp.98 - 100). 블뢰젤은 '늦어도 기원전 50년대에는 도급업체들의 주식(*shares*)
이 거래되었고' 원로원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승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Blösel, 앞의 논문(2012),
p.78). 주식 거래의 증거는 Cicero, *In Vatinius Testem*, 29와 Valerius
Maximus, *Factorum ac Dictorum Memorabilium*, 6.9.7. 이에 총독들은 속주
에서의 수입에서 사업체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자신의 몫에 만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0) Cicero, *In Verrem*, 2.2.32: "Inter aratores et decumanos lege
frumentaria, quam Hieronicam appellant, iudicia fiunt." (=경작자와 1/10세
징수자 간의 소송들은 [예외적으로] 히에론 [법]이라고 불리는 곡물법에 의해 재
판이 이루어집니다.) 시칠리아의 모든 법적 사안들은 루필리우스 법 하에 있었지
만 예외적 중요성을 갖는 곡물 1/10세와 관련한 사안들, 즉 징세권 매각, 징세 방
식, 징세와 관련한 소송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히에론 법을 따랐던 것이다.

71) Rickman, 앞의 책(1980), p.37.

72) *decuma*란 1/10세의 과세 항목을 말한다. 속주에서 1/10세를 징수하는 항목에
는 곡물 이외에도 포도주, 기름, 잡곡류 등의 농산물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달리

다만 기원전 75년 원로원 의결에서는 시칠리아의 포도주, 기름, 잡곡류에 대한 1/10세 징수권의 매각을 시칠리아가 아닌 로마에서 진행한다고 공언한 일이 있었다.⁷⁴⁾ 이는 로마인 징세도급업자들에게 혜택을 주

특정하지 않는 한 ‘1/10세’라는 표현은 곡물 1/10세(frumentum decumanum)를 지칭한다. decuma는 과세 항목뿐만 아니라 매각 대상인 1/10세 징수권을 의미하거나 1/10세 과세 대상인 토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decumanus란 곡물 1/10세 징수권의 계약자를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1/10세 징수자’로 표현한다. 단, 이 단어의 이러한 의미는 베레스 논고문 제3권에서만 나타나며, 다른 모든 사료에서는 도급 사업체의 ‘이사회’의 의미로 쓰인다(김창성, 「로마 공화정 후기 청부회사의 조직과 위상」 『서양고대사연구』 37(2014a), pp.80-81). 시칠리아의 곡물 1/10세 징수자는 주로 현지인으로, 로마인 징세도급업자들(publicani)과 다르다. 다만 키케로에 따르면 베레스의 임기 동안 곡물 1/10세 징수자 중 로마인이 8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베레스 논고문 내에서 이들을 징세도급업자라고도 칭하기도 하지만 로마인이 아니다. arator란 토지의 경작자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경작자’라는 표현은 곡물 1/10세 과세 대상 토지의 소유주이자 1/10세 납부 대상자를 지칭한다.

73) 프리차드에 따르면 로마인들이 시칠리아의 과세 전통을 존중해준 이유는 “시칠리아 인들이 그간 자신들의 왕에게 납부해오던 곡물 1/10세를 로마에 납부할 때 고생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R. T. Pritchard, “Cicero and the "Lex Hieronic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19(3)(1970), p.354 ; Cicero, *In Verrem*, 2.3.15). 따라서 히에론 법은 시칠리아 인들의 독립성과 정복자 로마의 관대함을 모두 상기시켜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는 프리차드가 인용한 카르코피노의 말과도 같다. “로마인이 히에론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덕분에, 히에론 법은 국가의 법이자 수호적인 법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피정복민 시칠리아 인들의 눈에 독립성으로서 남아있는 것의 상징이 되었다”(Carcopino, 앞의 책(1914), p.75 ; Pritchard, 같은 논문(1970), p.354에서 재인용).

74) Cicero, *In Verrem*, 2.3.18: “L. Octavio et C. Cottae consulibus senatus permisit ut vini et olei decumas et frugum minutarum, quas ante quaestores in Sicilia vendere consuessent, Romae venderent, legemque his rebus quam ipsis videretur dicerent. … cum viros primarios atque amplissimos civitatis multos in consilium advocassent, de consilii sententia pronuntiarunt se lege Hieronica vendituros.” (=콘술들 L. 옥타비우스와 C. 코타에게(sc. 기원전 75년) 원로원은, 이전에 콰이스트르들이 시칠리아에서 경매를 수행해왔던 관행을 대신해서, 로마에서 포도주, 기름, 잡곡류의 1/10세 징수권을 경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법을 제정하도록 허용했습니다. … [콘술들은] 로마에서 가장 저명하고 중요한 인사들을 소집해서 그 모임의 의결에 따라 히에론 법에 의한 [1/10세] 경매

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현지인 1/10세 징수자들의 반발이 있자, 로마 내 저명한 인사들의 모임에서 상의한 결과 콘술들은 이 사안 역시 다시 히에론 법의 조건들로 돌아갈 것을 선언했다.⁷⁵⁾ 그만큼 히에론 법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지만 로마 원로원에서도 히에론 법에 따른 곡물 1/10세의 제도를 존중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속주 시칠리아의 과세 체계는 로마인 징세도급업체에게 주도권을 주는 속주 아시아의 과세 체계와는 성격이 달랐다.

두 체계들 간 차이점들 중 주요한 하나는 시칠리아의 곡물 1/10세의 징수에서 로마인이 아니라 현지인 1/10세 징수자(decumanus)가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로마 총독과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현지인이라는 약점으로 인해 로마의 반환법정에서 압력을 행사할 능력은 없었다. 총독의 속주 수탈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라고는 오로지 반환법정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시칠리아의 곡물 조세의 징수권 도급 계약자들이 현지인이었다는 점은 시칠리아 총독의 재량권의 범위를 넓혀 주었다. 여타 속주들에서 총독은 징세도급업체와 이윤을 분할해야 했으며 무리하게 수탈을 하다가는 반환법정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에 시칠리아에서는 그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요컨대 로마는 여타 속주들과 달리 시칠리아가 로마 시 곡물 수급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곳의 곡물 과세 체계를 현지의 전통 세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한 것이었다.

로마의 이러한 조치는 속주 경작자들을 보호하여 곡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는 로마인 징세도급업자들보다 현지인 1/10세 징수자들에게 유리한 징수권 매각 방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결과 반환법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현지인들에 대해 오히려 로마 총독의 독직 기회가 더 열려 있었다는 문제도 있었다. 베

를 수행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75) 이는 키케로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위 각주). 반면 많은 연구에서는 이 해부터 곡물을 제외한 과세 항목들의 1/10세 징수권이 로마에서 징세도급업자들에게 경매되기 시작했다고 합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인들이 시칠리아의 곡물 1/10세 징수를 규정한 히에론 법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레스의 재판은 바로 이러한 독특한 시대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2. 로마 시의 곡물 부족과 총독 베레스의 곡물 매입 의무

앞서 봤듯이 곡물 공급지라는 시칠리아의 지역성 특수성과 더불어, 로마 시의 곡물 수요가 증가했을 때라는 시기적 특수성 역시 시칠리아 총독의 징세 업무에 대한 평가의 고려 사항이 되었다. 2차 베레스 논고문 제3권 전체에서 키케로는 피고인 베레스 측의 매우 유의미하고 강력한 변론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변론이란 바로 베레스 자신이 로마 총독으로서 ‘(나는) 곡물 1/10세 징수권을 많은 양에 팔았다’⁷⁶⁾는 것이었다. 즉 키케로에 따르면 베레스는 많은 양의 곡물을 입찰했던 자들에게 징수권을 매각하여 계약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그가 관할속주로부터 로마 시에서 필요로 하는 양의 곡물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로마인들에게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기원전 7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실재했던 로마 시의 곡물 부족 사태라는 재앙 때문이었다. 기원전 70년대는 특히 로마 정치를 뒤흔든 곡물 수급 관련 중요한 쟁점들이 잇달아 부각된 시기였다.

기원전 80년 전후 술라의 개혁 때 가이우스 그라쿠스 때부터 유지해 온 곡물 배급이 중단되었는데, 기원전 78년의 콘술 레피두스(Q. Aemilius Lepidus)는 로마 인민에게 밀을 배급하는 법안의 발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⁷⁷⁾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전 75년 경 로마 시에서는 그 파장이 베레스 재판까지 영향을 미친 심각한 곡물 부족 위기(caritas)가 발생했다. 바로 이 즈음에 키케로는 기원전 75년 시칠리아 총독 페두카이우스(Sex. Peducaeus, 기원전 77년의 프라이

76) 각주 30번.

77) Rickman, 앞의 책(1980), p.166.

토르)의 직속 콰이스토르들 중 한 사람으로서 서부 시칠리아에서 근무했는데, 키케로 자신 역시 시칠리아의 곡물을 많이 전달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행했다는 여러 증거들 중 하나로서 과시한 바 있었다.⁷⁸⁾ 같은 해에 베레스의 변호인 호르텐시우스(Q. Hortensius Hortalus, 기원전 69년의 콘술) 역시 아이딜리스로서 로마 시 곡물 배급을 위해 낮은 곡가를 책정한 바 있었다.⁷⁹⁾ 또한 로마에서는 곡물 위기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서 콘술들 옥타비우스와 코타, 그리고 프라이토르 출마자 메텔루스가 옥타비우스의 집으로 피난한 기록도 남아있다.⁸⁰⁾

한편 이듬해인 기원전 74년에 안토니우스(M. Antonius Creticus)에게는 시칠리아 해적 소탕을 위한 무제한적 임페리움(imperium infinitum)이 원로원으로부터 의결되었고 이 권한은 기원전 71년 임무를 완료하기까지 지속되었다.⁸¹⁾ 당시 곡물은 해상 운송만이 유효한 수단이었는데 해적의 창궐은 로마 시에서의 곡물 전달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해적의 창궐 및 해적 소탕을 위한 1인의 권한과 영향력 확대는 공화정 체제의 불균형과 불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기원전 74년에는 아이딜리스 세이우스(M. Seius)가 로마 시 곡물 배급의 가격을 대폭 낮추어 1 모디우스 당 1 아스에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실 역시 심각한 곡물 부족 위기를 입증한다.⁸²⁾

78) T. R. S. Broughton., *The Magistrates of the Roman Republic* (New York,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951), ii, p.98 ; Cicero, *Pro Plancio*, 64-65 ; *Epistulae Ad Brutum*, 318 ; *Epistulae Ad Familiares*, 13.38 ; Plutarchos, *Cicero*, 1.4, 6.1-4.

79) 1 모디우스 당 1.5 혹은 3.5 세스테르티우스였다(Cicero, *In Verrem*, 2.3.215).

80) Sallustius, *Historia*, 2.44-48.

81)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전 67년 폼페이우스에게 주어졌던 특별 권한의 선례가 되었다.

82) Cicero, *De Officiis*, 2.58 ; Plinius, *Naturalis Historia*, 18.16. 플리니우스(같은 책, 18.66)에 따르면 밀 1 모디우스는 20~26 리브라였다(1 libra = 12 oz.). 시칠리아의 밀의 무게가 1 모디우스 당 약 20.8 리브라이므로, 현대의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1 모디우스 당 7.1~7.2kg 가량으로 보인다. 또한 밀의 무게의 1/3을 초과하는 무게가 군 급양 빵의 무게이다(같은 책, 18.67). 따라서 시칠리아

베레스가 시칠리아에 부임했던 첫 해인 기원전 73년, 로마에서는 시칠리아 곡물의 강제 매입을 의무화하는 테렌티우스와 카시우스의 곡물법(lex Terentia-Cassia)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매달 1인당 5 모디우스의 밀을 저렴한 가격에 배급하는 것으로, 특히 시칠리아에서 매입된 곡물로 이를 충당하도록 규정했다.⁸³⁾ 시칠리아로부터 곡물을 유상 징발하여 그 곡물을 로마 인민에게 염가에 배급하는 방식은 위기 시에 자주 활용되던 임시 해결책이었다. 다만 술라 이후 중단되었던 정기 배급 제도가 8년 만에 부활한 사실과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속주로부터 곡물 매입을 의무화해야 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다.

반환법정은 총독의 속주 수탈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한편, 수탈행위에 대한 비공식적인 견제의 수단으로는 귀족 집단 내적인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었다. 베레스가 로마의 귀족 집단 내에서 지냈던 위치는 불법자금을 공유하여 부정행위에 가담할 계획을 가졌던 메텔루스 파벌과의 관계로부터 기인했다.⁸⁴⁾ 베레스의 피해자들 중 하나였던 스테니우스의 보호인(patronus) 폼페이우스는 자신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 속주민을 보호하고 원로원의 부패를 근절

밀 1 모디우스 당 최소 약 9.6kg 이상의 빵을 생산할 수 있다. P. Garnsey, *Famine and Food Supply in the Greco-Roman World* (Cambridge Univ., 1988), p.211, n.25: “1달에 밀 5 모디우스는 대략적인 수치로서 [=1년에 396kg] 400kg이었다.” 또한 같은 책, abbreviation: “1 Greek medimnos of wheat = 6 Roman modii = 51.7 liters = 40kg = 127,400 kcals.” R. Duncan-Jones, *The Economy of the Roman Empire: Quantitative Studies* (Cambridge Univ. Press, 1977), p.147: “영양학적 측면에서 1달에 5 모디우스의 배급량은 하루에 3,000~3,500 칼로리와 맞먹으며, 이는 현대의 성인 남성의 적정 하루 칼로리인 3,300 칼로리와 유사하다.”

83) Asconius, 8C ; Cicero, *Pro Sestio*, 55 ; *In Verrem*, 2.3.72, 2.3.163, 2.5.52. 이에 더해 곡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후 기원전 72년 콘술들은(L. 겔리우스 푸블리콜라, Cn. 코르넬리우스 렌툴루스 클로디아누스) 히스파니아 장군들에게 속주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할 권한을 주고, 술라 시대 법의 박탈자 재산 몰수품의 면제된 가격을 반납할 것을 명령했다.

84) Atkinson, 앞의 논문(2014), pp.96-97.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베레스 재판에 간섭했을 것이다. 폼페이우스와 대립하다가 결국 미트리다테스 전쟁의 군 지휘권을 빼앗긴 루쿨루스는 모계 쪽으로 메텔루스 집안에 속해 있었다. 베레스는 당시 유력한 지도자였던 폼페이우스에 대해 귀족 파벌 일원들이 지녔던 적대감을 활용했고 이를 통해 강력한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시칠리아 총독 베레스는 로마 귀족들의 간섭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채로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었다.

임기 중 사익을 추구하는 속주 총독에 대해 로마 귀족의 일원으로서 현지에서 직접 제약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직속 콰이스토르들과 레가투스들이었다. 먼저 콰이스토르들은 3년 임기 동안 원칙상 1년에 2인씩 총 6인이 있었어야 했으나 기원전 72년과 71년에 동일한 이들이 활용되었으므로 총 4인이었다. 베레스에게는 여러 레가투스들이 있었겠지만 키케로의 기록에는 2인이 등장한다. 이 둘은 베레스와의 관계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콰이스토르 1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모두 신인이었다. 베레스의 부임 첫 해에 레가투스였던 P. 케르비우스가 베레스에 의해 해적 선장에 대한 재판의 심리원단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과, 베레스가 자신의 반환법정 재판의 심판인으로 그를 기피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반목 관계를 입증한다.⁸⁵⁾ 콰이스토르들의 근무지는 로마에서 추첨에 의해 할당되었고 레가투스들도 원칙상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유사했다. 영향력 있는 가문의 젊은 원로원 의원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속주 총독의 수행원단의 일원으로서 해외 근무의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시칠리아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로마에 보고했다. 로마 귀족 집단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자연히 이들과 총독의 의견 충돌은 예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베레스의 임기에서 이들 대다수가 신인 출신이었다는 점은 전통적 원로원 귀족 집단과 개인 베레스의 관계에서 전자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리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⁸⁶⁾

85) Cicero, *In Verrem*, 2.5.114, 2.5.165.

86) E. S. Gruen, *The Last Generation of the Roman Republic* (Univ. of California Press, 1995), p.203. S. Pittia, "La cohorte du gouverneur

게다가 이 미약한 간섭마저, 베레스의 총독 임기가 연장되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그의 보좌 관원들이 교체되면서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속주 총독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1년이며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 해 연장되기도 한다. 베레스의 경우 기원전 73년에 1년 임기가 끝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이듬해 시칠리아 후임 총독으로 이전 해 프라이토르였던 Q. 아리우스가 내정되어 있기까지 했다.⁸⁷⁾ 하지만 아리우스가 기원전 72년 발발한 스파르타쿠스 반란의 진압에 투입되면서 베레스의 총독 임페리움이 연장되었다. 기원전 71년에는 세르토리우스 전쟁으로 인해 시칠리아 총독 임기가 다시금 연장되었다.

베레스가 임기 첫 해에 동행했던 콰이스토르들은 이듬해에 교체되었지만, 기원전 72년의 직속 콰이스토르들은 그 다음 해까지 임기가 연장되었다.⁸⁸⁾ 키케로에 따르면 기원전 72년에서 71년까지 시라쿠사이를 담당했던 콰이스토르 T. 베티우스는 도급업체의 마기스테르(magister)인 P. 베티우스의 형제이며, P. 베티우스는 베레스와 인척 관계에 있었다.⁸⁹⁾ 신인이었던 P. 타디우스는 기원전 73~71년 3년 내내 레가투스로 있었는데, 베레스가 킬리키아에서 돌라벨라의 레가투스였을 때 베레스의 돈을 받은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⁹⁰⁾ 타디우스가 “베레스와 아마

Verrès,” in *La Sicile de Cicéron, Lectures des Verrines* (2007), p.63: “수행원단의 이 취약성은, 부분적으로 추첨(sortitio)의 우연한 결과로서, 로마에서 지도자 계층이 그의 행동을 알지 못한 채 베레스가 그 위법행위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설명해준다. 영향력 있는 가문의 젊은 원로원 의원들은, 수행원단의 일원으로서, 속주에서의 경험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시칠리아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했을 것이다. 만약 수행원단이 총독을 지원하고 행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면, 그들은 마찬가지로 베레스의 권한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고 로마 원로원에게 정보를 전달했을 것이다. 세르빌리우스 반란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간의 고립을 악화시켰고 베레스의 횡령을 부추겼다.”

87) Cicero, *In Verrem*, 2.2.37, 2.4.42 ; Livius, *Periochae*, 96 ; Appianus, *Bellum Civile*, 1.117.

88) 콰이스토르, 레가투스를 포함한 베레스의 수행원단 목록은 [표 6]를 참고하십시오.

89) Cicero, *In Verrem*, 2.3.168. 마기스테르, 만캡스, 프로 마기스테르 등은 속주 도급업체 사원들의 호칭이다. 도급업체의 조직과 사원들의 기능 및 성격에 대해서는 김창성, 앞의 논문(2014a)을 참고하십시오.

90) Cicero, *In Verrem*, 2.1.100, 2.2.49, 2.5.63.

도 혈연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¹⁾는 피티아(S. Pittia)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기원전 71년 베레스는 다시 그의 레가투스를 바꿨지만 타디우스만은 그 임기를 갱신했기 때문이다. 또한 프라이펙투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볼카티우스(Volcatius)⁹²⁾는 베레스의 혈족이었고, 총독의 편파적인 사법적 결정에 따라 속주민들로부터 뇌물을 갈취하기 위한 중개인으로 활동했다.⁹³⁾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이듯이 임기가 연장되는 시점에 새로이 부임한 베레스의 보좌 관원들은 좀 더 베레스와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의 독직행위에 부역하는 성향의 인물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잦은 대내외 전쟁은 로마 시의 곡물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베레스의 총독 임기를 연장하게 만들었다. 또한 로마 시 곡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칠리아 총독의 곡물 매입이 의무화되면서 그의 속주 수탈의 기회가 계속 제공되었다. 더하여 베레스와 가까운 관계의 인물들이 그의 보좌 관원으로 부임한 점도 독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 이에 총독 임기 3년간 해가 지날수록 베레스의 곡물 수탈의 수법이 담대해져갔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 베레스의 곡물 과잉수취와 공금의 유용

속주 시칠리아의 곡물이 로마 시에 지녔던 중요성과 베레스의 총독 임기 내내 있었던 로마 시의 곡물 위기라는 맥락에서 키케로가 고발한 베레스의 시칠리아 곡물 수탈 혐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레스의 총독 임기 동안 곡물은 네 가지 다른 의미의 과세 및

91) Pittia, 앞의 논문(2012), p.62.

92) C. Nicolet, *L'ordre équestre à l'époque républicaine (312-43 av. J.-C.)*, II. Prosopographie des chevaliers romains (Paris, 1974), pp. 1080-1081. 그는 시칠리아 도급업체의 만캡스(manceps)로, 자유도시 할라이사의 매입 곡물에 대한 현금을 직접 지급받았다.

93) Cicero, *In Verrem*, 2.2.25-27.

매입 항목으로 징수되었다.⁹⁴⁾

[표 2] 속주 시칠리아 과세 및 매입 항목

항목 명칭	규정	대상 ⁹⁵⁾	매입 비율	총액
곡물 1/10세	히에론 법	동맹도시, 자유도시 이외의 국유지를 제외한 경작지	해당 없음	매해 달라짐.
매입 곡물 혹은 두 번째 1/10의 양	테렌티우스-카시 우스 법	시칠리아 전역의 모든 도시들	3HS/mod.	매해 달라짐. 최대 3백만mod. (국고에서 9백만HS 지급)
매입 곡물 혹은 명령된 곡물		3.5HS/mod.	매해 80만mod. (국고에서 280만HS 지급)	
창고 유지 곡물	로마의 모든 속주에 적용되는 일반법	?	총독이 책정할 권한이 있음.	?

시칠리아 총독의 곡물 관련 업무 가운데 첫 번째 사업은 곡물 1/10세(decuma), 즉 토지에서 생산한 곡물의 10%의 양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베레스는 특히 1/10세 징수자와 공모하여 총 생산량의 10%보다 많은 곡물을, 그리고 징세 작업에 대한 수수료(lucrum)⁹⁶⁾ 명목으로 많은 현금을 수취했다. 베레스의 총독 임기 3년간 수수료는 1/10세 징수권의 계약량에 대해 비율을 정하지 않은 채 거의 무제한적

94) 곡물 1/10세: Cicero, *In Verrem*, 2.2.3.12-163. 매입 곡물: 2.3.163-187. 창고 유지 곡물: 2.3.188-225. [표 2]를 참고하십시오.

95) 속주 시칠리아의 영토는 소수의 국유지를 제외하고는 (1) 동맹도시(foederatae civitates), (2) 자유도시(sine foederae immunes civitates ac liberae), 나머지 (3) 1/10세 과세대상(decumanus)으로 구분된다. 즉 (1)과 (2)의 도시들은 곡물 1/10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키케로는 *In Verrem*, 2.3.13에서 (1) 동맹도시로 2개의 도시 마메르티네스와 타우로메니움을 제시하지만, 논고문의 다른 부분에서 도시 네툼이 동맹도시에 속함을 알 수 있다(2.5.56, 2.5.133). (2) 자유도시에는 5개 도시가 있다. (1), (2)의 도시들에도 다른 특정한 과세 부담이 있었을 수 있다.

96) 제3권에서는 1/10세 징수에 대한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수수료(lucrum)라 칭한다. 1/10세 징수에는 이외에도 추가 수수료(accessio)(Cicero, *In Verrem*, 2.3.76, 2.3.83), 1% 혹은 6%의 수수료(2.3.116, 2.3.118) 등이 붙기도 했다.

으로 책정되었다. 수수료의 징수는 1/10세 자체와 함께 의무적인 제도가 되었다. 베레스 2차 논고문의 제3권에 등장하는 곡물 1/10세 징수 사업에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수수료 명목으로 총독 베레스는 곡물을 가졌고 1/10세 징수자들에게 현금을 챙기게 해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⁹⁷⁾

두 번째는 곡물 매입 사업으로, ‘두 번째 1/10의 양’⁹⁸⁾을 강제 매입하는 항목이다. 이는 히에론 법과 무관하며 로마에서 기원전 73년 테렌티우스-카시우스 법으로 제도화되었다. 정기 매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부터 국가 위기 때마다 행해지던 관행이었기에,⁹⁹⁾ 곡물 위기가 발생하면 거의 매해 강제적인 매입이 일상화되었다. 세 번째 역시 곡물 매입 사업이지만 키케로가 ‘명령된 곡물(frumentum imperatum)’이라 분류한 항목이다. 다만 키케로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곡물 매입 사업의 항목들을 분리하여 소개했음에도 실제 서술에서는 둘의 경계가 모호하게 표현되기도 한다.¹⁰⁰⁾ 두 가지 곡물 매입 사업들

97) Cicero, *In Verrem*, 2.3.99: “ex quo facile apparet quae merces decumani, quae praetoris praeda esse videatur.” (=이로부터, 1/10세 징수자의 품삯이 어떤 것으로 보이는지, 총독의 강탈물이 어떤 것으로 보이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칠리아 모든 도시들에 대한 베레스의 곡물 관련 수탈행위의 내용과 출전은 [표 6]을 참고하십시오.

98) altera decuma를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또 다른 1/10세’ 정도가 될 수 있지만, 이 항목은 과세가 아니라 1/10세로 징수했던 양과 동일한 양의 곡물을 매입하는 항목이므로 1/10세라 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타 해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seconde dîme’(Carcopino, 앞의 책(1914), p.273 ; J. Andreau, “Le prix de blé en Sicile,” in *La Sicile de Cicéron, Lectures des Verrines* (2007), p.124, n.55), ‘second tenth’(Scramuzza, 앞의 글(1959), p.240) 혹은 ‘second tithe’(Frazel, 앞의 책(2009), p.208)라 칭한다. 엄밀한 의미의 과세 항목은 첫 번째인 1/10세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조세 수취 관행과 특히 베레스의 특수한 행정 행위를 고려할 때 나머지 세 가지의 매입 사업들 역시 첫 번째와 무관하지 않았으므로 함께 서술될 수 있다.

99) Livius, 36.2.12(기원전 191년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에서 로마 시와 그리스에 보냄) ; 37.2.12(기원전 190년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에서 로마 시와 아이톨리아에 보냄) ; 37.50.9-10(기원전 189년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에서 아시아와 아이톨리아에 보냄) ; 42.31.8(기원전 173년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에서 마케도니아의 군대에 보냄).

을 위해 로마 원로원에서는 시칠리아 총독에게 미리 정해진 매입 자금을 국고에서 지급했고 속주민에게 부담이 적도록 매입의 비율을 결정해 줬다. 그러나 키케로에 의하면 베레스는 자의적으로 그 비율을 책정했고 매입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함으로써 속주민의 곡물과 현금을 과잉 압취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업은 총독의 창고 유지 비용을 위해 곡물을 유상 징발하는 항목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수탈 방식과의 연장선상에서 베레스는 대체 지불 비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곡물과 현금을 착복했다. 키케로에 따르면 베레스는 이러한 네 가지 사업들을 통한 곡물 수취 과정에서 특수한 방식으로 수탈을 행했다.

① 곡물 1/10세 징수 과정에서의 과잉수취

앞서 살펴봤듯이 로마인들은 시칠리아 섬 전체를 속주화하면서 옛 시라쿠사이 왕국의 히에론 법에서 정한 곡물 과세 체계를 그대로 섬 전체에 적용했다.¹⁰¹⁾ 이는 시칠리아 밀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그 경작자들을 보호하여 생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히에론 법의 전문은 남아있지 않으나 베레스 2차 논고문 제3권과 그밖에

100) 예컨대 Cicero, *In Verrem*, 2.3.170–171. 이 부분을 ‘두 번째 1/10의 양’이나 ‘명령된 밀’ 중 하나로만 보기에선 문제가 있다. 먼저 2.3.170에 있는 *imperavisset*과, 2.3.171의 *imperata erant*, 그리고 *distribuere* 등을 보면 ‘명령된 밀’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2.3.171에 있는 *decumarum*을 고려한다면 ‘두 번째 1/10의 양’에 해당하여 혼선이 발생한다. 게다가 베레스가 매해 고정된 양인 밀 6만 모디우스의 납부를 명령했다고 했으므로 매해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10%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확실히 ‘명령된 밀’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듯 도시 할라이사가 대상이 되는 동일한 주제의 부분에서 두 가지 의무 사항들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서 곡물 매입이란 두 가지 의무 사항들 모두가 포괄되는 것이다. 즉 2.3.171의 *decumarum*이 있는 문장의 접속절 동사인 *esset redacta*는 두 가지 의무 사항들을 포괄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키케로가 *decumarum*을 잘못 포함시킨 것일 가능성도 있다.

101) 물론 시칠리아 섬의 모든 영역이 동일한 과세 대상으로 편제되지는 않았다. 각 도시들의 지위에 따른 곡물 과세의 구분은 [표 6], 위 각주와 Cicero, *In Verrem*, 2.3.13을 보시오.

속주 시칠리아 통치를 기록한 자료들을 통해 대략적인 조항을 파악할 수 있다.¹⁰²⁾

2차 논고문 제3권의 1/10세와 관련한 부분을 통해 추론해보자면, 로마의 통치 하에 적용된 히에론 법의 조항들에 따라 베레스 총독 임기 동안 속주 시칠리아에서 곡물 1/10세의 징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매해 각 도시에서는 경작자들의 토지재산 신고(*professio iugerum*) 기록을 보관했다.¹⁰³⁾ 여기에는 파종된 경작지 면적, 경작지의 토지 소유주 이름, 파종된 종자의 작물, 파종된 종자의 양 등이 포함된다. 이 신고 대장은 모두에게 공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1/10세 징수권의 입찰 및 계약 자격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었고 입찰자는 신고 대장을 근거로 입찰량을 제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후 매해 추수 전 각 도시 별, 작물 별로 속주 총독의 주재 하에 시라쿠사이에서 1/10세 징수 작업의 도급을 맡길 계약자들을 경매를 통해 선발했다.¹⁰⁴⁾ 가장 많은 입찰량을 제시하는 자가 징수권 계약을 낙찰 받았다. 징수권 매각을 비롯한 조세 수취 과정 전체에서 1/10세 징수자와 총독이 사적 이윤 획득을 위해 결탁하는 것이 금지되었다.¹⁰⁵⁾

경매 종료 후 1/10세 징수자는 담당 도시를 직접 순회하면서 과세 대상 경작자들과 1/10세 양에 대한 협약(*pactio*)을 체결했다. 이때 각 도시 관리들이 제공하는 토지재산 신고 대장은 협약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협약 체결의 시점은 일반적으로 추수 전이었으나, 늦어도 추수 후 탈곡장(*area*)에서 체결을 완료함과 동시에 협약을 이행해야 했다.¹⁰⁶⁾ 1/10세의 징수 및 납부는 협약을 기반으로 행해져야 하기에 1/10세 징수자는 경작자들로부터 실제 곡물 소출의 10% 이상을 징수

102) Carcopino, 앞의 책(1914) ; Rickman, 앞의 책(1980), pp.37-42 ; Scramuzza, 앞의 글(1959), pp.238-240 ; Pritchard, 앞의 논문(1970), p.354.

103) Cicero, *In Verrem*, 2.3.38, 2.3.112.

104) Cicero, *In Verrem*, 2.3.18.

105) Cicero, *In Verrem*, 2.3.50, 2.3.130, 2.3.135-141.

106) Cicero, *In Verrem*, 2.3.37-38, 2.3.102, 2.3.112.

할 수 없다.¹⁰⁷⁾ 이후 1/10세 징수자는 전달 받은 곡물을 해안으로 운반했다(ad aquam deportatio).¹⁰⁸⁾

총독이 히에론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칠리아 곡물 과세 과정에서 경작자의 재산을 수탈했다면 이는 곧 시칠리아 속주민의 재산을 수탈한 것이 되며 동일하게 반환 재판에서 유죄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을 키케로 역시 적용하여 이에 따라 그는 히에론 법의 뛰어난 점을 강조하고 베레스가 히에론 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상세하게 진술했다.¹⁰⁹⁾ 또한 앞서 봤듯이 키케로는 시칠리아의 경작지들이 유기되었음을 수사학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베레스의 수탈행위의 결과 시칠리아의 농업 기반 자체가 파괴되었음을 강력히 암시했다.¹¹⁰⁾

한편 베레스는 총독으로서 자신의 수행원단(cohors; comites)을 가지고 있었다.¹¹¹⁾ 이 수행원단에는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할당된 콰이스토

107) Cicero, *In Verrem*, 2.3.20, 2.3.36, 2.3.147.

108) 시칠리아의 항구를 통해 곡물을 로마 시까지 운송하는 것은 1/10세 징수자의 역할이 아니었다. 아마도 로마인 징세도급 사업체가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109) 시칠리아 개인 경작자에 대한 수탈 사례들 5건(Cicero, *In Verrem*, 2.3.53–57), 로마 기사신분 개인 경작자에 대한 수탈 사례들 2건(2.3.60–63), 도시에 대한 수탈 사례들 18건(아기리움: 2.3.67–74, 헤르비타: 2.3.75–80, 아케스타: 2.3.83, 리파라: 2.3.84–85, 티사: 2.3.86–87, 아메스트라투스: 2.3.88–89, 페트라: 2.3.90, 자유도시 할리키아이: 2.3.91, 자유도시 세계스타: 2.3.92–93, 테르마이: 2.3.99, 이마카라와 헨나: 2.3.100, 칼락테와 무티카: 2.3.101, 히블라와 메나이: 2.3.102, 아이트나: 2.3.103–105, 레온티니: 2.3.109–119).

110) Cicero, *In Verrem*, 2.3.120.

111) Cicero, *In Verrem*, 2.2.27: “Comites illi tui delecti manus erant tuae ; praefecti, scribae, accensi, medici, haruspices, praecones manus erant tuae ; ut quisque te maxime cognatione adfinitate necessitudine aliqua attingebat, ita maxime manus tua putabatur ; cohors tota illa, quae plus mali Siciliae dedit quam si centum cohortes fugitivorum fuissent, tua manus sine controversia fuit.”(=당신이 선택한 수행원들은 당신의 수족이었습니다. 프라이펙투스들, 서기관들, 정리들, 의사들, 점쟁이들, 전령관들이 당신의 수족이었습니다. 각 개인들이 당신과 혈족관계, 인척관계, 친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든 더욱 연결될수록, 그들은 더욱 당신의 손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수행원 부대 전체는, 즉 도망 노예 수백 개의 부대가 그랬을 법한 것보다 더 큰 손상을 시칠리아에 가져온 그들은, 논쟁의 여지없이 바로 당신의 수족이었습니다.)

르들과 레가투스들부터 총독의 개인 의사(medicus), 점쟁이(haruspicius), 그리고 경호부대(apparitores; stipatores)까지 총독의 속주 통치에 필요한 다양한 일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베레스는 1/10세 징수자들과 도급업체 직원들과 같은 사업 관계자들 중 일부를 수행원단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¹¹²⁾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1/10세 징수자들 중의 우두머리(princeps)라 불렸던 아프로니우스(Q. Apronius)였다. 키케로에 따르면 베레스는 어떤 연고도 없던 아프로니우스와 가까운 친구가 되었는데, 이는 속주 시칠리아 전체를 통틀어 베레스가 그를 부도덕함(turpitudine)에 있어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¹¹³⁾ 경작자에 대한 수탈에서 베레스가 하수인¹¹⁴⁾으로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프로니우스 같은 사람이었다. 1/10세 징수자와 총독 간 동업관계의 형성은 히에론 법에서 금지했던 것으로 키케로는 베레스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여 고발했다.

베레스는 필요한 경우 가장 많은 입찰량을 제시한 자에게 계약을 낙찰해야 한다는 경매의 기본적 원칙조차 무시했다고 키케로는 전한다. 베레스가 제3자의 입찰량보다 더 적은 입찰량을 제시한 자신의 하수인들 중 한 명에게 1/10세 징수권을 수여했던 사건이 있었다.¹¹⁵⁾ 아프로니우스는 도시 레온티니의 1/10세 징수권을 두고 로마 기사신분 Q. 미누키우스와 경쟁했던 사건이었다. 이때 아프로니우스는 3만 메딤노스를 제시했고 미누키우스는 그에 5천 메딤노스를 더하여 제시했다. 그럼에도 베레스는 그 계약이 아프로니우스에게 낙찰되었다고 선언했다. 따라

112) 로마에서 임명된 보좌 관원들과 속주의 보조원들, 그리고 사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베레스의 수행원단 목록은 [표 5]를 보시오.

113) Cicero, *In Verrem*, 2.3.22–24.

114) 베레스의 임기 동안 시칠리아 1/10세 징수자들은 그의 동업자(socius)였다. 하지만 이들은 베레스와의 이익 공유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의 동업자가 아니라 그의 이윤 획득과 강탈을 위해 동원된 보조원일 뿐이었으므로 Cicero, *In Verrem*, 2.2.27(각주 111번)의 표현(‘수족’, manus)을 참고하여 하수인이라 표현할 수 있다.

115) Cicero, *In Verrem*, 2.3.148.

서 아프로니우스는 더 많은 입찰량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징수권은 그에게 낙찰되었으므로 베레스가 로마 평민층의 이익을 보살폈다거나 곡물소출을 고려했다는 변론은 기만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베레스가 선택한 자만이 1/10세 징수권의 계약자가 될 수 있었으므로, 당시 시칠리아에서는 총독 스스로가 1/10세 징수권을 맡았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¹¹⁶⁾

아프로니우스 등 베레스의 하수인인 1/10세 징수자들은 많은 계약량에 따른 사업 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해당 도시의 경작자들과 억압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역시 총독 베레스는 1/10세 징수자와 경작자의 협약에도 개입하여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총독의 1/10세 징수자들은 해당 도시에 총독의 경호부대를 대동하여 폭력을 통해 의지를 관철시켰다.¹¹⁷⁾ 아프로니우스는 총독의 경호부대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경작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시칠리아 도시들의 공금으로 연회를 즐겼다. 이 경호부대원들은 주로 베누스 신전 노예들(Venerios)이었는데, 베레스는 이 신전 노예들 자체를 1/10세 징수자로 선택하기도 했다.¹¹⁸⁾

한 도시의 1/10세 징수권이 많은 양으로 낙찰되었을수록 1/10세 징수자는 경매에서의 입찰량 대비 이윤을 내기 위해 경작자로부터 더 많

116) Cicero, *In Verrem*, 2.3.71: “... dissimulate, si potestis, vos intellegere ipsum praetorem, id quod tota Sicilia perspexit, redemptorem decumarum atque adeo aratorum dominum ac regem fuisse.” (=시칠리아 전역이 똑똑히 목격한, 그 1/10세 징수권들의 계약자가 바로 총독 그 자신이었으며, 경작자들의 주인이자 왕이었던 자가 바로 그 총독이었음을 여러분께서 알고 있다는 점을, 만약 숨길 수 있다면 숨겨 보십시오.)

117) Cicero, *In Verrem*, 2.3.61–63, 2.3.65.

118) 도시 아메스트라투스의 1/10세 징수자 바리오발리스(Cicero, *In Verrem*, 2.3.89), 도시 티사의 디오그네투스(2.3.86), 도시 세계스타의 심마쿠스(2.3.92–93) 등은 모두 분명히 베누스 에리키나의 신전 노예였다. 심마쿠스는 원로원 의원의 소유 토지에 대해 1/10세 명목으로 수탈했다. 이밖에도 신분이 명시되지 않았던 베레스의 1/10세 징수자들도 신전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다. 키케로는 아프로니우스와 투르피오(P. Naevius Turpio)에 대해서도 노예(servos)라 칭한 바 있지만(2.3.91) 이는 수사학적 비유로 보인다. [표 5]를 참고하십시오. 1/10세 징수 이외에 베레스의 신전 노예의 활용은 Cicero, *In Verrem*, 2.1.27–28, 2.2.19–27, 2.2.90–118 ; *Divinatio in Caeciliam*, 55–57.

이 징수하고자 할 것이었다. 이에 히에론 법에서는 계약량과 상관없이 1/10세 징수자는 경작자로부터 총 생산량의 10% 이상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1/10세 과세 대상 도시 자체가 징수권 경매에 입찰하는 경우도 많았다. 키케로의 논고문에 따르면 베레스의 임기 동안 도시 헤르비타와 도시 테르마이의 경우가 이를 시도했던 사례들이었다.¹¹⁹⁾ 하지만 도시 대표들은 많은 양을 입찰할 수 없었던 반면 베레스의 하수인들은 그 총독과의 결탁 덕분에 상한선이 없었으므로 징수권의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베레스가 1/10세 징수자들과 결탁하여 자행했던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1/10세 징수권의 경매에서 자신의 하수인들로 하여금 징수권을 낙찰 받도록 했던 것에 더해서, 새로운 규칙과 고시들(edicta)을 제정하여 1/10세 징수자에게 협약을 강제할 권리를 부여했던 것이다. 또한 1/10세에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첨가했고, 1/10세 징수자가 총독의 경호부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해당된다. 이로써 1/10세 정량을 초과하는 곡물 과잉수취분이 1/10세 징수자를 통해 총독 베레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은 동업관계에 대해 키케로는 “저 총독의 집권 시기에 새로운 유형의 징세도급업자들이 있었다”¹²⁰⁾고 비판했다.

베레스가 히에론 법을 대체했던 새로운 고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다. 첫 번째로 키케로가 고발한 것은 1/10세 징수 양에 관한 고시 혹은 토지재산 신고에 관한 고시로, 그 내용 중에서도 가장 먼저 “1/10세 징수자가 선포하는 양만큼 경작자가 지불해야만 한다”¹²¹⁾는

119) Cicero, *In Verrem*, 2.3.77(도시 헤르비타), 2.3.99(도시 테르마이).

120) Cicero, *In Verrem*, 2.3.50: “... quod isto praetore fuit novum genus publicanorum, ceterosque decumanos procuratores istius quaestus et administros rapinarum fuisse dico.”

121) Cicero, *In Verrem*, 2.3.25. 베레스 논고문에서 키케로가 제시하는 고시들의 순서는 실제 고시가 제정, 적용되었던 시간적 순서를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In Verrem*, 2.3.25-35). 뒤블로즈는 ‘이 고시가 토지재산 신고에 관한 고시(edictum de professione)라는 베레스의 고시의 요약문’이라고 했다(J. Dubouloz, “Autorite Romain, Fermiers de l’impôt et Contribuables en

원칙을 적용한 규정의 내용을 제시했다. 키케로에 따르면 경작자는 아프로니우스가 원하는 만큼의 1/10세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고시를 위반하게 된다. 이로써 베레스의 고시들이 1/10세 징수자들로 하여금 생산량의 10%보다 더 많이 징수하도록 하는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했다고 키케로는 지적했다.¹²²⁾

그 근거로서 키케로는 도시 레온티니의 1/10세 양을 아프로니우스가 자의적으로 결정했던 사건을 제시했다. 그 도시의 토지면적은 3만 유게룸(iugerum) 이하였고 항상 밭 1 메딤노스/유게룸의 비율로 3만 메딤노스를 파종하여 가장 운이 좋을 시에만 10배를 생산한다.¹²³⁾ 이에 10배를 생산할 경우에만 1/10세의 양은 파종 양과 동일하다.¹²⁴⁾ 따라서 대풍작이라 하더라도 1/10세의 총량은 최대 3만 메딤노스(=18만 모디우스)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레온티니의 경작자 중 하나가 아프로니우스에게 3 메딤노스/유게룸 이하로 지불하게 해달라고 청원했고 그는 이를 ‘가장 우호적으로’(in summo beneficio) 허락했다.¹²⁵⁾ 키케로에 따르면 도시 레온티니는 기소인 키케로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당시 10%의 3배만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시칠리아 전역에서 가장 큰 특혜였을 정도로 수탈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1/10세 징수자가 가져가는 밭의 양은 키케로에 의하면 어림잡아 36만 모디우

Sicles dans les Années 70 av. J.-C.,” in *La Sicile de Cicéron, Lectures des Verrines* (2007), p.153, n.21). 제노비제 역시 Cicero, *In Verrem*, 2.3.25-35의 전체 구절이 베레스의 고시에서 매우 비슷한 여러 부분들에 대한 해설이라고 했다(M. Genovese, “Condizioni delle civitates della Sicilia ed assetti amministrativo-contributivi delle altre province nella prospettazione ciceroniana delle Verrine,” *IVRA*, 44(1993), pp. 119-124, 144-145, 159-170).

122) Cicero, *In Verrem*, 2.3.150: “At Apronio semper plus etiam multo abs te permissum est quam quod edixeras.” (=그런데 아프로니우스에게 당신은 고시했던 것보다 항상 훨씬 더 많이 허락했습니다.)

123) 이 시기 종자 수익율에 대해서는 P. Erdkamp, *The Grain Market in the Roman Empire* (Cambridge Univ., 2005), p.35를 참고하십시오.

124) Cicero, *In Verrem*, 2.3.112.

125) Cicero, *In Verrem*, 2.3.114-115.

스가 된다.¹²⁶⁾ 이에 더해 도시 레온티니 경작자들 중 3 메딤노스/유게를 1/10세로 지불한 이들에 대한 수수료의 총액은 40만 세스테르티우스였고, 1/10세 총량에 대해 추가 수수료의 가장 낮은 비율은 1 세스테르티우스/메딤노스로, 이렇게 계산할 시 총 9만 세스테르티우스일 것이다. 이에 키케로는 베레스가 “같은 토지에서 로마 인민에게 보낸 양(=18만 모디우스)보다 2배 많이(=36만 모디우스) 수탈했다면, 1/10세 징수권을 많은 양에 팔았다고 감히 말할 것이냐”¹²⁷⁾고 반박했다. 아프로니우스는 이런 식으로 ‘3년간 [매해] 50만 세스테르티우스 가량을 수탈했다.’¹²⁸⁾

여기서 총독 베레스의 위법행위는 무엇보다도 총독이 1/10세 징수자에게 경작자로 하여금 수확량의 10% 이상을 지불하도록 하는 강압의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키케로의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10세 징수자와 경작자가 1/10세의 양에 대해 합의하여 체결하는 협약과 그 협약의 참고자료가 되는 현지 관리가 담당했던 토지재산 신고 대장이 무시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키케로는 다음과 같이 그 고시를 해석했다.¹²⁹⁾

Cicero, *In Verrem*, 2.3.25: ‘1/10세 징수자가 경작자로 하여금 곡물의 1/10세로 자신(sc. 1/10세 징수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선포한 양만큼,

126) Cicero, *In Verrem*, 2.3.116.

127) Cicero, *In Verrem*, 2.3.117: “Hic mihi etiam dicere audebit magno se decumas vendidisse, cum ex eodem agro dimidio ipse plus abstulerit quam populo Romano miserit?”

128) Cicero, *In Verrem*, 2.3.118: “... fiunt per triennium HS D milia fortasse.”

129) Cicero, *In Verrem*, 2.3.25에서 고시의 원칙을 나타내는 문장은 2.3.34에서 그 의미를 더 명확히 하면서 반복된다(2.3.25: “Quantum decumanus edidisset aratorem sibi decumae dare oportere, ut tantum arator decumano dare cogereetur.” ; 2.3.34: “Edixit ut, quod decumanus edidisset sibi dari oportere, id ab aratore magistratus Siculus exigeret. ... Si iudicio vis a me exigere, remove Siculum magistratum ; si hanc vim adhibes, quid opus est iudicio?”). 두 번째 문장에서는 시칠리아 현지 관리가 경작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체로 등장했다. 이에 대한 제노비제의 해석은 각주 39번을 참고하시오.

경작자는 1/10세 징수자에게 그 양만큼 지불하도록 강제된다.’

Ibid., 2.3.34: 그의 고시는 1/10세 징수자가 자신(sc. 1/10세 징수자)에게 지불하라고 선포한 양을, 시칠리아 현지 관리가 경작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 만약 당신이 재판을 통해 나에게서 [수확물을] 징수하고자 한다면, 시칠리아 관리는 제외시키십시오. 당신이 그런 물리력을 동원한다면(sc. 현지 관리를 통한 강제 징수), 재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처럼 키케로는 독자로 하여금 총독과 시칠리아 현지 관리들 간의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추론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에 따르면 1/10세 징수자와 경작자 간에 체결되는 협약에 총독이 고시으로써 개입하여 그 협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총독과 1/10세 징수자의 공모를 금지한 히에론 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베레스가 시칠리아 현지 관리마저 1/10세 징수 작업에서 경작자를 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끌어들이었다.

베레스는 토지재산 신고에 대한 이 고시의 원칙에 따라 두 가지의 재판을 규정했다. 1/10세 징수자가 정량보다 더 징수할 시 경작자가 고발하여 승소하면 1/10세 징수자에게 8배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과, 경작자들이 1/10세의 정량을 납부하지 않을 시 1/10세 징수자가 고발하여 승소하면 경작자에게 4배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다.¹³⁰⁾ 특히 8배 벌금 재판의 내용은 경작자들에게 배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일견 그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베레스 측에서 자신의 공정함을 주장하기 위한 변론의 근거로 쓰일 수 있었다. 그래서 키케로는 그것의 내용이 아니라 다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가)~(배)) 시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¹³¹⁾

130) 8배 벌금 재판: Cicero, *In Verrem*, 2.3.26–33. 키케로가 8배 벌금 재판 방식의 위법성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은 2.3.27–28(아래 각주 참고). 4배 벌금 재판: 2.3.34.

131) (가) “Cum omnibus in aliis vectigalibus, … cum in his, inquam, rebus omnibus publicanus petitor ac pignerator, non ereptor neque possessor solet esse, …” (나) “Utrum est aequius, decumanum petere an aratorem

[표 3] 베레스의 고시의 위법성

고시의 명칭	고시의 내용	위법행위의 내용
토지재산 신고에 관한 고시	(1) 1/10세 징수자가 선포하는 양만큼 경작자가 지불해야만 한다.	협약에 총독이 고시로써 개입하여 1/10세 징수자와 공모했고, 협약을 위한 토지재산 신고 자료를 제공하는 현지 관리와 공모했다.
	(2) 1/10세 징수자가 적정량보다 더 징수할 시 경작자가 고발하여 승소하면 1/10세 징수자에게 8배 벌금을 물린다.	(가) 소송의 주체 (나) 곡물 소유 우선권의 주체 (다) 재판 청구의 시점
	(3) 경작자들이 1/10세를 지불하지 않고 보류할 시, 1/10세 징수자가 고발하여 승소하면 경작자에게 4배 벌금을 물린다.	(라) 재판의 장소 (매) 총독과 피고의 공모 (바) 재판 회복심판원단 구성
	(4) 경작자와 1/10세 징수자 간의 분쟁에 대해 양측 중 하나라도 원할 시 총독이 심리원단을 임명한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 심리원단 구성에 대한 루필리우스 법을 위반했다.
	(5) 경작자들은 시칠리아 어느 곳에서건 1/10세 징수자가 원하는 곳으로 법정소환될 수 있다.	경작자들이 먼 곳까지 여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1/10세 징수자는 가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했다.
협약 이행에 관한 비상 고시	(1) 경작자가 협약 이행 전에 탈곡장에서 자신의 몫의 곡물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했다.	경작자는 생계의 추구가 방지되었고 협약의 이행이 강제되었다.
	(2) 1/10세 징수자가 1/10세의 곡물을 물가에 운반하는 기한을 8월 1일까지로 고정했다.	1/10세 징수자로 하여금 탈곡장의 곡물을 물가로 운반하는 날짜를 고정해놓음으로써 결국 협약이 이행될 수밖에 없도록 한 강제적 장치가 되었다.

repetere?” (다) “iudicium integra re an perdita fieri? eum qui manu quaesierit, an eum qui digito sit licitus possidere ?” (라) “quid facient, cum dederint Apronio quod poposcerit? reliquent arationes, relinquent Larem familiarem suum? venient Syracusas, …” (마) “ut te praetore videlicet aequo iure Apronium, delicias ac vitam tuam, iudicio recuperatorio persequantur?” (바) ““Quas decurias?” “De cohorte mea reicies,” inquit. “Quid? ista cohors quorum hominum est?” “Volusii haruspis et Cornelii medici et horum canum quos tribunal meum vides lambere.” nam de conventu nullum umquam iudicem nec recuperatorem dedit ; iniquos decumanis esse aiebat omnes qui ullam agri glebam possiderent.”

(가) 소송의 주체

Cicero, *In Verrem*, 2.3.27: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다른 곳들 ... 에서는, 이런 일들(sc. 과세 관련 소송)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징세도급업자가 일반적으로 소송 원고이자 보증금 압류인(pignerator)이 되며, [피고의 재산의] 탈취자나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나) 곡물 소유 우선권의 보유 주체

Ibid.: 1/10세 징수자가 [소송을] 청구하는 것, 또는 경작자가 [수탈된 재산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청구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공정합니까?

(다) 재판 청구의 시점

Ibid.: 경작자가 곡물을 아직 소유하고 있을 때, 혹은 손실한 이후, 둘 중 언제 재판을 해야 공정합니까? 근면한 노동으로 재산을 획득한 자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 혹은 경매에서 입찰하여 그 재산을 획득하는 것, 둘 중 무엇이 공정합니까?

(라) 재판의 장소

Ibid.: 이러한 자들은 아프로니우스가 요구한 모든 것들을 떠안았을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농지와 집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들이 시라쿠사이로 가서 ...

(마) 총독과 피고의 공모

Ibid.: ... 당신의 경배가 만연해 있는 그 의심할 여지없이 불공정한 법정 앞에 당신의 기쁨이자 즐거움인 아프로니우스에 대해 자신의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바) 재판 회복심판원단의 구성

Ibid., 2.3.28: “어떤 집단입니까?” “나의 수행원 가운데서 선출할 것이오.” 그는 말합니다. “그 수행원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의 점쟁이 볼루시우스와 나의 의사 코르넬리우스, 그리고 자네가 보고 있는, 나의 재판석의 계단을 밟는 개들 말이오.” 실제로 베레스는

로마인 정착민 집단 가운데서 재판의 회복심판원단을 임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땅을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1/10세 징수자들에게 대해 편견을 가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키케로에 의하면 다른 속주들의 과세 관련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징세도급업자가 소송 원고가 되듯이, 오히려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양을 징수하기 어려운 것이 상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협약 체결 시 합의한 양에 비해 이행 시 1/10세 징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곤 한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속주들에서는 징세도급업자가 적정량을 징수하기 위해 총독의 법정에 소송을 청구한다. 하지만 베레스는 오히려, 징수 후에 경작자 측에서 8배 벌금의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1/10세 징수자들에게 경작자들보다 우월한 권리를 부여했다. 이것은 일면 경작자에게 우호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협약을 무시하고 징수자에게 강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1/10세의 징수의 결과인 곡물의 양에 대해, 일반적으로 징수자가 불리했던 징세 작업을 경작자가 불리한 것으로 만들었다. 경작자가 자신의 곡물이 수탈당한 것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보다 1/10세 징수자들이 적정량을 징수하지 못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공정하다. 그리고 곡물은 그 곡물에 대한 징수권을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이 소유하는 것보다 그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경작자가 소유하는 것이 공정하며, 1/10세의 정량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려면 경작자가 이미 1/10세를 지불한 후에 하는 것보다 아직 그것을 지불하기 전에 재판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 이 모든 공정함을 어기고 베레스는 아프로니우스에게 시칠리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작자들의 곡물을 수탈할 수 있도록 고시를 발표했고, 8배 벌금의 재판 조항은 기만적이다. 경작자는 재판을 위해 시라쿠사까지 멀어서 가기 어렵고, 총독과 아프로니우스의 공모를 알고 있으므로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위 (배)의 인용문에서 키케로가 제시하는 가상의 재판과 같이, 만약 한 용기 있는 경작자가 부당하게 1/10세를 수탈한 1/10세 징수자에게 대해 8배 벌금 재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총독 베레스는 자의

적으로 자신의 수행원단 가운데 재판의 심판원단을 구성하려 했을 것이다. 즉 이 가상의 재판 구성에서 베레스는 두 가지 독직행위를 행한 셈이다. 그것은 시칠리아 인들 혹은 시칠리아에 거주하는 로마인들 (conventus)로부터 심판원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 원고가 심판원을 기피할 권리도 박탈하는 것이다. 베레스는 경작자와 1/10세 징수자 간의 분쟁에 대해 양측 중 하나라도 원할 시 총독이 임명한 회복심판원단 (recuperatores, 이하 심판원단)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여 재판 심판원단 구성에 대한 단서를 달았다.¹³²⁾ 이것이 사실이라면 베레스의 이 고시는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제도화했던 루필리우스 법(leges Rupiliae)을 위반하고 전임 총독들의 모든 전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였다.¹³³⁾ 이 법에 따르면 시칠리아 내 소송에서 심판원단은 시칠리아 거주자로 구성해야 하며 원고에게는 그 심판원을 기피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베레스는 언제나 자신의 수행원단으로 구성된 3명의 심판원단으로 재판을 구성했으며 그러므로 원고에게 기피의 권리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¹³⁴⁾ 히에론 법이 1/10세 징수 과정에서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곡물 과세 소송의 심판원단 자격을 주지 않았던 것은 비합리적이다. 경작자들은 이 고시가 자신들에게 불리함을 잘 알고 있어서 이 고시에 따른 8배 벌금 재판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¹³⁵⁾ 이는 마치 경작

132) Cicero, *In Verrem*, 2.3.35.

133) Cicero, *In Verrem*, 2.3.28: “nam de conventu nullum umquam iudicem nec recuperatorem dedit ; iniquos decumanis esse aiebat omnes qui ullam agri glebam possiderent.” (=실제로 베레스는 속주법정(conventus)과 관련해 [로마인 정착민 집단 가운데서] 심판인이나 회복심판원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땅을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1/10세 징수자들에 대해 공평무사하지 않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소송의 심판원단 선발과 기피 원칙을 규정한 루필리우스 법에 대해서는 2.2.32-34.

134) Cicero, *In Verrem*, 2.3.54, 2.3.66, 2.3.137. 주로 베레스의 의사 아르테미도루스, 점쟁이 볼루시우스, 전령관 발레리우스가 활용되었고, 화가 틀레폴레무스가 활용되기도 했다. 아프로니우스, 티마르키데스 등 가까운 하수인들도 총독의 법정 에 참석했던 것으로 암시된다.

135) Cicero, *In Verrem*, 2.3.29-31.

자 중에 불공정함을 불평한 사람이 없고 1/10세 징수자 중에는 적정량보다 많이 징수한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프로니우스가 고시 덕분에 1/10세를 정량보다 과잉수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심판원단이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예상 때문에 경작자 누구도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서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베레스의 고시의 8배 벌금 재판은 1/10세 징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경작자들이 시칠리아 어느 곳에서건 1/10세 징수자가 원하는 곳으로 법정소환(vadimonium)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시에 포함되어, 이에 따라 경작자는 1/10세 징수자가 소환하는 곳이 어디든지 출석해야 했다.¹³⁶⁾ 경작자들이 먼 곳까지 여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1/10세 징수자는 가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것을 위협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했다. 가짜 소송의 혐의는 주로 경작자가 토지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다. 아무리 기소나 혐의의 내용이 근거 없는 것일지라도 그 희생자는 길고 값비싼 여행을 피하기 위해 아프로니우스로 하여금 소환령을 철회하도록 돈을 지불했을 것이므로 실제로 이러한 재판이 열리기보다는 경작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도시 켄투리파의 농장 임대업자 님포(Nympho)는 아프로니우스에 의해 토지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법정 소환되었고 벌금으로 밀 7천 메딤노스를 지불했다.¹³⁷⁾ 키케로에 의하면 이 재판에서 님포는 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때 심판원단은 물론 베레스의 수행원단의 일원들이었다. 게다가 고시에서는 처벌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탈곡장에 있는 그의 모든 곡물을 지불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것은 토지재산 신고 및 협약에서의 1/10세의 정량이 아니었을 뿐더러 토지재산 신고에서 숨겨진 양이 아니었다. 도시 메나이의 농장 임대업자의 남편인 크세노(Xeno) 역시 아프로니우스에 의해 토지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법정 소환되었다.¹³⁸⁾ 벌금으로 터무니없는

136) Cicero, *In Verrem*, 2.3.38–39.

137) Cicero, *In Verrem*, 2.3.53–54.

8만 세스테르티우스가 선고되었을 때 크세노가 벌금을 지불하려고 하자 베레스는 신전 노예들로 하여금 그를 감금했고 처벌로 태형을 추가했다. 이에 그는 아프로니우스가 원하는 만큼의 1/10세를 지불했다. 이는 히에론 법과 전임 총독들의 선례들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4배 벌금 재판은 경작자들을 위협하여 1/10세 징수자들이 원하는 양을 징수하기 위한 무기로 활용되었다. 경작자는 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4배의 벌금을 물기보다는 1/10세 징수자가 원하는 대로 지불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자의적인 고시와 재판이라는 수단을 활용한 위협과 폭력에 의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 이들은 경작자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고시와 재판은 명목상의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는 폭행이 수탈의 수단이었다. 도시 무르겐티아의 폴레마르쿠스(Polemarchus)는 과도한 1/10세의 지불을 거절하자 베레스의 집으로 기소되었다.¹³⁹⁾ 그곳에서 폴레마르쿠스는 폭행을 당한 후 이전에 책정되었던 많은 양(700 메딤노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1,000 메딤노스)을 지불하게 되었다. 또한 아프로니우스는 도시 아이트나의 Q. 롤리우스를 포룸의 연회 한가운데 세워둠으로써 1/10세를 강제적으로 지불받았다.¹⁴⁰⁾ 롤리우스의 아들은 변호인으로서 출중한 경력이 있었으나 시칠리아로 이동 중에 살해당했는데,¹⁴¹⁾ 키케로는 베레스가 그를 청부 살인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개별 경작자뿐만 아니라 각 도시 대표들에 대해서도 1/10세 징수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하여 수탈하였다. 도시 아그리움에서는 아프로니우스가 요구한 과도한 1/10세의 지불을 거절하자 대표들이 베레스의 재판에 소환되었고, 터무니없는 금액의 벌금을 지불하려고 하자 베레스가 처벌로 태형을 추가하여 결국 1/10세 징수자의 요구에 따랐고, 추가적으로 수수료(밀 33,000 메딤노스)와 곡물 품질 검사(probatio) 수수료

138) Cicero, *In Verrem*, 2.3.55.

139) Cicero, *In Verrem*, 2.3.56: “domum ad istum in ius eductus est, ...”
이밖에도 2.3.56-57, 2.3.60.

140) Cicero, *In Verrem*, 2.3.61-63.

141) Cicero, *In Verrem*, 1.38, 2.3.63.

까지(1 세스테르티우스/메딤노스, 3만 세스테르티우스) 아프로니우스에게 지불했다.¹⁴²⁾

두 번째 고시는 협약 이행에 관한 비상 고시(peculiare edictum repentinum)로 다음 두 가지를 포함했다.¹⁴³⁾ 첫째, 경작자가 협약 이행 전에 탈곡장에서 자신의 몫의 곡물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한 규정과 둘째, 1/10세 징수자가 곡물을 물가에 운반하는 기한을 8월 1일까지로 고정한 규정이다. 한 로마인 기사신분의 경작자(Q. Septicius)가 아프로니우스의 수탈에 반대하면서 1/10세의 정량 이상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자 베레스는 돌연 이 고시를 발표했다. 키케로는 이 고시가 갑자기 제정되었다는 점에 대해 “만약 그것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경매 시점에 공개적으로 선언되었어야 한다”¹⁴⁴⁾고 주장했다. 키케로에 따르면 베레스가 부도덕하고 전례 없는 규칙을 만들면서 비난만 듣고 이윤을 챙기지 않았을 리 없다. 두 번째 고시는 베레스의 3년차 임기 때 1/10세 징수권이 이미 매각된 후에 만들어졌다. 경매 시점에 공개적으로 선언되지 않고 그 후에 돌발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협약에는 앞선 토지재산 신고에 대한 총독의 고시로 인해 1/10세 징수자가 원하는 만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협약 이행 전에는 1/10세 명목의 양을 제외한 수확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그것을 팔거나 먹을 수도 없게 만들었으므로 경작자의 생계를 위협한 것이다. 이로써 경작자에게는 협약을 이행할 것이 강제되었다. 베레스는 경작자로 하여금 1/10세 징수자를 거역하고 단순히 자신의 작물을 탈곡장에 버려두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8월 1일이라는 특정 날짜 전까지 곡물을 물가에 운반하도록 만들었다. 경작자가

142) Cicero, *In Verrem*, 2.3.67–75.

143) Cicero, *In Verrem*, 2.3.36–42. 키케로는 이 두 번째 고시가 베레스의 총독 임기 세 번째 해에 만들어졌을 것이라 주장한다(2.3.51: “... haec omnia iam venditis decumis anno tertio te edixisse dico.”).

144) Cicero, *In Verrem*, 2.3.51: “quae si rei publicae causa faceres, in vendundo essent pronuntiata ...”

향의 표시로서 첫째의 규정대로 탈곡장에서 자신의 곡물을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정된 협약 이행의 기한은 1/10세 징수자로 하여금 탈곡장의 곡물을 물가로 운반하는 날짜를 고정해놓음으로써 결국 협약이 이행될 수밖에 없도록 한 강제적 장치가 되었다.¹⁴⁵⁾ 많은 경작자들은 고시의 첫째 조건으로 인해 탈곡장에서 자신의 수확물을 제때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많은 양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만약 첫째 조건을 어길 시 둘째 조건도 자동적으로 위반하게 되어 경작자는 곡물 1/10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된다.

나아가 많은 양으로 베레스의 하수인에게 계약되었던 징수권에 대해 징수권 가격과 수수료까지 더하여 해당 도시에 강제로 인수시키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앞서 1/10세 징수자의 폭력의 대상이었던 도시 아기리움에서 이 방법이 나타났고 이에 더해 도시 헤르비타의 경우 베레스의 총독 임기 첫 해에는 그의 하수인 아티디우스가, 두 번째 해에 아프로니우스가 직접 징수했지만 세 번째 해에는 도시에 징수권을 강제 인수시켰다.¹⁴⁶⁾

이는 사실상 앞선 위법적인 고시들마저 불필요하게 만들었고 1/10세 징수자들이 직접 각 도시의 경작자들로부터 1/10세를 징수하는 수고조차 행하지 않은 채 막대한 불법적 이윤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징수권의 강제 인수라는 방법은 특히 전반적인 베레스의 통치의 위법성이 가장 심각해졌던 임기 마지막 해에 가장 빈번히 활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임기 세 번째 해에 베레스는 키케로가 총독의 여인들이라 일컫는 여성 도급업자 두 명에게 1/10세 징수권을 도시에 인수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곡물과 현금을 선물했다.¹⁴⁷⁾

시칠리아 총독은 히에론 법을 준수하여 1/10세 징수자로부터 경작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지만 키케로의 말대로 베레스가 히에론 법과 로

145) 키케로는 이 두 번째 규정이, ‘그 협약을 자발적인 것이 아닌 강제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In Verrem, 2.3.37)라고 하면서 이 비상 고시의 심각한 위법성을 강조한다.

146) Cicero, In Verrem, 2.3.75–80. 이밖에도 2.3.83–85, 2.3.88–89, 2.3.99.

147) Cicero, In Verrem, 2.3.77–79.

마의 법 모두를 위반하고 1/10세 징수자들과 현지 관리들의 공모 체제를 형성했다면 경작자들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시라쿠사이의 집회에서 L. 루브리우스는 “아프로니우스가 베레스를 곡물 징수 사업의 동업자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¹⁴⁸⁾고 주장하며 법적 도전을 행했다. 이때 베레스는 진실에 대한 응답 없이 루브리우스와 아프로니우스의 경합을 완화시켰을 뿐이었다. 뒤이어 기사신분인 P. 스칸딜리우스 역시 아프로니우스에게 동일한 내용의 법적 도전을 5천 세스테르티우스의 공탁금으로써 행했다.¹⁴⁹⁾ 베레스가 자신의 수행원단에서 이 재판의 심판원단을 임명하려 하자 스칸딜리우스는 이 문제를 로마에 가져가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가 실패하여 법적 도전을 취소하려 했을 때 베레스는 스칸딜리우스로 하여금 아프로니우스에게 그 공탁금을 주라고 강요했다. 베레스가 1/10세 징수자와의 동업관계에 대한 추문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대신 자신의 동업자에게 5천 세스테르티우스의 보상금을 수여함으로써 그 동업관계를 인정한 것이 되었다고 키케로는 말했다. 베레스에게 ‘만약 수치심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만큼 위험을 느꼈었더라면,’¹⁵⁰⁾ 즉 1/10세 징수자와 동업관계를 형성한 것이 위법행위였음을 인지했다면, 아프로니우스를 감싸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키케로에 의하면 스칸딜리우스 사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총독 베레스와 1/10세 징수자 간 동업관계에 대한 혐의는 로마에서 기소인이나 정적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속주 현지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베레스는 아프로니우스를 보호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베레스는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결을 자신의 수행원단에게만 부여했다.

148) Cicero, *In Verrem*, 2.3.132: “cum palam Syracusis te audiente maximo conventu L. Rubrius Q. Apronium sponsione laccessivit, “NI APRONIUS DICTITARET TE SIBI IN DECUMIS ESSE SOCIUM,”...” 2.3.132–134(루브리우스의 법적 도전).

149) Cicero, *In Verrem*, 2.3.135–142(스칸딜리우스의 법적 도전).

150) Cicero, *In Verrem*, 2.3.141: “si qui pudor in te atque adeo si qui metus fuisset, ...”

키케로는 1/10세와 관련한 베레스의 고시들을 베레스의 총독 임기의 위법성을 대표하는 비합법적이고 전례 없는 수단으로 제시했다. 1/10세의 정량보다 더 많은 곡물을 징수할 권리를 매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총독들과 동일한 징수권을 판 것이 아니다.¹⁵¹⁾ 또한 원로원의 권위나 전임 총독들의 전례가 아닌 자신만의 새로운 고시를 통해 1/10세 명목으로 경작자에게서 강탈했다. 이 주장 직후 키케로는 경작지가 유기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를 서술했는데 이는 앞서 살펴봤던 경작지가 유기되었다는 수사학적 증거 제시 방식이었다.

키케로는 후임 총독 메텔루스(L. Caecilius Metellus, 기원전 68년의 콘술)가 시칠리아로부터 로마의 정무관들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¹⁵²⁾

Cicero, *In Verrem*, 2.3.123: “나는 곡물 1/10세 징수권을 히에론 법에 따라서 팔았소.” …

Ibid., 2.3.124: “가능한 가장 많은 양으로 1/10세 징수권을 매각하기 위해 나는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야 했소.” 그렇다면 어째서, 메텔루스여, [베레스만큼] 그렇게 높은 계약량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버려진 농지들, 비어있는 토지들, 파괴되고 비참한 속주를 맞닥뜨렸기 때

151) Cicero, *In Verrem*, 2.3.40.

152) Cicero, *In Verrem*, 2.3.123: “DECVMAS FRUMENTI LEGE HIERONICA VENDIDI, …”

Cicero, *In Verrem*, 2.3.124: “SVMMA VI DATA EST A ME OPERA VT QVAM PLVRIMO DECVMAS VENDEREM. Cur igitur, Metelle, non ita magno vendidisti? Quia desertas arationes, inanes agros, provinciam miseram perditamque offendisti. … VT ARATORES QVI RELIQVI ERANT QVAM PLVRIMVM SERERENT. … Quaenam in Sicilia tanta clades aut quod bellum tam diuturnum, tam calamitosum te praetore versatum est, ut is qui tibi successerit “reliquos” aratores collegisse et recreasse videatur? …”

Cicero, *In Verrem*, 2.3.126: “TAMEN PRO EO VT TEMPORIS DIFFICVLITAS ARATORVMQUE PENVRIA TVLIT. “Aratorum” inquit “penuria.””

Cicero, *In Verrem*, 2.3.128: “IN RELIQVVM TAMEN TEMPVS VECTIGALIBVS PROSPEXI.”

문입니다. …

Ibid.: “남아있는 경작자들은 가능한 한 많이 파종할 수 있도록.” … 당신이 총독이었을 때 시칠리아에 어떤 무시무시한 재난이 있었고, 어떤 길고 재앙적인 전쟁이 만연해 있어서, 당신의 후임자가 “남아있는” 경작자들을 수합하고 회복시켜야 했습니까? …

Ibid., 2.3.126: “그럼에도 어려운 시기와 경작자들의 빈곤함이 허용하는 만큼.” 그는 말합니다. “경작자들의 빈곤함.”

Ibid., 2.3.128: “나는 미래를 위해 세입을 관리해 왔소.”

그 내용은 곡물 1/10세의 징수권을 히에론 법에 의거해 매각했다는 것과 가장 많은 양에 팔기 위해 애썼다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reliqui) 경작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만큼 파종하도록 승인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 세입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메텔루스가 편지에서 사용한 단어인 ‘남아있는’ 경작자, ‘경작자들의 빈곤함’(aratorum penuria)이라는 단어들은 베레스의 총독 임기가 어떤 전쟁이나 재난이었음을 암시하여, 그의 수탈을 직접적으로 칭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럼에도 베레스가 1/10세 징수권을 많은 양에 매각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마치 이것을(sc. 시칠리아 경작지의 유기) 로마 인민이 원했거나 원로원이 이것을 당신에게(sc. 베레스)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¹⁵³⁾ 곡물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로마 정부에서 로마 시의 중요한 식량창고의 완전한 파괴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1/10세 명목으로 로마에 보낸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스스로 착복했다.¹⁵⁴⁾

종합하자면 베레스는 1/10세 징수권 경매에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하여금 많은 입찰량을 제시하도록 해 1/10세 징수자로 선발했고, 그가

153) Cicero, *In Verrem*, 2.3.48: “Quasi vero aut populus Romanus hoc vulerit aut senatus hoc tibi mandaverit, ….”

154) 키케로에 따르면 베레스는 2배를 착복했다(*In Verrem*, 2.3.48).

많은 계약량을 상쇄할 수 있게끔 큰 액수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이는 고스란히 경작자들이 지불해야 할 몫의 증가로 이어졌다. 베레스는 두 가지의 불법적 고시들을 통해 1/10세 징수자들로 하여금 개별 경작자들에게서 원하는 만큼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개별 경작자들에 대한 억압은 해당 도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나아가 개별 도시들에게 많은 징수권 계약량과 높은 가격의 수수료를 강제로 지불하도록 한 후 인수시키기도 했다. 모든 경우에서 1/10세 징수자는 총독의 대리인으로서 총독의 우선적 보호를 받았다. 심지어 총독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보호까지 받았는데, 가령 재판 심판원단의 불법적 구성과 비공식적인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경작자들과 도시들은 총독과 1/10세 징수자들의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② 곡물 매입 과정에서의 공금 유용

곡물 매입은 기원전 73년 테렌티우스-카시우스 법으로 인해 속주 시칠리아에서 총독의 의무가 되었다. 총독의 매입 의무는 두 가지였다.

원로원 의결 및 테렌티우스와 카시우스의 곡물법 조항들에 의해, 베레스는 속주 시칠리아에서 곡물을 매입해야 했습니다. 매입 유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1/10의 양[의 곡물을 시칠리아 인들로부터 매입하는 것], 두 번째는 도시들 간에 추가적으로 공정하게 분배된 것입니다. 전자 즉 그 1/10의 양은 첫 번째 1/10세의 양과 동일했습니다. 후자 즉 명령된 밀의 양은 매년 800,000 모디우스였습니다. 1/10의 양의 곡물 매입에 대해서 가격은 1 모디우스 당 3 세스테르티우스가 책정되어 있었고, 명령된 밀에 대해서는 3.5 세스테르티우스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명령된 밀에 있어서는 경작자들에게 지불하도록 매해 2,800,000 세스테르티우스가 베레스에게 할당되고 있었고, 두 번째 1/10의 양에 있어서는 총 9,000,000 세스테르티우스가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속주 시칠리아의 곡물 매입을 위해 임기 3년간 약 12,000,000 세스테르티우스가 [공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¹⁵⁵⁾

155) Cicero, *In Verrem*, 2.3.163: “Frumentum emere in Sicilia debuit Verres ex senatus consulto et ex lege Terentia et Cassia frumentaria. Emundi duo

첫째, 1/10세와 같은 양의 곡물을 1/10세 과세 대상 토지의 경작자들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다. 둘째, 명령된 밀이라 불리는 것으로 시칠리아 전역의 모든 도시들 간에 곡물 할당량을 공정하게 분배해 매입하는 것이다. 이에 두 번째 1/10의 양이라고 흔히 불렸다. 총독이 경작자들로부터 이를 매입하는 비율은 3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총독 베레스에게 매해 9백만 세스테르티우스가 국고에서 지급되었다. 매입하는 10%의 양은 매해 수확량에 따라 달랐겠지만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았으니, 매해 최대 3백만 모디우스의 밀을 두 번째 1/10의 양의 항목으로 매입하도록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명령된 밀의 양은 매해 총 80만 모디우스로, 3.5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로 계산하였으므로 총독 베레스에게는 280만 세스테르티우스(=80만 모디우스*3.5 세스테르티우스)가 국고에서 지급되었다. 두 항목을 위해 국고에서 3년간 매해 총독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11,800,000 세스테르티우스로, 키케로의 말대로 약 1천 2백만 세스테르티우스였다. 그리고 매해 로마에서 시칠리아로부터 매입된 곡물의 양은 최대 380만 모디우스였다. 로마 인민의 밀 소비량은 한 달에 약 33,000 메딤노스, 즉 198,000 모디우스였으니 1년에 약 2,376,000 모디우스가 필요했다.¹⁵⁶⁾ 두 번째 항목에 의해 매해 시칠리아에서 최대 300만 모디우스가 운송되었으므로 1년 곡물 배급량에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테렌티우스-카시우스 법에서는 시칠리아로부터 곡물 매입만을 규정했고 그 활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300만 모디우스 가량의 밀이 로마 인민에게 배급을 위한 목적에서만 쓰이지

genera fuerunt, unum decumanum, alterum quod praeterea civitatibus aequaliter esset distributum ; illius decumani tantum quantum ex primis decumis fuisset, huius imperati in annos singulos tritici mod. DCCC ; pretium autem constitutum decumano in modios singulos HS III, imperato HS IIIS. Ita in frumentum imperatum HS duodetriciens in annos singulos Verri decernebatur quod aratoribus solveret, in alteras decumas fere ad nonagiens. Sic per triennium ad hanc frumenti emptionem Siciliensem prope centiens et viciens erogatum est.”

156) Cicero, *In Verrem*, 2.3.72.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로마의 국고가 빈한한데도 불구하고 곡물 매입 자금을 시칠리아 총독에게 지급한 배경에는 로마 시의 곡물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키케로의 과장적 표현에 따르자면 베레스는 곡물 매입 자금 전체를 횡령했다. 키케로가 말하는 베레스가 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는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베레스는 징세도급 사업체에 24%의 이자율(faeneratio)을 적용해 이 공금을 대출했다.¹⁵⁷⁾ 도급업자 P. 베티우스(magister)는 카르피나티우스(pro magister)에게 이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처럼 공금을 이용한 고리대금은 전례 없는 독직행위였고 원로원에서도 오히려 “징세도급업자들에게 이자로써(usura)(sc. 이자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종종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무관이 징세도급업자들로부터 이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강탈하는 모험을 감행”¹⁵⁸⁾한 것이었다.

둘째, 베레스는 많은 도시들에 곡물 매입의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¹⁵⁹⁾ 그 명분은 곡물 품질 검사(frumentum probatio)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자유도시 할라이사는 밀 6만 모디우스에 대해 15 세스테르티우스/메덤노스의 비율로 사업체의 만켄스들에게 직접 지불했다.¹⁶⁰⁾ 키케로에 의하면 베레스는 시칠리아의 특정 지역에서 곡물을 구매하라는 로마 국가의 명령에 불복했으며 그 불복의 근거인 곡물의 품질이 조악하다는 것은 동일한 1/10세 과세 대상 도시들에서 이미 곡물 1/10세 명목으로 징수한 곡물이 있기에 부적절했다. 이 항목은

157) Cicero, *In Verrem*, 2.3.165–169.

158) Cicero, *In Verrem*, 2.3.168: “Quis enim hoc fecit umquam, quis denique conatus est facere aut fieri posse cogitavit, ut, cum senatus usura publicanos saepe iuvisset, magistratus a publicanis pecuniam pro usura auferet auferre?”

159) Cicero, *In Verrem*, 2.3.170–179.

160) Cicero, *In Verrem*, 2.3.170–175. 이 만켄스들은 볼카티우스, 티마르키데스, 마이비우스였다.

과세가 아닌 매입이므로 품질 검사 결과 곡물이 거부되었다면 총독은 추후 도시에서 지불한 현금에 대해 상환해야 했다. 키케로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독자들에게 암시한다. 그의 암시가 사실이라면 베레스는 도시들에서 징수한 현금과 로마 국고에서 지급받은 현금 모두를 횡령한 것이다. 베레스에게 선발된 소수의 도급업체 직원들은 베레스와 공모하여 이윤을 많이 챙겼고 그로 인해 기사신분으로 상승한 인물도 있었다.¹⁶¹⁾

셋째, 베레스가 몇몇 도시들에 대해 곡물 매입의 대가를 상환했더라도 그것은 규정된 것에 비해 자의적으로 축소시킨 금액이었다. 베레스는 도시 켄투리파와 아그리젠툼을 비롯한 몇몇 도시들에서는 곡물 매입을 위한 곡물을 승인하고 대가를 상환한 바 있다.¹⁶²⁾ 하지만 그 도시들 역시 모든 채무금을 상환 받지 못했다. 심지어 경작자들은 베레스의 조각상을 세우기 위한 돈을 지불한 적도 있다.¹⁶³⁾

베레스는 곡물 매입에 대해서도 징세도급 사업체의 일원들 중 소수를 선발해 동업관계를 형성했다. 이들은 총독의 정리(accensus)와 서기관(scriba)으로서, 마찬가지로 베레스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했다.¹⁶⁴⁾ 특히 매입 자금을 높은 이자율로 맡겼기에 동업관계의 도급업체 직원들은 총독의 이름으로 속주민들에게 불공정한 비율로 대출하고 곡물의 매입을 수행했다.

나아가 곡물 매입 대가의 상환과 관련해서 베레스는 공제(deductio)의 세 가지 항목을 만들었다고 키케로는 주장했다.¹⁶⁵⁾ 화폐교환차액(collybus)은 시칠리아 전역에서 단일한 화폐를 사용하므로 기만적이고 봉인대(cerarium)는 정무관의 업무나 공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기만적이며 서기관의 이름으로 징수된 총 지불 금액의 4%가 수수료인 금액증명(spectatio)은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기만적이라는

161) Cicero, *In Verrem*, 2.3.176.

162) Cicero, *In Verrem*, 2.3.180-187.

163) Cicero, *In Verrem*, 2.2.141-168.

164) Cicero, *In Verrem*, 2.3.169-171. [표 5]를 참고하십시오.

165) Cicero, *In Verrem*, 2.3.181.

주장이었다.¹⁶⁶⁾ 키케로는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정해진 일들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가장 파렴치한 도적질에 대한 명칭들’¹⁶⁷⁾이라 표현했다. 베레스가 고안한 공제의 항목들은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것일 뿐더러 만약 공정하게 공제가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공제액은 베레스나 그의 서기관이 아니라 로마 인민에게로 전달되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베레스 논고문에는 총 4명의 베레스의 서기관들이 등장한다.¹⁶⁸⁾ 키케로는 베레스가 곡물 매입 과정에서 주로 이들과 결탁했다고 기록했다. 그 근거는 베레스는 서기관에게 3년 동안 총 13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전체 매입 자금에서 떼어주었다는 것이었다.¹⁶⁹⁾ 로마의 원로원 신분의 재산 자격이 100만 세스테르티우스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또한 기원전 114년의 콘술이었던 C. 카토는 속주 마케도니아를 수탈한 혐의로 반환법정에서 8천 세스테르티우스의 손해액이 산정된 바 있었던 것에 비해 베레스의 서기관이 가져간 금액은 엄청나게 큰 규모였다. 뒤이어 키케로는 베레스가 공공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서기관에게 금반지를 수여했다고 기록했다.¹⁷⁰⁾ 금반지의 수여는 전쟁에서의 승전을 이끈 장군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베레스의 이 행위는 전쟁과는 상관없이 행해졌다는 점을 고발한 것이다. 키케로는 자신이 기원전 75년 총독 페두카이우스의 직속 콰이스토르로서 서부 시칠리아에서 근무했을 때 그에게도 직속 서기관들 두 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베레스가 고안한 금액증명과 같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베레스의 위법성을 대비시켰다.¹⁷¹⁾

독자들은 이제까지 키케로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총독 베레스

166) Cicero, *In Verrem*, 2.3.181–187.

167) Cicero, *In Verrem*, 2.3.181: “Haec omnia, iudices, non rerum certarum, sed furtorum improbissimorum sunt vocabula.”

168) 도급업체의 마기스테르 C. 안티스티우스, 프로콰이스토르 코르니피키우스, 도급업체의 만켄스 마이비우스, 콰이스토르의 수행원이었던 L. 파피리우스 포타모. [표 5]를 참고하십시오.

169) Cicero, *In Verrem*, 2.3.184.

170) Cicero, *In Verrem*, 2.3.185.

171) Cicero, *In Verrem*, 2.3.182.

가 매해 로마 시에 전달해야 했던 총 680만 모디우스의 곡물을 구했던 방식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1/10세 징수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곡물과 현금을 과잉수취한 후 곡물은 베레스가 개인 창고에 보유하고 현금의 일부를 1/10세 징수자에게 품삯으로서 넘겨줬다는 것이었다. 로마로부터 곡물 매입 의무가 총독에게 부과되자 1/10세 징수 과정에서 축적해둔 곡물을 통해 베레스는 현금을 벌어들이는 횡령 행위를 할 수 있었다.¹⁷²⁾ 나아가 베레스는 관세 징수 도급업자들(portitores)과의 결탁을 통해 관세를 전혀 지불하지 않은 채 밀을 수출함으로써 이윤을 거두기도 했다.¹⁷³⁾ 이 사실을 통해 1/10세의 과잉수취분이 매입 항목의 총량을 초과하고도 남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창고 유지 곡물의 대체 지불 과정에서의 사취

2차 논고문 제3권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곡물 관련 수탈 혐의는 창고 유지 곡물에 관한 것이었다. 원로원 의결과 법에 의해, 속주 총독의 창고 유지 비용을 위해 도시들로부터 정해진 양의 곡물을 매입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이 비용은 총독이 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일종의 판공비였다.¹⁷⁴⁾

이미 원로원에서는 창고 유지 곡물의 대체 지불 비율(aestimatio)을 책정한 바 있으며 최대 보유가능한 양도 정해져 있었다.¹⁷⁵⁾ 다만 총독이 창고 유지 곡물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나 그 곡물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 자체는 관습적, 합법적으로 행해진 바 있는 것으로 키케로가 베레스의 위법행위라고 기소하는 혐의는 이것이 아니었다.

172) Carcopino, 앞의 책(1914), p.273, n.5를 참고하십시오.

173) Carcopino, 같은 책(1914), p.276: “몇 달 동안 시라쿠사 항구 한 곳에서만, 베레스는 6만 세스테르티우스의 관세를 사취했다(frustra). 이는 모든 수출품들에 적용되었던 통일적인 5%의 관세(vicesima portorii)를 고려할 때, 총합 120만 세스테르티우스의 암거래(traffic)를 나타낸다.” 또한 Cicero, *In Verrem*, 2.2.185.

174) 김경현, 앞의 논문(1992), p.838.

175) 그 양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베레스는 그 양의 5배를 보유했다(Cicero, *In Verrem*, 2.3.225).

원로원 의결과 법률에 의거, 그에게(=베레스) 사적으로 곡물을 전용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곡물에 대해 원로원에서 밀은 4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 보리는 2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라고 대체 지불 비율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저자(=베레스)는 밀 총량에 보리 분량을 더해서, 경작자들에게 밀 3 데나리우스/모디우스(=12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로 비율을 정했습니다.¹⁷⁶⁾

키케로가 고발하는 혐의는 창고 유지 곡물의 대체 지불 제도를 베레스가 적용한 방식이 위법행위였다는 것이다. 우선 베레스는 시칠리아 내 지역들 중 가장 높은 곡물 시장가격을 대체 지불 비율로서 허용한다는 명분 하에 12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라는 높은 비율을 책정했고 이를 거부할 시 그곳으로의 곡물 운반을 명령했다.¹⁷⁷⁾ 곡물 운반의 어려움은 이전부터 총독이 호의로써 대체 지불을 허용해온 이유였다.¹⁷⁸⁾ 그러나 경작자들이 곡물을 운반해야 하는 장소는 단지 운반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였을 뿐이므로 실제로 시장가격이 높지도 않은 곳이며 곡물을 확보할 수조차 없는 곳이었다. 키케로에 따르자면 시칠리아 내에는 시장가격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12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

176) Cicero, *In Verrem*, 2.3.188: “Nam cum ex senatus consulto et ex legibus frumentum in cellam ei sumere liceret idque frumentum senatus ita aestimasset, quaternis HS tritici modium, binis hordei, iste hordei numero ad summam tritici adiecto tritici modios singulos cum aratoribus denariis ternis aestimavis.”

177) Cicero, *In Verrem*, 2.3.189–193.

178) Cicero, *In Verrem*, 2.3.189: “Etenim haec aestimatio nata est initio, iudices, non ex praetorum aut consulum sed ex aratorum et civitatum commodo. … cum aut frumentum vendidisset aut servare vellet aut in eum locum quo imperabatur portare nollet, petivit in beneficii loco et gratiae ut sibi pro frumento quanti frumentum esset dare liceret.” (=실로 이러한 대체 지불 제도는 애초에, 심판인단 여러분, 프라이토르나 콘술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작자와 도시의 편의를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 그들이(sc. 경작자와 도시들) 곡물을 [이미] 판매해버렸거나, 보유하고 싶었거나, 운반하도록 명령된 장소까지 운반하기 원치 않았던 경우에, 곡물을 대신하여 곡물의 양만큼 지불하도록 친절과 호의로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의 시장가격을 보인 곳은 없었다. 베레스는 자신이 보낸 편지에서 매입 곡물의 상환 비율을 2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로 산정했음을 적은 바 있다.¹⁷⁹⁾ 또한 경작자들의 증언 및 회계기록에서는 3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의 비율이 적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베레스는 12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의 대체 지불 비율을 책정해 창고 유지 곡물을 징수했다. 키케로에 따르면 이는 베레스가 곡물 소출(annona)을 실제와 다르게 평가함으로써 시장가격과 창고 유지 곡물의 대체 지불 비율을 연결하여 그 결과를 산정한 것으로, 사취행위였다.¹⁸⁰⁾

그리고 베레스가 책정한 비율 자체가 근거 없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도 고발했다.¹⁸¹⁾ 창고 유지 곡물을 위해 원로원에서 지급한 매입 자금(4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을 횡령했고 자신이 책정한 대체 지불 비율(12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에 대하여 그 차액을(8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 경작자로부터 또 사취하는 전례 없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¹⁸²⁾ 원로원에서 책정한 곡가는 시칠리아 경작자들에게 비교적 후한 편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 계산을 토대로 경작자나 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까지 곡물을 공급한 것을 보상해주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당시 속주 시칠리아 내 밀의 시장가격은 2~3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였지만 베레스는 12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로 대체 지불 비율을 책정해 현금을 징수했다. 원로원에서는 4 세스테르티우스/모디우스의

179) Cicero, *In Verrem*, 2.3.172.

180) Cicero, *In Verrem*, 2.3.189.

181) Cicero, *In Verrem*, 2.3.194-195.

182) 키케로가 이를 보여주는 경작자와 총독 베레스의 가상 대화를 참고하시오(*In Verrem*, 2.3.196-197). 즉 Cicero, *In Verrem*, 2.3.201: “Nam qui mille modium Verri suae partis in cellam gratis dedisset, duo milia nummum aut summum tria dedisset : idem nunc pro eodem numero frumenti HS VIII dare coactus est.” (=베레스에게 사적으로 쓰도록 1천 모디우스를 자신의 몫에서 무상으로 지불했었을 사람, 또는 그에게 2천 혹은 최대 3천 세스테르티우스를 지불했었을 그 사람은, 이제 동일한 분량의 곡물을 대신하여 8천 세스테르티우스를 지불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베레스 논고문에서는 창고 유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비율로 대체했다.

비율을 법적으로 책정한 바 있다. 키케로는 이로 인한 돈의 강탈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토지의 생산물 강탈은 최소한의 위로(solacium)라고 하여 대비시키고 있다.¹⁸³⁾ 경작자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경작하여 생산물을 수확하기 때문에 그 생산물을 강탈하는 것은 가장 막대한 위법행위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토지, 농기구 등 경작자로서의 기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총독 베레스의 임기만 넘긴다면 동일한 토지 위에서 다시 경작하여 생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위로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베레스는 화폐까지 추가적으로 강탈했으므로 생산물 이외의 나머지 재산들인 토지와 농기구까지 팔도록 강제당한 것이 된다. 이로써 베레스의 총독 임기 이후 결과적으로 경작자들은 모든 재산을 강탈당하여 토지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키케로는 도시 엔텔라 대표의 증언을 제출했다.¹⁸⁴⁾ 대체 지불과 관련한 베레스의 행위가 만약 합법적인 것이었다면 로마 원로원에서 총독에게 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큰 돈을 지급하도록 의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칠리아 인들은 기꺼이 무상으로 일종의 판공비를 납부했을 것이라는 증언이었다.

나아가 키케로는 로마에 보내야 하는 곡물 관련 항목들보다 속주 내에서 쓰이는 창고 유지 곡물에서 더욱 무제한적으로 수탈하여 사적으로 이윤을 획득했다고 고발했다. 총독의 부당이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가 책정한 창고 유지 비용의 규모와 그에 대한 대체 지불 곡가가 시칠리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밝히기 위해 키케로는 도시 아그리젠툼의 소시푸스라는 인물이 행한 연설을 인용했다.¹⁸⁵⁾ 그 연설의 내용은 시칠리아 경작자들의 고통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은 베레스의 창고 유지 곡물의 징수로 인해 경작자들의 재산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키케로는 창고 유지 곡물의 유용이라는 주제를 곡물 관련 수탈 혐의에서 마지막 부분에 위치시키면서

183) Cicero, *In Verrem*, 2.3.199.

184) Cicero, *In Verrem*, 2.3.200.

185) Cicero, *In Verrem*, 2.3.203-204.

앞서 살펴봤던 경작지가 유기된 결과를 강조하는 증거 제시의 방식을 전형적으로 구사했다.

덧붙여 키케로에 따르면 베레스에게 남은 변론이란 그 자신을 비롯해 다른 이들도 창고 유지 곡물과 관련한 이 위법행위를 행했다는 것 뿐이지만 그가 변호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전례가 없었다고 했다.¹⁸⁶⁾ 키케로는 그것이 남들도 저지르는 위법행위라는 주장은 변론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왜냐하면 베레스에게 유죄선고가 가해져야 다른 이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며, 반대로 무죄선고가 가해질 경우 오히려 그 행위가 합법적인 것처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⁸⁷⁾ 피고인의 속주 수탈 혐의가 명백한 범죄로 입증될 경우 그러한 선례는 많을 것이지만 선례가 많다는 이유로 그가 무죄선고를 받는다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계속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로마의 속주, 자유도시들, 외국 국가들의 파멸이 더욱 초래되어 로마의 생존이 위협해질 것이다. 실제로 키케로가 제시한 선례들은 대체 지불 비율이 추수 시기, 시장가격, 풍흉, 총 생산량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들이었다. 기원전 80년 시칠리아 총독 레피두스와 기원전 81/80년 C. 마르켈루스는 창고 유지 비용으로 현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M. 안토니우스는 정무관들 중 최악으로 꼽히는 인물로, 유일하게 자의적으로 대체 지불 비율을 책정하고 현금을 징수했다. 기원전 78년 시칠리아 총독 사케르도스는 도시의 요청으로 인해 추수 전 창고 유지 곡물의 대체 지불 비율(3 데나리우스/모디우스)을 시장가격(5 데나리우스/모디우스)보다 낮게 책정했다. 기원전 76~75년 페두카이우스의 임기 두 번째 해에 대체 지불 비율을 책정했지만 경작자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베레스의 행위가 전례 없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부각시킨 키케로의 논고문의 구성은 유죄 판결 자체를 목적으로 했던 수사학적 전략이었다. 앞 장에서 밝혔듯이 이를 비롯해 곡물 1/10세의 징수와 매입 항목의 수탈 혐의에 대한 고발에서도 수사학이 구사되었음을 유념

186) Cicero, *In Verrem*, 2.3.205–217.

187) Cicero, *In Verrem*, 2.3.206–208.

해야 한다. 이처럼 반환 재판의 기소 연설문에서 수사학이 다분히 동원
되어야만 했던 원인에는 반환법과 반환법정을 수단으로 작동하던 정치
적 맥락이 있었을 것이다.

IV. 베레스 재판에서 보이는 정치 관계와 반환법의 한계

1. 반환법의 성격 변화와 정치 수단화

기원전 70년대 작동되고 있었던 반환법 및 반환법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당시까지 형성된 반환법정의 특수한 성격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마 공화정 시기의 반환법정은 범죄 혐의의 유무죄 판결과 처벌로 이루어지는 형사법정이었다. 로마 총독이 반환법정에 기소되어 출석이 요구되었다면 이는 국익을 침해한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이므로 피고인은 출석을 거부할 수 없었다. 만약 반환재판이 민사소송이라면 고발에 대한 피고의 출석 거부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반환법정의 특수성은 민사소송적 성격에 있었다.¹⁸⁸⁾ 반환법정에는 여타 형사법정과 달리 개인 대 개인의 재산권 분쟁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민사소송적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첫째, 로마 총독의 수탈행위로 인한 반환의무 혐의의 기소에는 재산권 침해의 당사자인 속주민의 고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188)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권리 행사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원하는 원고가 그 침해의 주체 혹은 권리 행사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체인 피고를 재판에 소환하고, 재판을 통해 이들 소송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해결되고 조정된다. 이때 원고의 피해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침해된 권리에 대해 배상하는 행위가 해결과 조정의 과정에 반드시 수반된다. 권리 침해의 내용이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 간 분규의 범주에 있다면 민사소송이다. 형사소송이라면 개인적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가 기소의 주체가 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기소의 주체 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 범죄 혐의의 제기 자체만이 기소 성립의 요건이 된다. 공화정 시기에는 오늘날처럼 국가기관으로서 검사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정치인 개인들이 형사 기소를 수행하여 검사의 역할을 담당했다.

둘째, 피해를 당한 속주민의 침해된 재산권, 즉 손해액 산정과 그에 대한 배상, 즉 재산의 ‘반환’이 반환법정 재판의 목적이었다.

만약 반환법정이 오로지 형사 법정의 성격을 가진다면, 총독의 속주 수탈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함으로써 향후 이런 범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피해 당사자의 고발을 재판 자체의 성립 요건으로 제한했다는 사실은, 이 범죄 사안을 국가 차원에서 파악하지 않고 단지 개인 간의 분쟁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향후 동일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반환법정에서 국가는 단지 고발자와 피고인 간에 발생한 분쟁의 중재자로서만 기능할 뿐이어서, 양측 가운데 승소자를 가리고 이에 따른 손해액의 반환이라는 합의의 도출을 도와줄 뿐 처벌과 규제에 능동적이지 않았다.

물론 반환법정이 재산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적 성격만 지녔던 것은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반환법정이 설립되기 전인 기원전 171년, 후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반환의무 혐의의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속주 히스파니아의 사절들이 로마 원로원 앞에서 “로마 정무관들의 탐욕과 오만함에 대해 불평했다.”¹⁸⁹⁾ 이에 로마에서는 원로원 의결에 의해 처음으로 속주민의 재산에 대한 수탈행위를 심리했던 바 있다. 이때 로마 정무관들에 대한 심리 방식과 반환의무 혐의의 내용은 이후 등장하는 반환법 및 반환법정의 주요 특징을 보여줬다. 먼저 속주민 스스로의 고발과 수탈행위를 자행한 피고인들의 지명이 요구되었다. 이는 앞서 거론된 반환법정의 민사소송적 성격을 보여준다. 만약 속주민으로부터의 고발이 없었다면 로마 정무관들의 수탈행위는 심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각각에 대해 반환법정의 심판인단과 같이 “원로원급 5명의 심판원단(recuperatores)이 임명되었다.” 한 피고인(Canuleius)은 “히스파니아 속주민들에게 그들의 변호인들로 행동하기를 원하던 보호인들(patronos)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로마의 원로원

189) Livius, 43.2.2: “ii de magistratuum Romanorum avaritia superbiaque conquesti, ...”

의원의 해외 부정행위에 대해 동료 원로원 의원이 심리하는 방식, 그리고 속주민이 아닌 로마인이 그들을 대변해 기소해야 하는 방식 등이 미래의 반환법정에 그대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후대에 심화되어 나타나는 법정 운영의 정치적 부패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총 4인의 피고인이 있었는데 이들의 심리는 모두 연기되거나 무죄로 판결되었거나 피고인이 자발적 추방을 행함으로써 심리가 종결되었다. 게다가 마지막 심리가 무산되자 원로원 의결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조항의 내용 중 하나는 로마 정무관이 곡물에 대한 현금의 비율(aestimatio)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¹⁹⁰⁾ 이는 기원전 70년 총독 베레스의 중요한 혐의이기도 했던 총독의 매입 혹은 대체 지불 비율 책정을 통한 곡물 수탈과 정확히 동일했다.

민사소송적 성격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반환법정은 기원전 149년의 칼푸르니우스 반환법(lex Calpurnia repetundarum)¹⁹¹⁾을 통해 최초로 상설화되었다. 호민관 칼푸르니우스(L. Calpurnius Piso Frugi)가 제정한 이 반환법은 로마 정부에서 속주 지배의 안정화를 위한 최초의 조치였다. 이때부터 로마에서는 법률에 의해 법정이 설치되어 프라이토르 1인이 매해 자동적으로 이 상설법정을 주재하게 되었고 원로원 의원 중에서 심판인단이 선택되었다. 하지만 총독의 사취를 방지하겠다는 이 법의 취지는 잘 구현되지 않았다. 총독이 아무리 큰 액수를 수탈했다 할지라도 속주민의 고발이 없다면 반환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당연히 수탈행위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먼저 기소 절차는 여전히 신성도금(legis actio sacramento)의 관행을 활용하여 민사소송의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¹⁹²⁾ 게다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환 자체가 이 법정

190) Livius, 43.2.12: “... impetrarunt, ne frumenti aestimationem magistratus Romanus haberet, ...”

191) Cicero, *In Verrem*, 2.3.195, 2.4.56.

192) Atkinson, 앞의 논문(2014), p.91. 재판을 위한 공탁금을 통해 신성한 맹세를 행한 양측은 기소인과 피고인이 아닌 두 청구소송인들로 다루어지며, 이들이 프라이토르 앞에서 맹세(sacramentum)를 하면서 각각의 주장을 하고 두 개의 선서문들이 판사(iudex)의 판결에 회부되었다. 승소한 측은 공탁금을 돌려받았고 패소한

재판의 목적이었기에 유죄선고 시 산정된 손해액만큼의 반환만을 처벌로 규정하여 사실상 국익의 침해 차원에서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속주 총독들은 전임 고위 정무관, 즉 프라이토르직이나 콘술직을 역임한 후 임페리움이 연장된 자로 로마 시에 복귀한 후 원로원 의원으로 활동할 자들이었다. 이들의 위법행위를 심리하기 위한 법정의 심판인단을 원로원에서 차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선고가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기원전 149년부터 아킬리우스 법이 제정된 기원전 123/2년 전까지 반환법정의 재판으로 입증된 총 5건은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¹⁹³⁾ 또한 기원전 149년부터 50년까지 총 49건 중 20건이 유죄 판결이었다.¹⁹⁴⁾

이후 기원전 126년에 제정되었다고 추정되는 유니우스 반환법(*lex Iunia*) 역시 민사소송적 성격을 띠며 원로원 의원 심판인단의 한계와, 소송은 로마 시민만의 특권이라는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¹⁹⁵⁾ 따라서 추후 이어질 법정 절차의 발전에서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심판인단의 자격 구성을 다원화해야 하고, 고발인 혹은 그의 후견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인이 필수적으로 정무관 앞에 참석을 의무화해야 하며, 유죄판결이 형사 처벌을 수반해야 하고, 소송 제기의 자격에 피해대상인 비 로마 시민을 포

측은 공탁금을 신들에게 바쳐야 했다.

193) Lintott, 앞의 논문(1981)의 Appendix. 그는 각주 197번의 판례들에 더하여 기원전 140년의 유니우스 실라누스(D. Iunius Silanus Manlianus, 기원전 142/1년의 프라이토르)의 재판을 추가했다.

194) 공화정 후기의 판례들은 E. S. Gruen, *Roman Politics and the Criminal Courts, 149-78 B.C.* (Harvard Univ. Press, 1968)의 “Appendix E,” pp.305-310 ; Lintott, 앞의 논문(1981), Appendix ; Alexander, 앞의 책(1993)을 참고하십시오.

195) 허승일, 앞의 논문(2004) ; A. M. Riggsby, *Crime & Community in Ciceronian Rome* (Univ. of Texas Press, 1999), pp.120-121. 칼푸르니우스 법과 유니우스 법은 그것이 반환법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나마 뱀보 서판의 단편에 ‘신성한 맹세’(23행: “*lege Calpurnia aut lege Iunia sacramento actum siet*”)를 보여주는 문장이 남아있어 두 법의 절차를 추정할 수 있다.

함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수탈행위가 입증되었다면 그에 대한 복합적인 청원을 조사하여 곧바로 손해액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절차가 정립될 필요성도 있었다. 속주로부터의 세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시에 속주 세입이 로마 정무관들의 수탈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이상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반환법 조항들의 개정은 예고된 것이었다.

유니우스 반환법 하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아퀼리우스(M'. Aquilius, 기원전 129년의 콘술)의 반환 재판은 피고인이 미트리다테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심리한 것으로, 무죄 판결되었다.¹⁹⁶⁾ 아퀼리우스는 속주 아시아에 조직을 정립한 인물이지만 그에 대한 반환 재판 기소는 속주에서 로마 총독의 수탈행위에 대한 소소한 경각심을 야기할 뿐이었다. 실제로 칼푸르니우스 법 제정 후 아퀼리우스의 재판까지, 이 재판을 포함해 총 5건의 반환법정 판례들 중 4건이 무죄선고로 종결되었다.¹⁹⁷⁾

기원전 123년의 아퀼리우스 반환법(*lex Acilia repetundarum*)에서는 도입부에서 반환법정의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1행) ... 라틴 이름의 동맹국이거나 외국인 동맹국 출신의 모든 사람은, 혹은 로마 인민의 재량권, 지배권, 통제권, 우호관계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가운데 자신의 것을 반환을 요구하는(*repetundae*) 모든 사람은, ...

196) 기원전 125년 혹은 124년 가운데 재판이 발생했다. Cicero, *Divinatio in Caecilium*, 69 ; *Pro Fonteio*, 38 ; Appianos, *Mithridatic Wars*, 57 ; *Bellum Civile*, 1.22.

197) 나머지 무죄 판결의 3건은 기원전 138/7년 Q. 폼페이우스(기원전 141년의 콘술)의 반환 재판(Cicero, *Pro Fonteio*, 23 ; Valerius Maximus, 8.5.1), 기원전 138년 L. 아우렐리우스 코타(기원전 144년의 콘술)의 반환 재판(피고인의 심판인 단 매수 의혹이 제기되었고 8번째 공판에서 무죄 판결됨. Cicero, *Divinatio in Caecilium*, 69 ; *Pro Fonteio*, 38 ; *Pro Murena*, 58; *Brutus*, 81 ; Appianos, *Bellum Civile*, 1.22), 기원전 138년 혹은 123년의 리비우스 살리나토르의 반환 재판.

(2행) 만약 그가 독재관, 콘술, 프라이토르, 기병대장, 켄소르, 아이딜리스, 호민관, 콰이스토르, 사형집행 3인위원, 농지분배 3인위원, 첫 4개 레기온의 천부장, 그리고 앞서 말한 이들의 아들이거나 그의 아버지가 원로원 의원인 사람을 기소한다면, 어떤 한 해 동안 총합 ...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돈에 대하여, ...

(3행) [그 돈이] 강탈되거나(ablatum) 압취되거나(captum) 강압되거나(coactum) 유용되거나(conciliatum) 착복된(aversum) 재산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이나, 그의 아버지, 그의 아들, 또는 그 자신이나 아버지, 아들이 상속자인 사람에 의해 그렇게 된 재산이라면, 그 사람은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프라이토르에게 조사가 귀속되며 심리, 판결, 손해액 산정은 본법에 의해 임명된 심판인단(iudices)에게 귀속된다. (강조는 필자)

위와 같이 아킬리우스 법에서는 속주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행)¹⁹⁸⁾ 속주 총독을 포함한 로마 관원들이(2행) 재산을 특정 한도 이상으로 강탈·압취·강압·유용·착복했다면 그 피해당사자가 자신의 재산 반환을 위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3행) 규정했다. 이는 반환법정의 성립 요건이자, 반환 재판을 통해 속주 총독의 수탈행위를 처벌 및 규제하는 것을 반환법정의 본질적 취지로 천명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이어지는 문장들을 통해 아킬리우스 법에서는 반환의무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강화했다. 손해액의 2배 반환을 명시함으로써¹⁹⁹⁾ 총독과 속주민 간의 재산권 분쟁이 아니라 총독의 속

198) 키케로 역시 ‘반환법이란 동맹 시민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 분명히 주장하며, 반환법은 ‘돈을 수탈당한 시민들에게 대부분 민사소송이나 사적인 재판으로 반환 받도록 하는’ 해결책임을 주장한다(*Divinatio in Caecilium*, 17-18: “De quo quid ego plura commemorem? quasi vero dubidum sit quin tota lex de pecuniis repetundis sociorum causa constituta sit ; nam civibus cum sunt ereptae pecuniae, civili fere actione et privato iure repetuntur.”).

199) 아킬리우스 법, 59행: “[ab]latum avorsum conciliatumve esse, ea(s> res omnis simpli, ceteras res omnis qu{o}(a>s post hance legem rogatam

주 수탈행위에 대한 심리와 처벌을 반환법정의 목적으로 대체했으며, ‘신성도금 소송을 성명 고발(nominis delatio)의 절차로 대체’²⁰⁰⁾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환 판결의 집행이 원고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사실들이 속주 수탈 죄의 체계적인 처벌과 규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반환의무 혐의의 기소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면서 이를 심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정립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²⁰¹⁾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제거하고 재판 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점은 아킬리우스 법의 제1~3행에서 천명한 반환법정의 원칙과의 연장선상에서 총독의 수탈행위 처벌 및 속주민 재산의 보호를 반환법정의 목적으로서 확실히 만들었다.

동시에 아킬리우스 법은 당시 유일한 상설법정이었던 반환법정의 심판인단의 자격 요건을 바꿨다. 칼푸르니우스 법에서는 심판인단의 자격을 원로원 의원으로 제한했던 반면, 아킬리우스 법에서는 이를 기사신분으로 교체한 것이다.²⁰²⁾ 이러한 교체의 명분은 반환 재판의 피고인인

co[n]perietu]r captum coactum ablatum avorsum conciliatumve esse dupli,
….” Lintott, 앞의 책(1992), p.102.

200) Atkinson, 앞의 논문(2014), p.91. 성명 고발은 로마 시민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고, 이 법정을 통해 소송에서 성공한 비 시민에게 시민권을 수여한다는 법의 조항을 포함했다.

201) C. 그라쿠스 이후 자리 잡기 시작한 공정한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 린토티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오(Lintott, 앞의 책(1992), p.16ff. ; Lintott, 앞의 논문(1981), p.178ff.).

202) 기사신분은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배 집단이면서도 로마 국가에서 광범하게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복합적인 이들을 칭한다(Plinius, *Naturalis Historia*, 33.8). 리비우스에 따르면 기원전 122년에 600인(이것이 오기일 경우 300인)의 기사신분을 원로원에 영구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이 시도된 것으로 나타난다(Livius, *Periochae*, 60). 플루타르코스는 300인의 기사신분을 기존 300인 정원의 원로원에 추가하여 혼합된 심판인단을 만드는 방식을 기록했다(Plutarchos, *C. Gracchus*, 5.2). 이 안은 추진되었으나 실패하였다.

한편 아킬리우스 법 이후 여러 차례 심판인단 법(*leges iudicariae*)의 개정 이 이어졌다. 기원전 106년 콘술 세르빌리우스(Q. Servilius Caepio)의 심판인단

로마 총독이 원로원 의원의 일원이기에 심판인단과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였다. 아킬리우스 법 제정 시점에 기사신분과 원로원 신분은 명확히 구별되는 신분 집단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명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분 뒤의 실질적 요인을 보자면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개혁 자금과 지지세력 확보라는 목적이 있었다. 원로원 귀족들로부터 전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던 호민관 그라쿠스는 새로운 경로의 자금과 세력을 개척해야 했다. 이에 마침 로마에 기부된 속주 아시아, 그리고 속주에서 활동하는 도급업자들로 대표되는 기사신분을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개혁은 최종적으로 실패했지만 정치적 개혁을 위해 그가 시도했던 조치들은 이후 로마 역사에서 심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도급업자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준 속주 아시아 과세 체계와 반환법정 심판인단 자격을 기사신분에게 부여한 것은 로마의 전반적 속주 과세 체계와 도급업체의 성

법은 반환법정의 심판인단을 원로원 의원과 기사신분이 공유하도록 했던 법이거나 원로원에게 넘어갔다는 법이다(Cicero, *De Oratore Ad Quintum Fratrem*, 2.199f., 223 ; *Brutus*, 161-164 ; *Pro Cluentio*, 140). 이로 인해 형사재판 법정에서 기사신분의 독점을 제거하고 원로원 의원들을 심판인으로 다시 도입했지만, 바로 이듬해 심판인단의 구성을 원로원 및 기사신분 모두에서 차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얼마 안 되어 글라우키아의 심판인단 법에서는 반환법정 심판인단 전부를 기사신분으로 복구했거나 이를 시도했다. 이 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법정은 반역법정의 유형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다른 상설법정들에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원전 92년 호민관 드루수스(M. Livius Drusus)는 원로원에 기사신분을 충원한 후 상설법정의 심판인 자격에서 기사신분을 배제하는 입법을 시도했다.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전 91년 혹은 89년의 호민관 플라우티우스(M. Plautius Silvanus)의 심판인단 법에서는 혼합 심판인단 제도를 규정했고, 각각의 트리부스로부터 잠재적 심판인을 15명씩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영수, 「Lex Aqilia Repetundarum」 『법사학연구』 19(한국법사학회, 1999), p.22). 기원전 70년 콘술 아우렐리우스 코타의 심판인단 법에서는 모든 상설법정의 심판인단은 원로원 신분, 기사신분, 트리부니 아이라리의 세 집단(decuria)에서 차출했다. 기원전 59년 카이사르의 율리우스 심판인단 법에서는 이러한 세 번째 집단을 제거했지만 아우구스투스는 다시금 변화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심판인단 자격 규정의 변화 역시 아킬리우스 법의 심판인단 규정 변화 및 이후의 반환법 조항들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법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서라기보다 정치적 경쟁의 결과였으리라 판단되는데,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장, 그리고 기사신분의 정치적 성장을 가져왔다.

기원전 104년 혹은 101년 호민관 글라우키아(C. Servilius Glaucia)의 반환법에서는 1차 공판 이후 의무 휴정(*comperendinatio*)²⁰³⁾ 절차와 기소인이 속주에서 현지 조사(*inquisitio*)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의무 휴정 절차로 인해 심리 과정을 2회로 분리함으로써 기소인은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했고, 피고인 역시 변론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 현지 조사 절차를 통해 기소인은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검토하고 수집할 수 있었다. 이 절차가 도입되기 전에는 재판 청구인이 스스로 이러한 작업을 행해야 했다. 이 조항의 개정 이후 국가가 나서서 기소인의 증거 수합을 지원하기 위해 그에게 속주 현지에서 혐의와 관련 있는 서류들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했다.²⁰⁴⁾ 이로써 반환법정은 원고의 능력에 좌우되었던 민사소송적 재판의 성격에서 벗어나 형사법정의 성격을 갖춰갔다.

글라우키아 반환법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기원전 106년의 콘술 카이 피오(Q. Servilius Caepio)의 반환법에서는 기소인 선발 예심(*divinatio*) 절차를 도입했다.²⁰⁵⁾ 키케로에 의하면 이 절차는 ‘심판인들의 권한으로 피고인과 그토록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를 기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승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²⁰⁶⁾ 도입되었다. 바로 앞 문장에서

203) Cicero, *In Verrem*, 2.1.26. 린토티는 뱀보 법에서 심판인단 1/3 이상이 ‘사안 불명확’(non liquet)을 말했다 때 재심리(rehearings)가 진행되지만 이는 의무 휴정 절차와 다르다고 했다(Lintott, 앞의 논문(1981), pp.180–181). 국내에서는 ‘재증거 절차’라 번역된 바 있다(키케로/김남우 외 옮김, 『설득의 정치』(서울, 민음사, 2015), p.108).

204) Cicero, *In Verrem*, 2.1.60, 2.2.182, 2.4.36, 2.4.149. 아킬리우스 법, 30–35 행에 따르면 법정 주재 프라이토르가 재판 청구인의 증거 수합을 지원할 것과, 최대 48인의 증인들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브룬트는 프라이토르의 이러한 권한이 이탈리아 외부에서 효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Brunt, 앞의 책(1988), p.528).

205) Cicero, *Divinatio in Caeciliam*, 62f. 린토티는 글라우키아 반환법이 101년에 제정되었다면 기소인 선발 예심 절차는 카이피오의 반환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했다(Lintott, 앞의 논문(1981), p.183).

206) Cicero, *Divinatio in Caeciliam*, 63: “... sed ne libido violandae

키케로는 기원전 100년경 세 건의 반환 재판 예심에서 각 피고인들과 기각된 기소인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즉 이미 피고인이 자신의 기소인마저 매수하려는 잠탈(潛脫)²⁰⁷⁾의 관행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기소인 자격을 얻고자 경쟁할 만큼 그것에 어떤 이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브룬트(P. A. Brunt)는 카이피오의 법이나 글라우키아 법에서 기소인 선발 예심 절차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라쿠스의 반환법 하에서는 외국인을 대신해 법적 행위를 하는 로마 시민을 배제했다고 봤다.²⁰⁸⁾ 또한 매팅리(H. B. Mattingly)는 기원전 70년에 운영된 것보다 덜 정교한 형태의 기소인 선발 예심 절차가 글라우키아 법에서 도입되었다고 했다.²⁰⁹⁾ 그렇다면 최소한 기원전 70년까지 사법적 부패 관행이 점차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반환법 조항도 개정되었던 경향을 추론할 수 있다.

기소인 선발 예심의 도입과 동시에 법정 심판인단 자격에서 기사신분을 배척한 것으로 알려진 카이피오는²¹⁰⁾ 이후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폴리비오스에 의하면 그가 톨로사의 총독으로서 해당 속주의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강탈했다는 소문이 심리의 주된 고려 대상이었을 것이다.²¹¹⁾ 하지만 카이피오의 수탈 혐의에 대한 재판 청구자는 속주민이

necessitudinis auctoritate iudicum comprobaretur.” 3가지 예심 사례란 T. 알부키우스의 소송에서 Cn. 폼페이우스, C. 세르빌리우스의 소송에서 L. 필로, L. 발레리우스 플라쿠스의 소송에서 M. 아우렐리우스 스키투스가 기소인이 되지 못한 사건들을 말한다.

207) 잠탈이란 법률 용어로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부패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본 논문에서 반환법정에서의 잠탈 행위는 대표적으로 거짓 기소인 조작, 심판인단 매수 등을 말한다. 잠탈을 방지하기 위한 반환법 조항에 대해 4장 1절, 베레스의 잠탈 시도에 대해 4장 2절에서 상세하게 논했다.

208) Brunt, 앞의 책(1988), pp.527-528.

209) E. B. Mattingly, “The Character of ‘Lex Acilia Glabronis’”, *Hermes*, 107(1979), p.487.

210) Cicero, *De Oratore Ad Quintum Fratrem*, 1.225, 2.199 ; *Pro Cluentio*, 140.

211) Polybios, 1.5.6 ; 2.20.6 ; Cicero, *De Natura Deorum*, 3.64. 프랑스 남부의 속주 갈리아 트란살피나의 톨로사는 과거 그리스와의 전쟁 전리품으로 막대한 양의 황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카이피오가 총독으로 부임하여

아니라 한 로마 원로원 의원으로, 반환법정이 아닌 다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²¹²⁾ 카이피오는 기원전 104년이 가기 전에 기소되어 관할속주 내의 지역인 톨로사의 황금을 강탈한 혐의를 심리하는 법정에 기소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듬해에는 호민관 사투르니누스(L. Appuleius Saturninus)의 아풀레이우스 반역법(lex Appuleia de maiestate)에 의해 카이피오가 반역법정의 피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²¹³⁾ 리비우스에 따르면 총독이었던 그가 기소되어 임페리움을 박탈당하고 재산이 몰수되는 처벌을 받았던 이유는 공식적으로 군 지휘관의 경솔함이 초래한 아라우시오 전투에서의 대패 때문이었다.²¹⁴⁾ 하지만 이토록 심대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공화정 시기 처음이었다고 밝힘으로써 패전 자체가 유일한 이유가 아니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카이피오는 반역법정이 열리기 전에 스스로 망명했는데 이런 피고인의 자발적 추방이라는 관행은 당시 법정들에서 빈번히 자행되었다.

아킬리우스 법에서 살펴봤듯이 카이피오가 행한 심판인단 구성의 변화는 법안 발의자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카이피오에 대한 집요한 기소와 그의 자발적 추방은 당시 법정을 둘러싼 정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심 절차의 도입 배경과의 연장선상에서, 정쟁에서의 승리, 곧 재판 승소를 위해 피고인들은 유죄선고를 피하고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잠탈을 일삼고 있었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정치인들은 반환법 조항을 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속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해 이 황금을 찾아냈고, 자의적으로 로마로 운반하던 중 마실리아 근처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다.

212) Cicero, *De Natura Deorum*, 3.74 ; *De Oratore Ad Quintum Fratrem*, 2.197. Cf. Lintott, 앞의 논문(1981), p.201.

213) 반면 알렉산더는 횡령죄를 심리하는 특별 법정(quaestio extraordinaria)으로 보았다(Alexander, 앞의 책(1993), p.33, #65).

214) Livius, *Periochae*, 67: “[기원전 106년] … 아라우시오(Arausio)에서 콘술 Cn. 만리우스와 총독 Q. 세르빌리우스 카이피오는 이 동일한 적들(sc. 킴브리족)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야영지 두 개를 잃었다. 발레리우스 안티아스에 따르면 8만 명의 병사가 전사했고 고용인과 민간 종군인들 4만 명이 죽었다. 카이피오는 경솔함 때문에 전투에 패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이로 인해 재산이 몰수되고 그의 임페리움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타르퀴니우스 왕 이래로 최초의 일이었다.”

기원전 82~81년 독재관 술라가 상설법정들을 정비하면서 코르넬리우스 반환법(lex Cornelia de repetundis)을 제정한 이후, 기원전 70년에 베레스는 그 법 하에 기소되었다. 베레스 논고문에서 나타나는 반환재판 절차를 봄으로써 이 반환법이 등장하기까지 반환법의 변천을 추론해볼 수 있다.

[표 4] 기원전 70년 반환법정 재판 절차

순서	명칭 및 내용	도입 연도	베레스 재판에서의 적용	비고
1	공청회 및 손해액 산정 정식 반환법정 기소가 있기 전, 총독의 속주 수탈 혐의를 물은 후 유죄 추정을 전제로 손해액 산정까지 한 번에 끝마치는 절차.	기원전 149년, 칼푸르니우스 법	해당 없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절차까지는 반환법정의 절차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변호를 희망하면 해당 소송이 반환법정 재판으로 옮겨 갔다.
2	성명 고발 고발인, 즉 피해를 입은 속주민이 자신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절차. 이 절차 직후 원고는 자신을 대변할 기소인을 선택할 수 있었다.	기원전 123년, 아킬리우스 법	시칠리아 대표들이 성명 고발한 후 자신들의 보호인인 키케로를 기소인으로 선택했다.	칼푸르니우스 법에서는 민사소송의 성격을 띤 신성도금이 이 절차를 대신하고 있었다.
3	기소 해당 연도의 반환법정 주재 정무관에게 기소하는 절차.	기원전 123년, 아킬리우스 법	키케로는 기원전 70년 1월에 프라이토르 글라브리오에게 기소했다.	
4	기소인 선발 예심 동일 사건에 대해 기소인들이 여럿일 경우 기소인을 결정하는 예비 절차를 거친다.	기원전 104/101년, 클라우키아 법	베레스는 카이킬리우스를 자신의 재판의 거짓 기소인으로 조작했다.	기소인과 피고인 간의 공모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절차였다.

5	<p>심판인 기피 해당 연도의 총 450명의 심판인단 명단으로부터 해당 재판의 심판인단을 결정하는 절차. ① 기소인의 100명 선택 → ② 피고인의 50명 선택 → ③ 피고인과 관련 있을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을 배제</p>	기원전 123년, 아킬리우스 법	베레스가 매수한 심판인들은 모두 기피되었다고 키케로는 전한다.
6	<p>현지 조사 피고인이 떠난 속주에서 기소인이 직접 변론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법정 주재 프라이토르는 기소인의 수사를 위해 적절한 기간을 부여했다.</p>	기원전 104/101년, 글라우키아 법	키케로에게는 속주 시칠리아를 수사할 수 있는 50일이 주어졌다. 키케로에 의하면 베레스의 거짓 기소인 역시 현지 조사의 기간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지에 가지 않았다고 전한다.
7	<p>1차 법정 공판 법정 주재 프라이토르 앞에서 기소인과 상대측 변호인(단)이 참석하여 기소, 변론하고 피고인의 혐의를 심리하는 절차.</p>		기원전 70년 8월 5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지속되었다. 키케로의 1차 기소 연설문의 내용이다.
8	<p>의무 휴정 1차 공판 이후 의무적으로 휴정함으로써 반환 재판을 1차와 2차 법정 공판으로 구분한 기간.</p>	기원전 104/101년, 글라우키아 법	키케로는 총 40일의 의무 휴정 기간 이후 세심히 준비한 2차 변론을 계획했지만, 이때 베레스가 자발적 추방을 선택했다.

9	2차 법정 공판 법정 주재 프라이토르 앞에서 기소인과 상대측 변호인(단)이 참석하여 기소, 변론하고 피고인의 혐의를 심리하는 절차. 기소인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있은 후, 심판인단은 투표로써 유무죄 판결을 내렸다.	기원전 104/101년, 글라우키아 법	피고인의 부재로 실행되지 못했다.	심판인단의 2/3 이상 이 사안 불명확을 선언할 경우 재심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을 물렸다.
10	손해액 산정 유죄 판결인 경우, 심판인단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절차.	기원전 123년, 아킬리우스 법	베레스는 부재 중에 유죄선고를 받았고 3백만 세스테르티우스가 손해액으로 산정되었다.	칼푸르니우스 반환법에서는 산정된 손해액만큼 반환할 것을 규정했지만 아킬리우스 반환법 이후 손해액의 2배로 반환해야 했다.
11	승소한 기소인에게 보상은 절차. 로마 시민권이나 각종 공적 의무에서의 면제권 등을 보상으로 수여했다.	기원전 123년, 아킬리우스 법	알 수 없다.	

먼저 외국인 사절의 접견 기간에 시칠리아 속주민들이 로마에 가서 해당 연도의 법정 주재 프라이토르 앞에 혐의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되는 베레스가 혐의에 대해 자백하거나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반환법정의 정식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그의 유죄를 전제로 손해액 산정(litis aestimatio)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베레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호하고자 했으므로 반환법정 소송이 시작되었다. 속주민은 성명 고발을 했으며 고발인의 기소를 대신해 줄 로마인으로서 속주민들이 선택한 키케로가 기원전 70년 1월, 법정 주재 프라이토르 글라브리오(M'. Acilius Glabrio, 기원전 67년의 콘술)에게 기소했다(postulatio).²¹⁵⁾ 1차 공판이 열린 8월 5일 이전까지

215) 반면 린토티는 기소인의 기소(postulatio)가 속주민의 성명 고발(nominis delatio)을 통한 기소보다 먼저라고 한바 있다(Lintott, 앞의 논문(1981), p.179).

기소인 결정 예심,²¹⁶⁾ 심판인단 기피(iudices reicere),²¹⁷⁾ 현지 조사의 절차들이 차례대로 진행되었다. 8월 5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1차 법정 공판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의무 휴정 기간에 베레스가 자발적 추방을 택함으로써 2차 공판은 열리지 못했다.

기원전 81년 술라의 법정개혁을 통한 상설법정 체계가 확립되었을 때 반환법정 역시 그 상설법정들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설법정들은 정치적 파벌 싸움의 주요 도구로 기능했다. 어떤 정치인이 법정 기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 피고인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권력 다툼의 희생자로 선택되었다는 의미였고,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결은 정치 파벌 간의 승패의 결과였다. 기소의 위협만으로도 정적이거나 상대 파벌에 대한 경고로서의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단지 기소 시도로만 그친 경우도 많았다.²¹⁸⁾ 또한 재판에서의 승소라는 경력은 기소인 개인의 정치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상설법정들의 심리 혐의들이 제한적인 점 역시 넓게 보면 모두 정치

216) 기소인 선발 예심 연설문(*Divinatio in Caeciliam*)은 이 절차에서, 베레스가 조작한 위증자 카이킬리우스가 아니라 키케로 자신이 이 소송의 기소인으로 선택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217) E. B. Spencer, "Verres on Trial for Extortion",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6)(1917), p.839: "심판인단의 인원수는 고정되었으나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몇몇 기록들에서 키케로는 12명을 언급한다. 그 인원수 이상이었을 가능성은 적는데, 이는 프라이토르와 7명의 심판인단을 언급한 후에 키케로가 그들을 '거의 전체 좌석'이라고 칭했기 때문이다."

218) 이는 술라에 대한 반환 재판 기소 시도(Plutarchos, *Sulla*, 5)에서 시작하여 기원전 1세기에 만연했다. 기원전 79년 레피두스(기원전 78년의 콘술)에 대한 기소(Cicero, *In Verrem*, 2.2.8, 2.3.212), L. 마닐리우스(기원전 66년의 호민관)에 대한 반환법정의 부 재판 기소 시도(Asconius, 60C ; Plutarchos, *Cicero*, 9.4-6), 기원전 66년 루쿨루스(기원전 74년의 콘술)에 대한 기소(Plutarchos, *Lucullus*, 37.1-3), 기원전 57년 키케로(Q. Tullius Cicero, 기원전 62년의 프라이토르)에 대한 기소(Cicero, *Pro Sestio*, 68 ; *Epistulae Ad Atticum*, 2.4.2, 2.18.3, 3.8.2-4, 3.9.1, 3.13.2, 3.17.1 ; *Epistulae Ad Quintum Fratrem*, 1.3.5, 1.4.2, 1.4.4-5), M. 세르빌리우스(기원전 51년의 호민관)에 대한 반환법정의 부재판 기소 시도(Cicero, *Epistulae Ad Familiares*, 8.8.2-3 ; *Epistulae Ad Atticum*, 6.3.10) 등이다. 무죄 판결된 무수한 판례들도 경고로서의 효과를 노린 것일 가능성이 있다.

적 과벌의 투쟁이라는 혼란에서 기인했다. 즉 상설법정들의 심리 혐의들은 정치세력 간의 경쟁에 따른 부패행위의 내용이기도 하며 경쟁 과정에서 활용된 수단이기도 했다. 예컨대 살인죄(veneficiis et sicariis)의 경우 그 법정이 공화정 후기에서야 상설법정들 중 하나로 정립된 원인은 정치 과벌의 투쟁 과정에서 상대편 경쟁자를 살해하는 행위가 빈번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자, 동시에 그만큼 그 규제라는 명분이 상대편 과벌의 영향력 약화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기에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앞서 봤듯이 시칠리아에서 베레스의 불법적 폭력의 대상이었던 기사신분 Q. 롤리우스의 아들은 알려진 변호인으로, 키케로는 베레스가 자신의 불리한 재판의 진행을 피하기 위해 그를 암살했다고 암시했다. 횡령죄나 부정선거죄(ambitus) 등을 다루는 상설법정들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기원전 66년 속주 총독 리키니우스(C. Licinius Macer, 기원전 68년의 프라이토르)는 키케로에 의해 반환의무 및 심판인단 뇌물매수 혐의로 코르넬리우스 법 하의 반환법정에 기소되었다.²¹⁹⁾ 그는 유죄선고를 받은 이후에 자살함으로써 자신의 상속자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미 아킬리우스 법에서는 피고인이 자살했거나 망명 중이더라도 심리와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을 명시했다.²²⁰⁾ 원칙상 피고인이 자살했다면 그의 법적 상속자로부터 손해액이 상환되어야 했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무시되었다. 이는 반환법정이 속주의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결을 목적으로 했음을 암시한다. 유죄선고의 경우 피고인은 관행적으로 자발적 추방을 택하곤 했고, 이는 그 자체로 재판 종결의 의미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149년부터 50년까지 베레스 재판을 비롯해 피고인의 자살(2건) 혹은 자발적 추방이 있었던 반환 재판 사례는 총 27건이 발견된

219) Valerius Maximus, 9.12.7.

220) 아킬리우스 법, 29행. 이 조항은 기원전 140년 유니우스 실라누스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 이후 피고인의 자살로 인해 생겨났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유죄선고로 재판이 완료되었던 관례는 총 20건이었다. 이에 피고인의 자발적 추방이나 자살 행위는 면벌부처럼 작동하곤 해서 손해액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최소한 전액 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많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키케로는 기원전 70년대 사법적 뇌물수수가 의심되었던 여러 관례들을 확인시켜 준다.²²¹⁾ 이 가운데 호르텐시우스가 법정을 주재했던 반환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스카이볼라에게는 예전에 심판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했었기에 손해액이 산정되었다고 키케로는 증언했다.²²²⁾ 이는 심판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법적으로 심리, 판결되었으며 당시 그러한 부패행위를 적발하는 재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전에 행해졌던 유죄 판결이 그와 관련 없는 반환 재판에서의 처벌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확정하려 했던 정치적 맥락과 관련 있을 것이다. 한편 오피아니쿠스의 재판 결과 심판인의 부패 관행에 대한 조사를 결정한 것은 원로원이었다.²²³⁾ 피고인 측 변호인인 퀸크티우스(L. Quinctius, 기원전 74년의 호민관)가 자신의 법안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원로원의 부패를 공격하자 원로원에서 대응 공격을 한 셈이다.

키케로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거론함으로써 베레스와 1/10세 징수자의 공모 혐의를 심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절차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²²⁴⁾ 기원전 59년의 율리우스 반환법

221) Cicero, *In Verrem*, 1.38(기원전 77년 Q. 칼리디우스의 재판, 기원전 72/1년 P. 셉티미우스의 재판, C. 헤렌니우스의 재판, C. 포필리우스의 재판), 1.40 ; *Pro Cluentio*, 62–116(기원전 74년 오피아니쿠스의 재판)과 130 ; *Epistulae Ad Atticum*, 1.1.2(기원전 74년의 테렌티우스 바로의 재판. 피고인 측 변호인 호르텐시우스에 의해 투표 서판들에 표시가 되어서, 뇌물을 수수한 사람들이 그의 의뢰인의 무죄선고에 투표를 했는지 그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22) Cicero, *In Verrem*, 1.38: “... quid sit quod, P. Septimio senatore damnato Q. Hortensio praetore de pecuniis repetundis, lis aestimata sit eo nomine quod ille ob rem iudicandam pecuniam accepisset.”

223) Cicero, *Pro Cluentio*, 77, 110, 136–137. 오피아니쿠스 재판과 관련한 퀸크티우스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Gruen, 앞의 책(1995), pp.33–35.

224) Cicero, *In Verrem*, 2.1.150: “Nunc ne argumentemur quo ista pecunia

(lex Iulia de repetundis) 하에 기소되어 행해졌던 기원전 54년의 반환 재판은 속주 시리아의 총독 가비니우스(A. Gabinius, 기원전 58년의 콘술)의 반환의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로 끝났지만 피고인이 손해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공범인 라비리우스가 불법자금을 공유 받았다는 혐의로 부수적 재판에 기소되었다.²²⁵⁾ 하지만 메리 서니-데이비스(Mary Siani-Davies)가 라비리우스에 대한 이 부 재판의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근거들을 보여준 바 있듯이,²²⁶⁾ 총독의 수탈행위에 거의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공유 혐의를 처벌하기 힘들었고 따라서 이 규정은 재판 과정에서 반환법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했다. 사료의 부족함 때문에 이 규정을 따랐던 경우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라비리우스의 판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부 재판의 사례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 속주의 재산을 환수 및 반환하는 것만이 이 규정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부수적 재판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그로 인해 반환

pervenerit, facit ipse indicium.”

225) Cicero, *Pro Rabirio Postostumo*, 8, 12, 37, 38.

226) Mary Siani-Davies, *Cicero's Speech: Pro Rabirio Postumo* (Oxford, 2001), pp.90-91.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환의무 손해액을 지불할 충분한 자금이 피고인에게 없을 경우에만 자금을 공유한 이가 재판에 소환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불법 수탈한 금액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제2의 인물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손해액은 여러 이유로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을 뿐더러 역시 피고인의 망명으로 인해 봐주는 결과가 많았기에 이러한 부수적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둘째, 부 재판의 피고인인 불법자금을 전달받은 이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충분히 필요했다. 즉 주 재판에서의 증거들은 승인되지 않았으며 증거들에서 보여주는 사안이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해야만 가능했다. 이는 거의 비현실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부 재판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대신 주 재판의 증언이 낭독되곤 했으며 증인들이 원한다면 그 증언을 수정할 수도 있었다. 셋째, 라비리우스의 변호인이었던 키케로의 변론의 주요 논지로서, 주 재판에서 불법자금 공유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지명되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사실상 이 재판은 율리우스법의 불법자금 공유 적발의 조항에 따라 진행된 현존하는 유일한 두 사례 중 하나였음에도, 키케로는 라비리우스에 대한 기소가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전례 없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저자는 이 조항의 명칭을 'What has become of the money'라고 영역했다.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과 유착된 집단에 대한 공격의 수단이 되었다. 피고인이 사법적 판결을 매수하려 했다거나 피고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을 공유했다는 부패 혐의가 제기되곤 했던 상황은 정치 파벌 경쟁의 심화를 보여준다.

반환법은 기원전 4년 아우구스투스의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5 번째 키레네 칙령 내의 칼비시우스 원로원 의결로서 발전이 완료된다.²²⁷⁾ 그 내용은 1배 반환, 신속한 절차 등 최초의 반환법인 칼푸르니우스 법의 조항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롭게 등장한 원수정이라는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하에 속주 총독의 독직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수단이 마련되어 더 이상 반환법 및 반환법정의 필요성이 사라져 갔음을 알 수 있다. 비로소 로마의 속주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2. 베레스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반환법의 한계

다음으로는 위와 같은 반환법의 성격 변화라는 맥락 내에서 진행되었던 대표적인 반환 재판 사례인 기원전 70년의 베레스 재판 과정에서 반환법의 한계가 나타난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 아래는 키케로의 논문 중에서 피고인 베레스가 사법적 판결을 매수하는 부패행위를 실제로 자행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제 곡물의 명목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수탈되었는지 인식 하십시오. 그리하여 동시에 또한, 그의 부도덕한 목소리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1/10세로 얻은 이윤 하나로 자신이 법정에서 겪게 될 모든 위험들을 돈을 내고 모면하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²²⁸⁾

227) 김덕수, 앞의 논문(1996)을 참고하십시오.

228) Cicero, *In Verrem*, 2.3.49: "Cognoscite nunc innumerabilem pecuniam frumentario nomine ereptam, ut simul illam quoque eius vocem improbam agnoscatis qui se uno quaestu decumarum omnia sua pericula redempturum

위 구절은 베레스의 시칠리아 수탈 혐의에 대한 반환법정 기소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며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아이밀리우스 알바는 베레스가 심판인단을 매수한 일을 시장 입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그의 승소를 확신했다.²²⁹⁾ 키케로에 따르면 그는 속주 시칠리아 통치 전에도 이미 관직 수행 과정에서 불법적 수탈행위를 자행한 적이 있었다.²³⁰⁾ 베레스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로마 총독들은 속주에서 수탈을 자행했다면 특히 이처럼 막대한 이윤을 만들어야 했다. 위 구절처럼 반환 재판에서 유죄선고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과 관련한 인력을 매수할 만큼 충분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²³¹⁾

먼저 앞서 봤듯이 베레스는 자신과 공모한 보좌 관원이자 원로원의원인 카이킬리우스를 가짜 기소인으로 급조했다. 정확히 이와 같은 기소인과 피고인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글라우키아 반환법에서 규정했던 기소인 결정 예심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고, 키케로는 이 매수된 거짓 기소인과의 경쟁에서 이겼기에 베레스 재판의 기소인이 될 수 있었다.

그 후 심판인 기피 절차가 이어졌다. 베레스는 심판인단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했으나 키케로가 기소한 시점에는 ‘속주에서 갓 돌아와 심판인단을 매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거짓 기소인부터 급조한 후에 ‘임지에서 귀환하자마자 엄청난 돈으로 판결을 매수’했다.²³²⁾ 심판인 기피 절차에서 베레스에게 매수된 심판인들은 모두 배제되어 키케로는 ‘그 계약은 완전히 파기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많은 수의 심판인들을 매수하려다 보니, 그 가운데에는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나 키케로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키케로가 뇌물수수

esse dicebat.” 그리고 *In Verrem*, 2.3.130도 참고하십시오.

229) Cicero, *In Verrem*, 2.3.145-146.

230) Cicero, *In Verrem*, 1.2, 1.11.

231) Cicero, *In Verrem*, 1.1: “요즘 재판에서는 돈만 있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소문, ...”

232) Cicero, *In Verrem*, 1.5, 1.16.

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피고인의 판결 매수 전략이 실패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²³³⁾

세 번째 절차는 1차 공판 직전 현지 조사였다. 이는 피고인이 떠난 후 속주 현지에서 기소인이 직접 증인, 문서 등을 수집하는 절차로 법정 주재 프라이토르는 기소인의 수사를 위해 적절한 기간을 부여했다. 키케로는 이때 50일 간의 현지 조사 기간을 획득하여 직접 속주 시칠리아에서 세심하게 증거를 모았다.²³⁴⁾ 이때 베레스 측은 시칠리아 속주민 대표들을 매수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으므로 키케로의 현지 조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²³⁵⁾

베레스가 임기 중 가혹한 수탈로 속주민의 원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면 반환의무 혐의의 증거들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인멸했을 것이다. 기소가 진행된 기원전 70년에 속주 시칠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은 L. 메텔루스였다. 그는 베레스가 지난 3년간 축적한 불법자금을 공유 받은 메텔루스 파벌의 일원이면서 베레스의 처남이었다.

베레스는 자신의 저 만병통치제, 즉 뇌물로써 메텔루스의 모든 수행원들을 자신의 친구로 돌려놓았었는데, 루키우스 메텔루스가 총독으로서 부임하자, 그것은 메텔루스에게도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아프로니우스가 기소되었습니다. [그를] 기소했던 이는 일급 인사이자 원로원 의원인 C. 갈루스였습니다. 그는 메텔루스에게 아프로니우스에 대한 판결을 그의(sc. 베레스) 고시에 따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폭력과 공포로써 수탈했다”는 것으로, … 그는(sc. 갈루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메텔루스가 이 판결을 통해 베레스의 중범죄 혐의에 대한 사전 판결이 내려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메텔루스의 수행원단 전체는, 배은망덕하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로서 아프로니우스 편에 섰습니다.²³⁶⁾

233) Cicero, *In Verrem*, 1.23.

234) Cicero, *In Verrem*, 1.6: “... 나는 50일 동안 시칠리아를 모두 뒤지고 다니며 인민과 개인이 당한 불법행위와 증거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Pro Scauro*, 23-25.

235) Cicero, *In Verrem*, 1.25, 1.27.

236) Cicero, *In Verrem*, 2.3.152: “Adventu L. Metelli praetoris, cum omnes eius comites iste sibi suo illo panchresto medicamento amicos reddidisset,

마린(P. Marin)은 기원전 70년 L. 메텔루스가 속주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베레스의 위법적 정책을 대거 무효화하며 시칠리아 구제에 나섰다”으며 “메텔루스의 격려로 시칠리아 지도자들이 키케로를 찾아가 베레스에 대항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고 부탁했다”²³⁷⁾고 했다. 그러나 메텔루스는 베레스가 불법 선거자금을 동원하여 당선시킨 콘솔과 프라이토르의 가문 출신이자 베레스의 처남이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키케로가 현지 조사를 위해 시칠리아에 갔을 때, 베레스의 동료이자 친족인 메텔루스가 이미 베레스의 편지배달꾼(L. Laetilius)이 보낸 편지를 받은 후였고, 전임 베레스의 정책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후였다고 전한다.²³⁸⁾

메텔루스가 아프로니우스의 혐의 제기에 대해 베레스의 고시를 적용할 것을 거절했던 이유는 로마에서 베레스의 재판이 승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레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이 틀림없는 메텔루스는 시칠리아에 도착해서도 베레스가 매수했던 수행원들을 편하게 활용했다. 위 인용문에 의하면 한 원로원 의원에 의해 베레스의 공모자였던 1/10세 징수자 아프로니우스가 속주민 수탈의 혐의로 총독의 법정에서 기소되었지만 이때 총독 메텔루스는 정확히 베레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의 “현 반환법정 기소에 대한 사전 판결(praeiudicium)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들어 아프로니우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아프로니우스의 기소가 베레스의 반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베레스의 총독 임기 동안 총독과 1/10세 징수자의

aditum est ad Metellum ; eductus est Apronius. eduxit vir primarius C. Gallus senator ; postulavit ab L. Metello ut ex edicto suo iudicium daret in Apronium, “QUOD PER VIM AUT METUM ABSTULISSET,” … Non impetrat, cum hoc diceret Metellus, praeiudicium se de capite C. Verris per hoc iudicium nolle fieri. Tota Metelli cohors hominum non ingratorum aderat Apronio.”

237) P. Marin, *Blood in the Forum: the Struggle for the Roman Republic* (London, Continuum, 2009), pp.73–74. 이러한 주장은 Cicero, *In Verrem*, 2.3.44(‘nihil istius simile facturum’)에 근거했을 것이다.

238) Cicero, *In Verrem*, 2.2.64.

결탁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전 임기의 속주 수탈 자금이 뒤이은 임기의 수탈에 활용되었던 악순환 구조의 정립이 확인된다. 베레스의 정리아자도급업체 만켄스였던 티마르키데스가 아프로니우스에게 직접 썼던 편지가 그 증거이다.²³⁹⁾ “총독의 평판과 관련 있는 일에 전력을 다 하시오”²⁴⁰⁾라고 시작하는 이 편지를 키케로는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메텔루스는 로마에 있을 때 시칠리아 도시들에 편지를 썼다.²⁴¹⁾ 그 내용은 경작자들에게 경작하고 파종하라는 권고와, 자신이 1/10세 징수권을 히에론 법에 의거해 경매하리라는 약속이었다. 이로써 베레스와 동일하게 강탈하지 않을 것이며 파종량 이상의 곡물을 강탈하지 않겠노라 약속한 것이다. 베레스의 임기 동안 경작의 기반마저 파괴될 정도로 경작지가 유기되었다면 이러한 권고와 약속은 필연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메텔루스가 곡물 1/10세 정량 이상의 징수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이전의 원칙으로 회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속주민에 대한 보호라는 반환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총독 개인의 변덕과 양심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재판 절차 별 베레스가 매수해야 했던 재판 참석 인력이란 차례대로 기소인 선발 예심 절차에서 거짓 기소인, 심판인 기피 절차에서 심판인단, 현지 조사에서 시칠리아 속주민 대표들과 기원전 70년의 시칠리아 총독이었다.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베레스가 자신의 유죄선고를 피하기 위해 잠탈의 부패를 자행했음이 입증되었다. 이처럼 1차 법정 공판이 열리기까지 베레스의 막대한 수탈자금은 그에 대한 기소 시도 자체를 실패하게끔 만들 수도 있었다.

이렇게 시칠리아에서 확보된 막대한 강탈물은 위와 같이 재판에 참석하게 되는 인력을 매수하는 데 활용된 것에 더해, 반환법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두 가지 잠탈을 위한 계책들에도 충분하게 활

239) Cicero, *In Verrem*, 2.3.154–157.

240) Cicero, *In Verrem*, 2.3.154: “FAC DILIGENTIAM ADHIBEAS, QUOD AD PRAETORIS EXISTIMATIONEM ATTINET.”

241) Cicero, *In Verrem*, 2.3.44–46.

용되었다. 그 추가적인 계획들 중 첫 번째는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이었다.²⁴²⁾ 자신이 매수한 정치인들이 차년도의 여러 정무관직에 당선되도록 선거자금을 제공하여 그들이 차년도에 연기된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작전이었다. 더하여 해가 바뀌면 전체 법정 심판인단의 명단 역시 교체되므로 심판인 매수를 다시금 시도할 수도 있었다. 1차 공판이 있기 전에 차년도 정무관직 선거가 모두 완료되었는데, 베레스의 변호인이었던 호르텐시우스와 메텔루스 파벌의 유력자였던 Q. 메텔루스(기원전 74년의 프라이토르)가 차년도 콘술에 당선되었다. 또한 M. 메텔루스는 차년도 베레스 재판의 주재 정무관이 될 프라이토르에 당선되었다.²⁴³⁾ 키케로는 말하기를, 정의를 신념으로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들의 당선에 대한 “이런 축하 인사가 법정을 부패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²⁴⁴⁾

연말 로마의 축제 기간에는 모든 업무가 중단되며 재판도 중단된다. 키케로는 폼페이우스 제전 이전까지 10일간의 휴정에 더해, 제전 기간에는 법정 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총 40일의 의무 휴정 기간을 계획했다.²⁴⁵⁾ 그러니까 키케로는 2차 법정 공판을 두 번째로 예정된 제

242) 베레스는 한 알려지지 않은 인물(C. Scribonius Curio, 기원전 76년의 콘술?)의 반환의무 혐의에 대해, 허위 기소인인 Q.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네포스(기원전 57년의 콘술)로 하여금 기소하도록 만들었다. 이 기소는 베레스에 대한 기소에 앞서 진행되게 하여 그것을 연기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베레스 재판을 연기시키지 못하자 기소인은 기소를 철회했다(Cicero, *In Verrem*, 1.6, 1.9, 2.1.30).

243) Cicero, *In Verrem*, 1.18, 1.21, 1.27. 키케로에 의하면 기원전 70년 베레스 재판의 주재 프라이토르였던 글라브리오는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기원전 123년 실질적 반환법정을 확립한 아킬리우스 법의 입법자의 아들이었으며(*In Verrem*, 1.51), 반환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연기 신청 및 공판 연기와 관련한 권리를 제한한 바 있다.

244) Cicero, *In Verrem*, 1.19: “... hanc gratulationem ad iudicium corrupendum spectare videbant.”

245) Cicero, *In Verrem*, 1.31에 따르면 기원전 70년 8월 5일에 1차 법정 변론이 있었고 이후의 연례 제전 행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8월 15일~30일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의 제전, 9월 5일~19일 로마 제전, 10월 26일~11월 1일 승리의 여신 제전(술라의 전승 기념), 11월 4일~17일 평민 제전. 1.34와 1.54 역시 참고하시오.

전인 로마 제전이 시작되는 9월 5일 전으로, 혹은 세 번째 예정된 제전인 승리의 여신 제전이 시작되는 10월 26일 전으로 계획한 것이었다. 키케로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키케로의 “고발이 오랜 지연으로 인해 잊힐 때쯤 답변하려는 [베레스의] 계략”대로 되어 “고발은 힘을 잃고 맥이 빠질 테고, 이 사건은 차기 프라이토르 M. 메텔루스에게로 이관될 것”²⁴⁶⁾이었다. 이처럼 변호인 호르텐시우스는 재판을 지체시키면서 새해 전에 평결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자 했고, 기원전 69년 새해 새로 선출되는 정무관들과 심판인단에게 유리한 평결을 기대했다. M. 메텔루스라는 베레스의 협력자가 새해에 반환법정의 주재를 담당할 것이며 그러한 정치적 변동으로부터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점을 호르텐시우스와 베레스는 모두 알고 있었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듯이 L. 메텔루스는 베레스의 후임 시칠리아 총독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이미 ‘제일 어렵다고 하는 재판 기일을 돈으로 미루는 데도 성공’²⁴⁷⁾한 바 있다.

베레스의 추가적인 계책들 중 두 번째는 당시 차기 정무관직들의 선거 유세 기간이라는 점을 활용해 기소인 키케로를 분주하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그 해에 키케로는 아이딜리스직에 출마했는데, 베레스는 역시 이를 방해하기 위해 뇌물을 뿌렸다.²⁴⁸⁾ 이로 인해 키케로는 선거 유세와 1차 기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해서 매우 바빠졌고 재판이 다음 해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졌다. 분주한 상황 때문에 키케로는 ‘뇌물 공여자를 위협하는 것도 상책이 아니다’²⁴⁹⁾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키케로는 두 가지 모두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베레스의 이 모든 뇌물수수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1차 공판이 열릴 수 있었고 그 결과 베레스가 휴정 기간에 자발적 추방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가 두 가지 계책들을 행하면서 어마어마한 불법자금을 이미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포기한 채 도주한 것은 그만큼 자신의 실패

246) Cicero, *In Verrem*, 1.31, 1.54.

247) Cicero, *In Verrem*, 1.8.

248) Cicero, *In Verrem*, 1.22, 2.1.17.

249) Cicero, *In Verrem*, 1.24.

가 명확했다는 뜻이었다.

한편 속주 총독의 강력한 임페리움은 독직행위의 수단이 되었다. 임페리움을 연장하여 보유한 총독은 도급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군 지휘권을 불법 위임했거나 그 활용을 조장, 방조했다. 이에 베레스는 기존의 조세 수취 담당 인력을 대신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즉 부도덕한 수탈에 협력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패한 한 로마 총독의 일시적인 임기가 끝난다 해도 그 협력자들은 여전히 시칠리아에 남아 있어야 했다. 키케로가 주장했듯이 베레스의 임기 이후 비옥했던 시칠리아의 경작지들이 거의 황폐화했다면 현지인들 사이에서 이들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들 역시 총독 명령의 대상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테지만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했다는 점 때문에 공모자들에게 수탈의 이윤이 분배되었을 것이다. 즉 앞 절에서 살펴본 라비리우스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베레스 재판에서도 1/10세 징수자들에게 대해서 역시 불법자금 공유 적발 절차의 적용을 통한 부수적 재판이 이론상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소인은 전혀 이 절차의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다시 말하지만 이 조항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반환의무 혐의에 대해 유죄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총독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자금 공유 인력의 몫을 포함한 수탈 금액을 속주민에게 반환해줄 수 없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²⁵⁰⁾ 이런 점에

250) 키케로는 소송가액으로서 베레스가 1억 세스테르티우스(*Divinatio in Caecilium*, 19: “... quo nomine abs te setertium miliens ex lege repeto.”) 혹은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In Verrem*, 1.56: “... tum praeterea quadringentiens sestertium ex Sicilia contra leges abstulisse.” ; 2.2.26: “Quae vis erat in Volcatio tanta ut HS cccc milia duobus hominibus auferret?”) 이에 대해 키케로/김남우 외 옮김, 앞의 책(2015), p.108에서는 ‘40만’으로 오역했고, Atkinson, 앞의 논문(2014), p.92에서는 ‘4천만(40 millions) 세스테르티우스’라 영역했다.)를 강탈했다고 다양하게 주장했다. 플루타르코스(*Cicero*, 8.1)에 의하면 유죄선고 결과 손해액은 75만 데나리우스(=3백만 세스테르티우스) 혹은 그 2배인 6백만 세스테르티우스로 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켄수스(census) 조사에서 원로원 신분의 재산 자격은 1백만 세스테르티우스,

서 베레스를 비롯한 독직 총독들이 재판 중 자발적 추방을 택하는 관행이 설명될 수 있다.

불법자금 공유 적발과 관련해 변호인 호르텐시우스는 베레스에 대한 변론으로서 만약 속주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랫사람들의 과오이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그는 책임질 수 없다고 분명히 주장했다.²⁵¹⁾ 로마 총독이 보좌 관원들과 함께 위법 혐의로 기소된 판례는 거의 100년 이상 전에 있었다. 기원전 187년 L. 스키피오는 그의 콰이스토르, 두 명의 레가투스들, 그리고 심지어 그의 두 명의 서기관들, 정리와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스키피오와 레가투스 한 명, 그리고 콰이스토르만이 유죄를 선고받았다.²⁵²⁾ 이러한 특별 기소에 있어서도 대다수 보좌 관원들은 상관이 저지른 범죄 혐의의 책임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키케로는 베레스가 자신의 보좌 관원들과 속주 보조원들의 계획을 전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의 지휘권 하의 모든 부하들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당시 군 지휘관이 자신의 수행원단의 공적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공인된 원칙이었다.²⁵³⁾ 즉 베레스는 동업관계였던 시칠리아의 1/10세 징수자 아프로니우스, 그리고 자신의 정리였던 티마르키데스, 릭토르 섹스티우스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베레스의 명령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 아닌

기사신분 재산 자격은 40만 세스테르티우스였으니 베레스의 손해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또한 오히려 기소인 키케로는 베레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음으로써 그 벌금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Plutarchos, Cicero, 8.1). 그럼에도 시칠리아 속주민들은 키케로에게 아이딜리스직 당선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보냄으로써 감사함을 표시했다.

251) Pittia, 앞의 논문(2012), p.76, n.128: “Ver. 2.26–27, 2.49, 3.205를 보면, 호르텐시우스나 베레스는 수행원단을 연루시키려 시도했을 것이다. 베레스의 수행원단은 종종 기소된 것으로 언급될 수도 있는데, 소송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252) Livius, 38.55.4–5.

253) T. C. Brennan, *The Praetorship in the Roman Republic* (Oxford Univ. Press, 2000), p.483, n.43. Cicero, *Epistulae Ad Quintum Fratrem*, 1.1.10–11 ; *Epistulae Ad Familiares*, 2.18.2–3 ; *Divinatio in Caecilium*, 35 ; *In Verrem*, 2.2.26–27, 2.2.49, 2.3.156, 2.3.205.

이상 기소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었다.

특히 반환법정 재판에서 자발적 추방의 전례들이 많았다. 그것의 의미는 불명예(*infamia; ignominia*) 그 자체로서 원로원 신분 및 심판인단 자격의 박탈을 포함했다. 이는 정치적 경쟁의 관점에서는 정적의 제거를 의미했다. 이에 베레스는 시칠리아에서 자신의 악행에 대해 로마에 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자 한 바 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자신의 불명예가 확정되고 그 결과가 큰 악영향으로 이어짐을 베레스 자신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논고문 제3권의 법적 도전들을 무마한 사건들에서 입증되며, 논고문 제5권에서 나타나는 C. 세르빌리우스의 갑작스러운 죽음, 가비우스에 대한 사형 선고 등도 증거가 된다.²⁵⁴⁾

이상을 통해서 반환법 및 반환법정이 본래의 취지와 같이 속주에 파견된 로마 총독의 수탈행위를 처벌 및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운영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오히려 실상은 반환법정에 고발된 피고인의 잠탈 시도라는 부패행위가 만연했음을 보여주며 이를 활용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 조항의 개정과 그 적용이 반환 재판의 목적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즉 반환법을 개정한 정치적 환경과 반환법정의 재판과정이 실제로는 귀족 집단 내 정쟁의 수단이었을 뿐임을 말해준다.

재판 이후 절차에 따라 손해액 산정이 행해졌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지만,²⁵⁵⁾ 그 산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또는 시칠리아 속주민들이 모든 손해액을 반환 받았는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모든 것을 미루어봤을 때 반환법정은 로마 총독으로부터의 속주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작동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공화정 체제에서 속주 총독의 수탈행위를 처벌 및 규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부재했음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254) Cicero, *In Verrem*, 2.5.140–142(*conventus Panhormitanus*), 2.5.160.

255) Plutarchos, *Cicero*, 8.1.

V. 결어

본 논문에서는 기원전 70년 진행된 속주 시칠리아의 전임 총독 베레스에 대한 반환법정 판례를 그 재판의 기소인인 키케로의 2차 논고문 (*In Verrem*) 제3권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로마 공화정 후기 속주 시칠리아의 곡물 과세 및 매입 항목에서 나타난 총독의 수탈행위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러한 수탈행위를 처벌하고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반환법 및 반환법정이 지닌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속주 시칠리아는 로마 시의 곡창으로 간주되어 곡물 과세가 시칠리아 총독의 주 업무가 되었다. 기원전 70년대 후반 로마 시에서 심각한 곡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테렌티우스-카시우스 법에 따라 속주 시칠리아 산 곡물의 매입이 총독의 업무에 추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베레스는 '1/10세 징수권을 많은 계약량으로 매각'했고 곡물을 충분히 가져왔다고 함으로써 자신이 이 과업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키케로는 그를 반환법정에 기소하면서 바로 이 주장에 반박했다. 키케로의 주장을 종합해보자면 베레스는 곡물 1/10세 수취 과정에서 반환법을 비롯한 여러 법, 관행, 윤리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임기 이후 시칠리아의 모든 경작지가 유기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반환법을 위반하여 속주 재산을 사취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을 환수, 반환함으로써 재판은 마무리될 것이었다. 그렇지만 베레스는 2차 공판 전에 자발적 추방을 택함으로써 이미 자신의 유죄를 시인했다. 그럼에도 키케로는 방대한 2차 논고문을 더하여 이 재판의 전체 연설문을 작성, 공개함으로써 그의 속주 수탈 혐의를 집요하게 지적했다.

이는 기원전 70년의 반환법정이 그것의 본질적 목적이어야 했던 총독의 불법자금 환수 및 반환을 실현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상은 여러 정치세력 간의 경쟁 수단으로 이용될 따름이었음을 보여준

다. 기원전 70년 이전 개정된 반환법 조항들의 변천 역시, 속주 총독의 독직행위를 처벌 및 규제함으로써 속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를 구현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잠탈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유죄선고를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런 사정은 바뀌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반환법정 재판 과정을 보면 피고인 베레스의 속주 수탈 혐의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고 수탈분을 환수, 반환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소인 측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키케로가 논고문을 작성, 공개한 목적은 유죄 판결을 통한 베레스의 정계 축출, 그리고 재판에서 자신의 승소에 대한 과시였음을 읽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그 역시 동일한 정치인 집단의 한 일원이었다. 반환법정이 실상 정치적 경쟁의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것은 그것의 결정적 한계로 확인되었다.

반환법정에 베레스를 기소한 키케로의 논고문은 그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학적 전략의 결정체였다. 2차 논고문 제3권에서 키케로는 베레스의 총독 임기 동안 곡물 과세 및 매입 사업들에서 그가 기만적인 방식으로 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혐의와 그의 임기 이후 경작지들이 유기되었다는 혐의를 주장했다. 이 두 가지 주장들은 로마 시의 곡물 위기 상황에 베레스가 ‘곡물 1/10세 징수권을 많은 계약량으로 매각했다’는, 키케로가 발명했던 피고인 측의 변론에 대한 반박이었다. 특히 곡물 부족 사태에 시칠리아 총독의 곡물 관련 업무의 수행은 로마 인민과 속주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총독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 수 있다. 따라서 키케로의 반박의 전략은 이러한 상황을 포착하여 로마인 청중의 두려움을 극대화한 후 베레스의 기만적 수취 방식과 재앙적 결과를 집중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베레스에 대한 분노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결국 반환법정에서의 기소란, 그것의 본질적 목적인 속주 총독의 수탈행위 처벌 및 규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선고와 자신의 승소 과시를 위한 장치였음이 이 논고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로마 공화정 시기 로마 시의 곡물 공급이 속주 시칠리아의 밀 생산에

상당부분 의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곡물 과세 및 매입 과정에서 총독의 사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과정에서 강탈·압취·강압·유용·착복이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속주에서 현지인 1/10세 징수자나 징세도급업자들 등으로 대표되는 현지의 보조원들이 로마 총독과 결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는 로마에서 총독의 그러한 독직행위를 규제할 법적 처벌 수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원로원에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정치·사회적 변화상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 지배층 내부의 자정능력의 상실은 공화정 체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처럼 반환법 및 반환법정은 비단 속주 지배 문제만이 아니라 공화정 후기 정치세력 전반의 변동과 재정 운영의 모순, 그리고 이에 따른 공화정의 붕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로마의 안정적 재정구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속주 과세 체계의 확립과 속주 총독의 독직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및 규제 수단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는 모든 정치세력들을 조정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통치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며, 로마가 제정으로 전환하면서 그 해결을 전망하고 있었다.²⁵⁶⁾

한편 공화정 시기 속주 도급업자로 대표되었던 기사신분의 성장은 결국 황제의 통제권 하에 장악될 것이었다. 반환법정이 정치 논리에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는 법정 심판인단 규정의 최종적 개정을 가져왔으리라 판단된다. 기원전 70년 이후 반환법정에서는 기사신분을 그 심판인단으로 포섭하게 되었는데, 이는 제정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반환법정의 기능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56) 이와 반대로 제정 시기 부패가 제도화되었다는 시각에 관해서는 R. MacMullen, *Corruption and the Decline of Rome* (Connecticut: Yale Univ. Press, 1988) 을 참고하시오.

[표 5] 베레스의 수행원단 목록

인명	담당 역할	내용
아이스크리오 (Aeschrio)	1/10세 징수자 (decumanus)	베레스의 여인들 중 하나인 시라쿠사의 피파(Pipa)의 (가상의) 남편으로, 베레스 총독 임기 세 번째 해에 도시 헤르비타의 1/10세 징수권을 8,100med.에 계약함(2.3.77-78). 베레스의 강요에 의해 헤르비타 사람들은 그에게 계약량과 공제량의 차액인 밀 3,600mod.를 지불함. 이밖에도 2.2.36, 2.2.50, 2.4.59, 2.5.31, 2.5.81.
아프로니우스 (Q. Apronius)	1/10세 징수자 (decumanus)	1/10세 징수자들 중 우두머리(princeps)라 불렸음(2.3.22-24). 노예(servos)라 불렸음(2.3.91). 도시 아이트나, 아기리움, 헤르비타(두 번째 해), 이마카라, 헨나, 레온티니의 1/10세를 징수함(2.3.61-63, 67, 76, 100, 109f., 148) 개별 도시에 베레스의 신전 노예 경호부대를 대동함. 개별 도시의 공금으로 연회를 즐김. 도시 레온티니에서 로마인 기사신분 경작자 C. 마트리니우스를 감금함(2.3.60). 도시 아이트나에 거주하는 로마인 기사신분 경작자 Q. 롤리우스를 고문함(2.3.61-63). 베레스와 동업관계라는 혐의의 법적 도전을 받음(2.3.135f.) 티마르키데스가 보낸 편지에서 동업관계의 혐의가 입증됨(2.3.157). 베레스 재판에 출석함. 이밖에도 2.2.108 ; 2.5.70.
	곡물 품질 검사자	베레스의 명령에 의해 도시 아기리움의 밀을 검사한 수수료로 1med./HS를 받음(2.3.73).
코르넬리우스 아르테미도루스 (Artemidorus)	개인의사 (medicus)	고향 페르가에서 디아나 신전을 노락질했을 때 공식적으로 그것의 우두머리이자 지시자였음(2.3.54). 베레스가 곡물 1/10세 관련 재판의 회복심판원단으로 임명함(2.3.54, 66, 69-70, 137-138). 이밖에도 2.2.33, 2.2.75, 2.3.28, 2.3.117.
아티디우스 (Atidius)	1/10세 징수자 (decumanus)	베레스 총독 임기 첫 번째 해에 도시 헤르비타의 1/10세를 징수함(2.3.75). 이때 그는 minister, praefectus라고도 불렸음. 이밖에도 2.3.60-61, 2.3.67, 2.3.105.
안티스티우스 (C. Antistius)	서기관(scriba); 도급업체의 마기스테르 (magister)	시칠리아 도급업체의 마기스테르로, 베레스 재판에서 키케로가 제출한 증거로서 그 마기스테르들인 푸블리우스 베티우스, 푸블리우스 세르빌리우스, 가이우스 안티스티우스가 발송한 편지가 낭독됨(2.3.167-168).
바리오발리스 (Bariobalis)	1/10세 징수자 (decumanus); 신전 노예	(아마도 베레스 총독 임기 세 번째 해에) 도시 아메스트라투스의 1/10세 징수권을 800med.에 계약하여 징수함(2.3.89). 이때 (수수료로서) 850med.와 1,500HS를 받음.

	(Venerius)	
카이킬리우스 (Q. Caecilius Niger)	콰이스토르 (quaestor); 허위기소인 (praevaricator)	베레스 총독 임기 첫 번째 해에 릴리바이움을 담당함. 릴리바이움 출신으로 보임(Div. Caec., 39). 메텔루스 파벌과 가까운 이로, 베레스의 위증자 기소인이 되려고 시도했지만 키케로는 기소인 선발 예심 절차에서 그를 물리쳤음. 이밖에도 Div. Caec. 전체, 2.1.15.
카이시우스 (M. Caesius)	1/10세 징수자 (decumanus)	베레스 총독 임기 첫 번째 해에 도시 아메스트라투스의 1/10세 징수권을 낙찰 받았으나 도시 대표 헤라클리우스에게 22,000HS를 현금으로 지불받음(2.3.88). 베레스의 명령에 의해 임기 세 번째 해에 도시 칼락테의 1/10세를 징수함(2.3.101).
카이세티우스 (P. Caesetius)	콰이스토르 (quaestor)	베레스 총독 임기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에 릴리바이움을 담당함.
카르피나티우스 (L. Carpinatius)	도급업체의 프로마기스테르 (promagister)	시칠리아 도급업체의 프로 마기스테르로, 방목세를 담당함(2.2.170-173). 이 도급업체는 시칠리아의 방목세와 시라쿠사 항구의 관세를 징수하는 사업체임(2.2.171). 고리대금업을 수행함(2.2.186-188). 베레스와 동업관계에 있었음. 이밖에도 2.2.169, 2.2.184, 2.2.190, 2.3.165, 2.3.167, 2.4.137
케르비우스 (P. Caervius)	레가투스 (legatus)	베레스는 해적 선장에 대한 재판에서 그를 해고했고, 베레스 재판의 심판인 기피 절차에서 베레스에 의해 기피됨(2.5.114).
클라우디우스 (C. Claudius)	통역관 (interpres)	통역관이자 상업 담당자(confector negotiorum)로 베레스와 동업관계에 있었음(2.2.107-108).
클레오메네스 (Cleomenes)	임시 함대사령관	베레스의 하수인으로, 시라쿠사의 임시 함대사령관을 수행함(2.2.36, 2.2.50, 2.4.59, 2.5.31, 2.5.82-135).
코르넬리우스 (Cornelius)	릭토르(lictor)	2.1.67, 2.1.72, 2.1.80.
코르니피키우스 (Cornificius)	서기관(scriba); 프로콰이스토르 (pro quaestor)	2.1.150, 2.1.157.
디오니소도루스 (Dionysodorus)	?	베레스의 하수인(2.2.50).
디오그네투스 (Diognetus)	1/10세 징수자 (decumanus); 신전 노예 (Venerius)	베레스 총독 임기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에 도시 티사의 1/10세 징수자로 보냄(2.3.86). 두 번째 해에는 수수료로 21,000HS를, 세 번째 해에는 밀 12,000mod.를 받음. 이는 도시 티사의 전체 생산량보다 많음.
도키무스 (Docimus)	1/10세 징수자 (decumanus)	베레스의 여인들 중 하나인 로도스에서 온 테르티아(Tertia)의 남편으로, 베레스 총독 임기 세 번째 해에 도시 헤르비타의 보리 1/10세 징수권을 계약함(2.3.78-79). 베레스의 강요에 의해 헤르비타 사람들은 그에게 12,000HS를 지불함. 도시

		아케스타의 1/10세 징수권을 5,000mod.에 계약했고 1,500HS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자, 도시에서 공금으로 이 금액으로 1/10세 징수권을 인수함(2.3.83).
라이틸리우스 (L. Laetilius)	편지배달꾼 (tabellarius)	베레스의 후임 총독 L. 메텔루스에게 편지를 전달함(2.2.64, 138, 140).
마이비우스 (Maevius)	서기관(scriba) ; 도급업체의 만캡스 (manceps)	도시 할라이사의 매입 곡물에 해당하는 돈이 도급업체의 만캡스들에게 지불되었음(2.3.171-176). 할라이사 회계장부 상 나타나는 도급업체 만캡스들은 볼카티우스, 티마르키데스, 마이비우스. 이밖에도 2.2.75, 2.3.171, 2.3.181-182.
나이비우스 투르피온 (P. Naevius Turpion)	1/10세 징수자 (decumanus)	전임 총독 사케르도스의 임기 때 범죄의 유죄선고를 받은 자이자 노예라 불림.(2.3.91). 도시 페트라리의 1/10세 징수권을 3,000med.에 계약했고 52,000HS의 수수료를 부과하자, 도시에서 이 양과 금액으로 징수권을 인수함(2.3.90). 자유도시 할리카리아의 1/10세 징수권을 100med.에 계약했고 15,000HS의 수수료를 부과하자 도시에서 이 양과 금액으로 징수권을 인수함(2.3.91).
파피리우스 포타모 (L. Papius Potamon)	서기관(scriba)	로마 기사신분으로, 콰이스토르 카이킬리우스의 수행원이었다가, 이후 베레스의 수행원으로 편입됨. Div. Caec., 29, 2.2.75, 2.3.137, 2.3.154, 2.4.44.
피파 (Pipa)	1/10세 징수자 (decumanus)	베레스의 여인들 중 하나로, 아이스크리오(Aeschrio)의 이름으로 1/10세 징수자 역할을 담당함.
포스투미우스 (M. Postumius)	콰이스토르 (quaestor)	베레스 총독 임기 세 번째 해에 콰이스토르였음(2.2.44).
세르기우스 (Cn. Sergius)	1/10세 징수자 (decumanus)	도시 히블라의 1/10세 징수자로, 경작자들과의 협약에서 징수하는 곡물의 양이 파종된 양의 6배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음(2.3.102).
섹스티우스 (Sextius)	릭토르(lictor)	베레스의 명령으로 사형을 집행함(2.3.156). 이밖에도 2.5.113, 5.118-119, 5.125, 5.142.
타디우스 (P. Tadius)	레가투스 (legatus)	베레스 총독 임기 3년 내내 레가투스로 수행함. 베레스가 킬리키아에서 둘라벨라의 레가투스였을 때 베레스의 돈을 받은 적 있음(2.1.100). 이밖에도 2.2.49, 2.5.63.
심마쿠스 (Symmachus)	1/10세 징수자 (decumanus) ; 신전 노예 (Venerius)	자유도시 세계스타의 1/10세 징수자로 파견되었고, 세계스타의 농지의 임대업자인 디오클레스는 1,600HS와 밀 654med.을 그에게 지불함(2.3.92-93). 또한 원로원 의원 C. 안나이우스 브로쿠스는 그에게 현금과 곡물의 지불을 강요당함

		(2.3.93).
테르티아 (Tertia)	1/10세 징수자 (decumanus)	베레스의 여인들 중 하나로, 남편인 도키무스(Docimus)의 이름으로 1/10세 징수자 역할을 담당함.
테움나스투스 (Theomnastus)	1/10세 징수자 (decumanus)	도시 무티카에 1/10세 징수자로서 베레스가 파견함(2.3.101). 이밖에도 2.2.50, 2.2.127, 2.4.59, 2.4.148.
티마르키데스 (Timarchides)	아켄수스 (accensus) ; 도급업체의 만캡스 (manceps)	베레스의 해방노예로, 베레스의 총독 임기 후 아프로니우스에게 편지를 보내 베레스의 보호를 부탁했고, 후임 총독 메텔루스의 수행원단을 구할 것을 조언함(2.3.154-157). 도시 할라이사의 매입 곡물에 해당하는 돈이 도급업체의 만캡스들에게 지불되었음(2.3.171-176). 할라이사 회계장부 상 나타나는 도급업체 만캡스들은 볼카티우스, 티마르키데스, 마이비우스. 이밖에도 2.2.69-75, 2.2.80, 2.2.108, 2.2.133-136, 2.2.144, 2.2.169, 2.3.69, 2.3.159, 2.3.163, 2.4.22, 2.4.35, 2.4.94, 2.5.81, 2.5.94, 2.5.116, 2.5.120.
코르넬리우스 틀레폴레무스 (Tlepolemus)	화가(pictor)	베레스가 곡물 1/10세 관련 재판의 회복심판원단으로 임명함(2.3.69). 이밖에도 2.4.30-31, 2.4.96.
발렌티우스 (A. Valentius)	통역관 (interpre) ; 1/10세 징수자 (decumanus)	도시 리파라의 1/10세 징수권을 밀 600med.에 계약했고, 3만HS의 수수료를 징수함(2.3.84-85). 이밖에도 2.4.58.
발레리우스 (Valerius)	전령관 (praeco)	베레스가 곡물 1/10세 관련 재판의 회복심판원단으로 임명함(2.3.54, 66, 137). 이밖에도 2.2.33, 2.2.75.
벤노니우스 (Sex. Vennonius)	1/10세 징수자 (decumanus)	베레스 총독 임기 두 번째 해에 도시 아메스트라투스의 1/10세 징수자로, 많은 양의 1/10세와 수수료를 수탈함(2.3.89).
베눌레이우스 (Venuleius)	1/10세 징수자 (decumanus)	도시 테르마이의 1/10세 징수권을 계약함(2.3.99).
베티우스 (P. Vettius Chilo)	도급업체의 마기스테르 (magister)	시칠리아의 방목세와 관세 도급업체의 마기스테르로, 베레스와 인척 관계에 있었음(2.3.168). 베레스 재판에서 키케로가 제출한 증거로서 그 마기스테르들인 P. 베티우스, P. 세르빌리우스, C. 안티스티우스가 프로 마기스테르인 카르피나티우스에게 발송한 편지가 낭독됨(2.3.167-168).
베티우스 (T. Vettius)	콰이스토르 (quaestor)	베레스 총독 임기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에 시라쿠사를 담당함. 사업체 책임자인 P. 베티우스의 형제. 이밖에도 2.2.11, 2.5.114.
볼카티우스 (C. Volcatius)	도급업체의 만캡스 (manceps)	도시 할라이사의 매입 곡물에 해당하는 돈이 도급업체의 만캡스들에게 지불되었음(2.3.171-176). 할라이사 회계장부 상 나타나는 도급업체 만캡스들은 볼카티우스, 티마르키데스, 마이

		비우스. 2.2.25-26 ; 2.56 ; 2.58 ; 3.171 ; 3.175-176.
볼루시우스 (Volusius)	점쟁이 (haruspicius)	베레스가 곡물 1/10세 관련 재판의 회복심판원단으로 임명함 (2.3.28, 54). 이밖에도 2.2.33, 2.2.75, 2.3.137.

[표 6] 시칠리아 도시들의 곡물 관련 내용 목록

도시명	곡물 관련 내용
(1) 동맹도시(foederatae civitates) : 총 3개 도시	
메사나(Messana)	?
타우로메니움(Tauromenium)	?
네툼(Netum)	?
(2) 자유도시(sine foederatae immunes civitates ac liberae) : 총 5개 도시	
	-1/10세 징수자: Q. 아프로니우스
	-농장 임대업자 님포는 아프로니우스에 의해 토지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법정 소환되었고 벌금으로 밀 7천med.를 지불함(2.3.53).
	-에우불리다스 그로스푸스는 폭행을 당한 후 1/10세를 과잉 지불했고 이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음(2.3.56).
켄투리파(Centuripa)	-1/10세 징수과정에서 님포도루스 3형제를 수탈했고 님포도루스를 고문함(2.3.57).
	-디오클레스는 아프로니우스가 1/10세 징수를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함(2.3.129).
	-참고 유지 곡물을 승인하고 매입함(2.3.180).
	이밖에도 2.3.108, 2.3.114-115.
	-명령된 곡물의 양: 매해 6만mod.(2.3.171)
할라이사(Halaesa)	-매입 곡물의 양에 해당하는 현금이 도급업체의 만켄스들에게 지불됨(2.3.171-176).
	-참고 유지 곡물을 먼 곳으로 운반하도록 명령됨(2.3.192).
	-이밖에도 2.3.170-176.
	-1/10세 징수자: 심마쿠스(2.3.92)
세게스타(Segesta)	-판호르무스의 디오클레스는 세게스타의 농지 임대업자로, 1/10세 명목으로 심마쿠스에게 1,600HS와 밀 654med.을 지불함(2.3.92-93).
	-원로원 의원 C. 안나이우스 브로쿠스는 1/10세 명목으로 심마쿠스에게 현금과 곡물의 지불을 강요당함(2.3.93).
	-이밖에도 2.3.91.
	-1/10세 징수자: P. 나이비우스 투르피오(징수권 계약량: 100med., 수수료: 15,000HS), 도시에서 징수권을 인수함(2.3.91).
할리키아이(Halicyae)	
판호르무스(Panhormus)	?
(3) 1/10세 과세대상(decumanus) 도시 : 총 35개 도시²⁵⁷⁾	
아케스타(Acesta)	-1/10세 징수자(아마도 세 번째 해): 도키무스와 테르티아(징수권 계약량: 5,000med., 추가 수수료: 1,500HS), 도시에서 징수권을 인수함(2.3.83).
아이트나(Aetna)	-1/10세 징수자: Q. 아프로니우스

	-로마인 기사신분 경작자 Q. 롤리우스를 고문함(2.3.61-63). -이밖에도 2.3.104-109.
아그리겐툼(Agrigentum)	-참고 유지 곡물을 승인하고 매입함(2.3.180) -소시푸스가 시칠리아의 처지를 한탄하는 연설을 함(2.3.204) 이밖에도 2.3.103.
아기리움(Agyrium)	-1/10세 징수자: Q. 아프로니우스(2.3.68) -곡물 품질 검사자: Q. 아프로니우스(수수료: 1med./HS)(2.3.73). -이밖에도 2.3.47, 2.3.67-76, 2.3.120-121.
아메스트라투스(Amestratus)	-1/10세 징수자(첫 번째 해): M. 카이시우스(징수권 계약액: 22,000HS), 도시 대표 헤라클리우스가 징수권을 인수함(2.3.88). -1/10세 징수자(두 번째 해): Sex. 벤노니우스(2.3.89) -1/10세 징수자(아마도 세 번째 해): 바리오발리스(징수권 계약량: 800med., 수수료: 850med.와 1,500HS). -매입 곡물을 거부당함(2.3.172). -이밖에도 2.3.101.
아폴로니아(Apollonia)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아소루스(Assorus)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이밖에도 2.3.47.
비디스(Bidis)*	?
칼락테(Calacte)	-1/10세 징수자: M. 카이시우스(2.3.101).
카피티움(Capitium)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1/10세 징수자: Q. 아프로니우스
카티나(Catina)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참고 유지 곡물을 먼 곳으로 운반하도록 명령됨(2.3.192).
케팔로에디움(Cephaloedium)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매입 곡물을 거부당함(2.3.172).
케타리아(Cetaria) 혹은 케테리니(Ceterini)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드레파눔(Drepanum)*	?
엘로루스(Elorus) 혹은 헬로루스(Helorus)	-1/10세 징수자: Q. 아프로니우스 -티라키누스는 아프로니우스가 1/10세 징수를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함(2.3.129).
엔기움(Enguium)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엔텔라(Entella)	-소시테우스가 참고 유지 곡물의 대체 지불에 대해 항의함(2.3.200).
에릭스(Eryx)*	?
겔라(Gela)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할룬티움(Haluntium)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헨나(Henna)	-1/10세 징수자: Q. 아프로니우스(징수권 계약량: 8,200med.), 밀 18,000mod.와 3,000HS를 아프로니우스에게 지불하고 징수

	권을 인수함(2.3.100). -이밖에도 2.3.47, 2.3.192.
헤라클리아(Heraclia) 혹은 헤라클레아(Heraclea)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헤르비타(Herbita)	-도시에서 직접 1/10세 징수권을 계약하고자 했으나 실패함. -1/10세 징수자(첫 번째 해): 아티디우스 -1/10세 징수자(두 번째 해): Q. 아프로니우스 -1/10세 징수자(세 번째 해): 아이스크리오와 피파(징수권 계약량: 8,100med., 수수료: 3,600med.). -보리 1/10세 징수자(세 번째 해): 도키무스와 테르티아(1/10세 징수권 가격: 12,000HS), 도시에서 징수권을 인수함(2.3.78-79). -매입 곡물을 거부당함(2.3.172). -이밖에도 2.3.47, 2.3.76-80, 2.3.120.
히블라(Hybla)	-1/10세 징수자: Cn. 세르기우스. -1/10세 협약에 징수하는 곡물의 양이 파종된 양의 6배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음(2.3.102).
이에타이(Ietai) 혹은 이아이툼(Iaetum)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이마카라(Imachara)	-1/10세 징수자: Q. 아프로니우스. -아프로니우스에게 2만HS를 강제 지불함(2.3.100).
이나(Ina) 혹은 이넨세스(Inenses)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레온티니(Leontini)	-시칠리아 곡물 생산의 핵심 지역임(2.3.47). -1/10세 징수자(세 번째 해): Q. 아프로니우스(징수권 계약량: 216,000 mod.)(2.3.113). -토지면적: 3만iug.(2.3.116), 파종량: 3만med.(비율: 1med./iug.)(2.3.112). -로마인 기사신분 경작자 C. 마트리니우스를 감금함(2.3.60). -원로원 의원이자 심판인인 카시우스의 아내의 경작지에 대해 1/10세로서 곡물을 수탈함(2.3.97). -키케로의 기소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음(2.3.109). -이밖에도 2.3.38, 2.3.60, 2.3.104, 2.3.110, 2.3.114, 2.3.117, 2.3.120, 2.3.147-149.
릴리바이움(Lilybaeum)*	-Cf. 2.3.38.
리파라(Lipara)	-1/10세 징수자: 발렌티우스(징수권 계약량: 600med., 수수료: 3만HS)(2.3.84-85). -1/10세 징수자: 신전 노예
메나이(Menae)	-크세노의 아내의 임대지에 대해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55, 102).
무르겐티아(Murgentia) 혹은	-폴레마르쿠스는 1/10세로 700med. 지불할 것을 거절했고 폭행

모르간티나(Morgantina)	당한 후 1,000med.를 지불하기로 약속함(2.3.56).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무티카(Mutyca)	-1/10세 징수자: 테움나스투스(2.3.101) -이밖에도 2.3.120.
페트라(Petra) 혹은 페트리나(Petrina)	-1/10세 징수자: P. 나이비우스 투르피오(징수권 계약량: 3,000med., 수수료: 52,000HS), 도시에서 징수권을 인수함(2.3.90).
피티아(Phitia) 혹은 핀티아스(Phintias)*	-창고 유지 곡물을 먼 곳으로 운반하도록 명령됨(2.3.192).
스케라(Schera) 혹은 스케리니(Scherini) 혹은 아케라(Achera)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솔룬툼(Soluntum) 혹은 솔루스(Solus)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테르마이(Thermae) 혹은 테르미타눔(Thermitanum)	-도시에서 직접 1/10세 징수권을 계약하고자 했으나 실패함(2.3.99). -매입 곡물을 거부당함(2.3.172).
티사(Tissa)	-1/10세 징수자(두 번째와 세 번째 해): 디오그네투스(두 번째 해 수수료: 21,000HS, 세 번째 해 수수료: 밀 12,000mod.)(2.3.86-87).
트리오칼라(Triocala)*	?
틴다리스(Tyndaris)	-1/10세 징수과정에서 수탈당함(2.3.103). -매입 곡물을 거부당함(2.3.172).

257) 베레스 논고문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 작성되었다. 제3권에서 1/10세 과세 대상이라 명시된 도시들은 총 35개이다. *표시는 1/10세 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지명이다. 스크라무자는 1/10세 과세 대상 도시의 수가 총 57개일 가능성을 제시했다(Scramuzza, 앞의 글(1959), p.259 ; Cicero, *In Verrem*, 2.5.57).

참 고 문 헌

1. 1차 사료

Asconius, Edited with and Translated by Simons Squires,
Commentaries on Five Speeches of Cicero (Bristol Classical
Press, 1990).

Lewis, R. G. ed. & tr., *Asconius: Commentaries on Speeches of Cicer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Appianos, *Bellum Civile*.
_____, *Mithridatic Wars*.

Livius, *Ab Urbe Condita*.
_____, *Periochae*.

Cicero, Marcus Tullius, *Epistulae Ad Atticum*.
_____, *Epistulae Ad Brutum*.
_____, *Epistulae Ad Familiares*.
_____, *Epistulae Ad Quintum Fratrem*.
_____, *De Natura Deorum*.
_____, *De Officiis*.
_____, *De Oratore Ad Quintum Fratrem*.
_____, *De Provinciis Consularibus*.
_____, *Divinatio in Caecilium*.
_____, *In Vatinius Testem*.
_____, *In Verrem*.
_____, *Pro Cluentio*.

_____, *Pro Fonteio*.
_____, *Pro Lege Manilia*.
_____, *Pro Murena*.
_____, *Pro Plancio*.
_____, *Pro Rabirio Postumo*.
_____, *Pro Sestio*.
_____, *Pro Scauro*.

Greenwood, L. H. G. ed. & tr., *Cicero: The Verrine Or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1928–1935).

Peterson, William. ed., *M Tulli Ciceronis Orationes: Divinatio in Q
Caecilium, In C Verrem* (Oxford: Oxford Univ. Press, 1917²).

Zetzel, James E. G. tr., *Marcus Tullius Cicero: Ten Speeche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9).

키케로/김남우 외 옮김, 『설득의 정치』(서울, 민음사, 2015).

Plinius, *Naturalis Historia*.

Plutarchos, *M. Cicero*.
_____, *C. Gracchus*.
_____, *Lucullus*.
_____, *Pompeius*.

Polybios, *The Histories*.

McGing, B. C. tr., *Polybius' Histories* (New York(State): Oxford
Univ. Press, 2010).

Sallustius, *Historia*.

Batstone, W. W. ed. & tr., *Sallust, Catiline's Conspiracy; the
Jugurthine War ; Histories* (England: Oxford Univ. Press,
2010).

Valerius Maximus, *Factorum ac Dictorum Memorabilium*.

Warmington, E. H., *Remains of Old Latin, in Four Volumes* / tr. by
E. H. Warmingto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8).

2. 2차 사료 (Abbreviation)

1) 연구서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 - 로마공화정에서 제정으로』(서울, 길,
2013).

허승일, 『증보 로마 공화정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Alexander, M. C., *Trials in the Late Roman Republic, 149 BC to 50
BC* (Univ. of Toronto Press, 1990).

_____, *Case for the Prosecution in the Ciceronian Era* (Univ. of
Michigan Press, 2003).

Badian, E., *Roman Imperialism in the Late Republic* (Oxford, Basil
Blackwell, 1968).

_____, *Publicans and Sinners* (Ithaca & London, Cornell Univ.
Press, 1972).

Beck, H., et al. eds., *Money and Power in the Roman Republic*
(Bruxelles, Éditions Latomus, 2016).

Brennan, T. C., *The Praetorship in the Roman Republic* (Oxford
Univ. Press, 2000).

Brunt, P. A., *The Fall of the Roman Republic and Related Essays*
(Clarendon Press, 1988).

Broughton, T. R. S., *The Magistrates of the Roman Republic* (New

- York,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951).
- Carcopino, J., *La loi de Hiéron et les Romains* (Paris, Boccard, 1914).
- Dubouloz, J., Pittia, S., eds., *La Sicile de Cicéron, Lectures de Verri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he–Comté, 2007).
- Duncan–Jones, R., *The Economy of the Roman Empire: Quantitative Studies* (Cambridge Univ. Press, 1977).
- Erdkamp, P., *The Grain Market in the Roman Empire* (Cambridge Univ., 2005).
- Frazel, Th. D., *The Rhetoric of Cicero's "In Verre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9).
- Garnsey, P., *Famine and Food Supply in the Greco–Roman world* (Cambridge Univ., 1988).
- Gruen, E. S., *Roman Politics and the Criminal Courts, 149–78 B.C.* (Harvard Univ. Press, 1968).
- _____, *The Last Generation of the Roman Republic* (Univ. of California Press, 1995).
- Hill, H., *The Roman Middle Class in the Republican Period*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4).
- Keaveney, A., *Lucullus: A Life* (Routledge, 2003).
- Lintott, A. W., *Judicial Reform and Land Reform*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2).
- _____, *the Constitution of the Roman Republic*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9, reprinted 2009).
- MacMullen, R., *Corruption and the Decline of Rome* (Conneticut: Yale Univ. Press, 1988).
- Marin, P., *Blood in the Forum: the Struggle for the Roman Republic* (London, Continuum, 2009).
- Mary Siani–Davies, *Cicero's Speech: Pro Rabirio Postumo* (Oxford,

- 2001).
- Nicolet, C., *L'ordre équestre à l'époque républicaine (312-43 av. J.-C.)*, II. Prosopographie des chevaliers romains (Paris, 1974).
- Pina Polo, F., *The Consul at Rome* (Cambridge Univ. Press, 2011).
- Rickman, G., *The Corn Supply of Ancient Rome*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0).
- Riggsby, A. M., *Crime & Community in Ciceronian Rome* (Univ. of Texas Press, 1999).

2) 연구논문

- 김경현(金景賢), 「129년: Gracchani에 의한 Equites 정책의 맹아기?」 『사총』 27 (1983), pp.49-75.
- _____, 「로마상설법정의 기원」 『사학지』 16 (檀國大史學會, 1982), pp. 1-17.
- _____, 「로마 지배와 시실리 농업경제의 변화」 『中齋 張忠植博士 華甲記念論叢』 (中齋 張忠植博士 華甲記念論叢刊行委員會, 1992), pp.833-847.
- _____, 「Gracchan Judiciary Law and the Lex Repetundarum on the Tabula Bembina(C. 그락쿠스의 법정개혁과 착취법)」 『서양사론』 25 (1984), pp.63-104.
-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체제강화와 원로원의 위상 -기원전 4년 ‘부당취득재 산반환청구에 관한 칼비시우스의 원로원결의’ 비문분석」 『서양사론』 50 (1996), pp.1-45.
- 김창성, 「로마 共和政期 ‘트리부니 아이라리이(Tribuni Aerarii)’의 役割과 身分」 『역사학보』 122 (1989), pp.139-174.
- _____, 「로마의 속주지배와 징세 청부」 『서양고대사연구』 37 (2013),

- pp.141–173.
- _____, 「로마 공화정 후기 청부회사의 조직과 위상」 『서양고대사연구』 35 (2014a), pp.71–103.
- _____, 「로마 공화정 후기의 재정의식과 아우구스투스의 재정운영」 『서양고대사연구』 39 (2014b), pp.9–40.
- _____, 「속주 아시아 관세법과 트리부니 아이라리이」 『서양고대사연구』 41 (2015), pp.101–133.
- 허승일,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사법 개혁」 『역사교육』 89 (2004), pp.251–286.
- Andreau, J., “le prix du blé en Sicile et à Antioche de Pisidie,” in *La Sicile de Cicéron, Lectures des Verrines* (2007), pp.111–125.
- Atkinson, J. E., “Cicero and the Trial of Verres”, *Akroterion*, 37(3–4) (2014), pp.91–97.
- Blösel, W., “Provincial Commands and Money in the Late Roman Republic,” in *Money and Power in the Roman Republic* (2016), pp.68–81.
- Dubouloz, J., “Autorite Romain, Fermiers de l’impôt et Contribuables en Siciles dans les Années 70 av.J.–C.,” in *La Sicile de Cicéron, Lectures des Verrines* (2007), pp.147–168.
- France, J., “Deus questions sur la fiscalité provinciale d’après Cicéron,” in *La Sicile de Cicéron, Lectures des Verrines* (2007), pp.169–184.
- Genovese, M., “Condizioni delle civitates della Sicilia ed assetti amministrativo–contributivi delle altre province nella prospettazione ciceroniana delle Verrine”, *IVRA*, 44 (1993).
- Henderson, M. I., “The Process *de repetundis*,” *JRS*, 41 (1951), pp.71–88.
- Kleinman, B., “Rhetoric and Money: the *Lex Aurelia Iudiciaria* of 70

- B.C.," in *Money and Power in the Roman Republic* (2016), pp.53–67.
- Lintott, A. W., "The *Leges De Repetundis* and Associated Measures under the Republic," *ZSS*, 98(1981), pp.162–212.
- Maganzani, L., "l'editto provinciale alla luce delle Verrine: profili strutturali, criteri applicativi," in *La Sicile de Cicéron, Lectures des Verrines* (2007), pp.127–146.
- Marshall, J. A., "Verres and the Judicial Corruption," *The Classical Quarterly*, 17(2) (1967), pp.408–413.
- Mattingly, H. B., "The Character of 'Lex Acilia Glabrionis'," *Hermes*, 107 (1979), pp.478–488.
- Pinzone, A., "Ciceron e l'iniquitas novorum edictorum di Verre," in *La Sicile de Cicéron, Lectures des Verrines* (2007), pp.91–109.
- Pittia, S., "La cohorte du gouverneur Verrès," in *La Sicile de Cicéron, Lectures des Verrines* (2007), pp.57–87.
- Pritchard, R. T., "Cicero and the "Lex Hieronic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19(3) (1970), pp.352–368.
- Richardson, J. S., "The Purpose of the Lex Calpurnia de Repetundis," *JRS*, 77 (1987), pp.1–12.
- Scramuzza, V. M., "Roman Sicily," in Frank, T., ed., *An Economic Survey of Ancient Rome*, 3 (Paterson, N. J., Pageant Books, 1959), pp.225–377.
- Serrati, J., "The Financing of Conquest: Roman Interaction with Hellenistic Tax Laws" in *Money and Power in the Roman Republic* (2016), pp.97–113.
- Sherwin–White, A. N., "The Extortion Procedure Again," *JRS*, 42(1952), pp.43–55.
- _____, "The *Lex Repetundarum* and the Political Ideas of C.

Gracchus,” *JRS*, 62 (1972), pp.18–31.

Spencer, E. B., “Verres on Trial for Extortion”,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6) (1917), pp.838–850.

Steel, C., “The Rhetoric of the *De Frumento*,”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50, S97 (2007), pp.37–48.

S. Hornblower, A. Spawforth, E. Eidinow, eds., *The Oxford Classical Dictionary*, 4th ed. (Oxford Univ. Press, 2012),
<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acref/9780199545568.001.0001/acref-9780199545568> (검색일: 2020년 7월 15일).

Abstract

Reconsidering the Case against C. Verres: Prosecution or Rhetorical Strategy?

Kim, Hwa Nyi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Histor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a judicial case of the extortion court (quaestio de repetundis,) on C. Verres, the former governor of Sicily, which was held in 70 B.C., primarily from the third book (*De Frumento*) of Cicero's second speech against Verres (*In C. Verrem*). The results of this inquiry revealed extortion acts carried out by the governor, in the areas of grain taxation and purchases in Sicily; as well as deficiencies of the laws and courts of extortion in the late Roman Republic.

Cicero's prosecution speeches against Verres provide information about this theme. Considering the special properties of these historical orations and the unusual circumstances of their public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hetoric that was adopted by the prosecutor (accusator). The purpose of the rhetorical strategies appearing in *De Frumento* was to secure a conviction from a jury (iudices) and consent from the readers. Throughout *De Frumento*, Cicero replied with the arguments

about Verres' defense that he "sold the right to collect grain tithe(decuma) at a large contract amount of grain."

The province of Sicily(provincia Sicilia) served as a food storehouse(cella penaria) for the city of Rome. Unlike the tax systems of the rest of the provinces including provincia Asia, the Roman people respected Sicily's local traditional tax system, the law of Hieron(lex Hieronica). This tax system involved Sicilian tithe collectors(decumani) in Sicily. Due to the serious grain shortage in the city of Rome in late 70's, a compulsory grain purchase(frumentum emptum) was added to the Sicilian governor's duties by the grain law of consuls(lex Terrentia—Cassia). These factors possibly contributed to Verres' inclination for extortion.

According to *De Frumento*, as for the tithe(decuma), Verres extracted(abstulit·cepit·coegit) an enormous amount of grain and money, exploiting governor's edicts(edicta) as well as the partnerships with local decumani. As for the items of grain purchases, he collected money from the farmers instead of grain, and either did not repay them, or gave them severely reduced refund. As for the item of grain for official expenditure(frumentum in cellam), by making exceedingly high commutation ratio(aestimatio), he embezzled(conciliavit·avertit) public money. These were not only acts of unprecedented extortion, but also direct violations of the lex Hieronica and the extortion laws(leges repetundarum) of Rome.

The leges repetundarum were established to punish and to regulate governor's unjust extortion of the property of overseas provinces. Hence, the purpose of the extortion trial was to retrieve damaged property and to return it to the original

owners, i.e., the provincials. However, the revision history of the extortion laws reveals that their actual purpose was to prevent the defendant from evading the law(潜脱).

The trial process of the extortion cases shows the purpose of the courts was not to punish the convicted, but the conviction itself. The trial of Verres indicates this: the evidence of the defendant Verres' attempts of evading the law, and the practice of escaping conviction through voluntary exile(exsilium). Thus, the laws and the trial process of extortion reflected political strife.

The financial affairs of the late Republic of Rome heavily relied upon the grain production and taxation from Sicily. Nevertheless, acts of extortion by the governor of the island were easily practiced both through the grain collection and purchase. In this respect, the financial organization of Rome now demanded the arrangement of a sustainable tax system of overseas provinces and a valid surveillance method to punish and regulate any illegal acts carried out by the governors.

Keywords: extortion laws(*leges repetundarum*), extortion court(*quaestio de repetundis*), "*In Verrem*", "*De Frumento*," rhetoric, the province of Sicily(*Sicilia Provincia*), provincial tax system, extortion by provincial governor

Student Number: 2016 - 24065